연구보고서 12-06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Sherzod Shadikhodjaev · 서정민 · 김민성 · 이재형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보고서 12-06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Sherzod Shadikhodjaev · 서정민 · 김민성 · 이재형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 언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을 이어온 국제교역은 세계 GDP의 25%를 차지할 만큼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동시에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1.5%가 국제무역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환경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화와 같은 인간활동으로 인해 자연자원이 고갈되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많은 환경적·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08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녹색경제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즉 경제와 환경을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서 산업의 녹색화, 에너지 효율 제고, 녹색기술 개발 등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을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법령들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상, WTO와 APEC에서 무역과 환경에 대한 다자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기후기금(GCF) 같은 국제기구의 유치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한편, 지구온난화에 대한 세계 공동체의 대응책에 있어 우리나라에 더욱 많은 책임감이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녹색성장정책 수행 시 각종 국내조치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탄소 수입제품에 저탄소 국산제품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환경친화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업체들에 보조금이 제공되거나,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도입되면, 외국 생산자나 수출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국제교역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들 조치가 다자무역을 규율하는 WTO 규범을 준수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중 무역 관련 주요 분야와 WTO 규범 간의 조화 가능성, 그리고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 간의 조화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의 Sherzod Shadikhodjaev 부연구위원, 서정민 부연구위원, 김민성 전문연구원,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재형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심의위원으로서 유익한 자문과 협조를 통해 보고서의 질적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신 환경부의 강석우 과장과 연세대학교 박덕영 교수, 본원의 정성춘 연구위원과 김준동 선임연구위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무역과 환경 문제에 대한 좋은 의견과 조언을 해주신 외교통상부의 한우용 서기관과 계명대학교의 이로리 교수, 그리고 자료정리와 편집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본원의 김진아 연구조원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문제에 대한 주요 쟁점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 향후 정부의 기후변화와 무역에 대한 대응책에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2월

원장 채 욱

국문요약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0.75℃ 상승했으며, 최근 50년간 기온상승은 과거 100년간 기온변화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 등 인위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녹색성장정책 수행 시 개별 업체에 추가비용을 부과하거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녹색성장정책 중 무역 관련 부분은 세계무역을 규율하고 있는 WTO 규범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녹색성장 관련 국내 법령 및 사업에 의한 각종 조치가 WTO 규범과 양립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녹색성장과 WTO 간의 조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제도에 대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우선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외부경제의 내부화 방식의 정책은 환경오염이라는 외부성을 교정하는 측면 외에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조금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직접투자는 녹색기술 R&D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유인 저하 문제의 해소와 기초기술의 확산효과라는 정(正)의 외부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제통상규범에서 보조금을

통한 전통적인 보호무역정책으로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친환경 상품 및 기술사용 증진을 위한 기술규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 환경 관련 품질정보에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특히 유용하다. 국제무역의 맥락에서 상대국의 기술규제가 수출기업에 순응비용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술종류에 따라 해외수요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경우 거래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 소비자 후생은 물론 수출기업에도 반드시 불리한 종류의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에 수준이 존재하여 한 국가의 규제 수준이 상대방 국가의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표현가능한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규제가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 후생이나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과, 기술규제 도입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더라도 다른 정책적 목적을 수반하여 정당화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통상마찰의 잠재성은 존재하지만 그 가시성은 다른 두 수단들에 비하여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문제를 국내적 접근과 대외적 접근을 통해 다루었다. 국내적 접근은 시장개방, 산업지원, 기술규제 등의 분야별 국내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문제를 분석하였고, 대외적 접근은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시장개방정책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녹색성장 조치의 GATT상의 최혜국대우(제I조), 내국민대우(제III조), 국경세조정(제II조)과의 합치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특정 녹색성장 조치 및 이들 규정의 위반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지적이나 분쟁사례가 없었으나, GATT 위반의 소지가 있

고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해외조치 중 특히 탄소세, 자동차의 연비 기준에 따른 가솔린 과소비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의 보조금·부과금 제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수입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조치들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규정의 위반 여부 판정은 비교대상 상품이 동종상품인지의 여부와 불리한 대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크게 달려 있는데, 그중 특히 동종상품 여부는 논란의 소재가 있다. 예컨대 외견상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녹색제품과 비녹색제품이 같은 상품으로 판단된다면 이들 상품에 적용되는 차별적 내국세나 규제가 GATT의 비차별 원칙에 위배될 것이다. 그러나 EC 석면 사건에서 상소기관의 해석은 환경친화적 상품과 비친화적 상품의 차별대우가 GATT 비차별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국경세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탄소세의 국경조정은 양허관세에 관한 GATT 제II조 2항 등의 규정에 의해 그 합법성을 인정받아 용이하게 발동이 가능하지만, 탄소량의 정확한 측정과 과세액의 정확한 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부과된 무역제한 조치가 비차별 원칙 등의 GATT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로 GATT의 일반예외 조항인 제XX조의 (b)호 또는 (g)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행하고자 하는 녹색성장 법제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GATT를 위반할 수밖에 없으나,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등 정당한 정책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러한 조치를 최소한 GATT 제XX조상의 정당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WTO 다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해 지적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보조금협정상의 투명성 원칙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이 아직 피소된 적은 없으나, 다른 회원국의 녹색성장 보조금의 경우에는 총 3건의 WTO 분쟁사례가 있었다. 반면 미국의 상계관세 관행을 확인한 결과, R&D, 에너지 등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각종 녹색지원 조치가 피소되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상계관세와 같은 해외 시장장벽을 감소하기 위해서 미국 등 상대국의 상계관세에 대한 예방・상쇄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한 상대국의 제소나 상계관세 등과 같은 대응조치의 적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수출촉진・수입대체 보조금 제공을 자제할 것, (2) 동일한 보조금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느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생산자를 위한 일반 보조금보다 제소・상계관세조사 발동요건이 더욱 복잡한 상품 소비자를 위한 보조금을 잘 활용할 것, (4) 아직 WTO에서 사실상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녹색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때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 중 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총 4건이었으나, WTO에 제소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향후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술규제 도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통상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WTO 규범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녹색성장 관련 조치가 TBT 협정의 규율 대상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조치가 TBT 협정의 규율대상일 경우 기술규정에 해당되는지 또는 표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차별 원칙으로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정, 표준 및 적

합성 평가절차를 준비, 적용 및 채택하는 데 있어 동종의 국내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한편 상품 무관련 생산·공정 방법에 근거한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는 TBT 협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GATT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TBT 협정은 물론 GATT 등 관련 규정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비준수 시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내 기술규제와 다른 회원국의 해당 기술규제 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적극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TBT 협정의 의무사항 중 하나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통보 의무 준수와 더불어, 국내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고, 제시된 의견과 이에 대한 답변사항, 논의된 의견의 규제 반영 여부 등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WTO 조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니지만 이러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과 WTO 간의 국내정책별 조화방안과 다르게, 대외적 접근을 통한 조화방안의 목적은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 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WTO 체제와 기후변화체제가 보다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들간 공조를 요구한다. 대외적 접근으로는 다자무역체제를 녹색화하는 방안과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다.

WTO를 녹색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과 환경 관련 협상과 논의를 중심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다자무역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서 특히 APEC에서 환경 상품·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합의내용을 DDA 복수간 협상의 기반으로 삼을 것, 허용보조금에 대해 재논의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둘째 접근으로는 우리나라의 대WTO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를 환경영향평가제의 도입을 통해 녹색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의 지위강화 방안은 더욱 'WTO친화적' 기후변화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기후변화체제는 UNFCCC와 교토의정서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들 조약에 무역을 제한하는 명시적 내용이 없지만 무역과 관련성이 있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교토의정서 제2.1조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분류되는 부속서 I 당사국이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수행하거나 조치를 취할 때, 개도국을 포함한 여타 당사국에 대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영향,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UNFCCC 부속기관에 부속서 I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여타 당사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인 대응조치영향 포럼을 출범시켰다. 이 포럼에서 대응조치의 무역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논의의 가능성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 포럼 논의에 무역 관련 이슈를 포함시키자는 몇몇 국가의 입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방적 무역조치를 완전히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인도 등 개도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금지는 무역제한 중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GATT 제XX조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종합해 보면 국내정책별 조화라는 것은 녹색성장 조치가 WTO 규범과 합치도록 하는 방안으로 WTO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녹색성장정책 추진 시 특정한 법령, 사업 등의 조치는 다자무역규범 준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실행되어야 한다. WTO 규범 준수 방식은 규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녹색성장 조치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또한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아니어야 한다.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 간의 조화를 제고하는 대외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국제차원의 통상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수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화방식이 많은 국가의 공동노력에 달려 있는 만큼, 무역자유화와 기후변화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조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의 조화에 대한 국내외적 접근방식은 모두 무역과 환경 관련 학문 간의 교육・연구・교류의 활성화, 국내 해당 부처간 협조와 같은 효과적 역량강화를 요구한다.

약어 표기

약어	영문	한글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
BCA	Border Carbon Adjustment	국경간 탄소조정
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기업평균연비
CdTe	Cadmium Telluride	카드뮴 텔루르 화합물
CO_2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CIGS	Copper Indium Gallium Selenide	구리인듐갈륨디셀러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 어젠다
EC	European Communities	유럽 경제공동체
ESF	Energy Savings Fund	에너지절약펀드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IT	Feed-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KEMCO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에너지관리공단
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다자간 환경협정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Agreement	상호인정협정
NPR PPMs	Non-Product-Related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상품 무관련 생산 · 공정 방법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생산 · 공정 방법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RLA	Requested Load Adjustment Program	요청전기부하조정 프로그램
SIA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
STC	Specific Trade Concern	특정무역현안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TBT-IMS	TB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BT 정보관리시스템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VEPSA	Voluntary Electric Power Savings Adjustment	자율적 에너지절약조정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차 례

▌서언 ····· 3

▌국문요약 ····· 5

▌약어 표기 ····· 13

▌제1장 서 론 ····· 2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4
2. 기존 연구 검토 ····· 27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 32

▌제2장 녹색성장과 다자무역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 ····· 37

1. 기후변화와 무역 ····· 38
   가. 배경 ····· 38
   나. 무역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효과 ····· 40
   다. 기타 관련 이슈 ····· 44
2.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개관 ····· 44
   가. 배경 ····· 44
   나. 기본목표 ····· 47
   다. 녹색성장 추진전략 ····· 50
3. 녹색성장정책의 경제학적 근거와 통상이슈화의 이론적 배경 ····· 53
   가. 외부경제의 내부화 정책 ····· 53
   나. 국가직접투자 및 유인책: 친환경 기술 확산증진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 ····· 59

다. 규제활용: 친환경 상품 및 기술 사용증진을 위한 기술규제 ····· 62
4. 소결 ····· 66

제3장 녹색성장과 상품시장 개방 ····· 69
1. GATT상의 시장개방 관련 주요 규정 ····· 71
가. 내국민대우의무 ····· 71
나. 최혜국대우의무 ····· 79
다. 일반예외 ····· 81
라. 국경세조정 ····· 89
2. 녹색성장 관련 GATT/WTO 사례 ····· 97
가. 미국 자동차세 사건 ····· 97
나. 미국 슈퍼펀드 사건 ····· 100
다. 미국 가솔린 사건 ····· 102
3. 녹색성장 조치의 GATT 규정 합치성 ····· 104
가. 탄소세와 국경세조정 ····· 104
나. 배출권거래제와 수입규제 ····· 106
다. 자동차 보조금·부과금 제도 ····· 109
4. 소결 ····· 113

제4장 녹색성장과 보조금 ····· 115
1. WTO 보조금협정 개관 ····· 116
2. 한국의 녹색성장 지원정책 현황 ····· 121
가. 녹색산업 육성 지원 ····· 123
나. 녹색 R&D 지원 ····· 125
다. 녹색상품 소비촉진 지원 ····· 131
라. 배출권거래제와 보조금의 관계 ····· 134

3. 녹색성장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 136
가. WTO 통보문상 한국의 녹색성장 보조금 현황 ····· 136
나. WTO 분쟁사례 ····· 139
다. 상계관세 사례 ····· 146
4. 소결 ····· 155

제5장 녹색성장과 기술규제 ····· 157
1. WTO TBT 협정의 개관 ····· 158
2.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 ····· 163
3.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의 주요 쟁점 사항 ····· 175
가. 한국의 WTO 기술규제 통보 현황 ····· 175
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특정무역현안 사례 ····· 178
다. 녹색성장 관련 WTO TBT 분쟁사례 ····· 194
4. 소결 ····· 196

제6장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체제간의 조화 ····· 199
1. 다자무역체제의 녹색화 방안 ····· 201
가. 무역과 환경 협상을 통한 녹색화 ····· 201
나. 통상조약 체결을 통한 녹색화 ····· 211
2. 기후변화체제에서 다자무역규범 준수 강화 ····· 218
가. 국제 기후변화규범 개요 ····· 218
나. 기후변화조약상의 무역 관련 조치 조항 ····· 221
다. 기후변화 대응조치 관련 논의 ····· 224
라. 평가 및 대응방안 ····· 226
3. 소결 ····· 228

제7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229
1. 국내적 접근 ····· 231
가. 시장개방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 231
나. 산업지원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 234
다. 기술규제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 237
2. 대외적 접근 ····· 242
가. 더욱 '친환경적' WTO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 242
나. 더욱 'WTO 친화적' 기후변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 244
3. 종합평가 및 대응방향 ····· 246

▌참고문헌 ····· 250

▌부 록 ····· 265

▌Executive Summary ····· 269

표 차례

표 2-1. 10대 정책방향별 추진방안 ····· 48
표 2-2. 에너지 자립도 관련 연도별 목표수준 ····· 49
표 2-3. 녹색성장 5대 정책수단 ····· 51
표 3-1. 미국의 현행 가솔린 과소비세 현황 ····· 98
표 3-2. 탄소세 도입 주요국 현황(2008년 2분기 기준) ····· 105
표 3-3. 자동차 Bonus-Malus 제도 개요 ····· 111
표 4-1. 녹색성장 재정소요 현황 ····· 121
표 4-2. 녹색성장 지원 관련 한국의 주요 법률조항 예시 ····· 122
표 4-3.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원 내용 ····· 125
표 4-4. 27대 중점기술 ····· 126
표 4-5.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지원 내용 ····· 128
표 4-6. 분야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 지원 실적(1988~2011년) ····· 129
표 4-7.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내용 ····· 130
표 4-8. 공공기관 대상 하이브리드 차 보조금 연도별 현황 ····· 133
표 4-9. 한국의 녹색성장 보조금 통보 현황 ····· 138
표 4-10. 녹색성장 보조금의 WTO 분쟁 현황 ····· 140
표 4-11. 캐나다 온타리오 주 FIT 프로그램상의 국산화 조건 ····· 141
표 5-1. 녹색성장 관련 한국의 주요 기술규제 사례 ····· 164
표 5-2. 에너지효율관리제도의 종류 및 인증마크 ····· 166
표 5-3.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의 주요 내용 ····· 168
표 5-4.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주요 내용 ····· 169
표 5-5.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주요 내용 ····· 173

표 5-6.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통보문 제출 현황 ····· 177
표 6-1. DDA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방식 ····· 204
표 6-2. APEC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개요 ····· 206
표 6-3. 한국이 체결한 FTA의 환경 조항 ····· 217
표 6-4. UNFCCC 무역 관련 조치 조항 ····· 222
표 6-5. 교토의정서 무역 관련 조치 조항 ····· 223

그림 차례

그림 1-1. 보고서의 구성 ····· 33
그림 2-1. 녹색성장의 비전과 전략 ····· 47
그림 3-1.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개요 ····· 107
그림 4-1. WTO 보조금협정하의 대응 절차 ····· 119
그림 4-2. 2010년 신재생에너지 R&D 예산 기관별 분배 ····· 127
그림 4-3. 환경 관련 보조금 통보문 제출 현황 ····· 136
그림 4-4. WTO 보조금협정 분쟁 현황 ····· 139
그림 4-5. WTO 회원국 상계관세 조사·부과 동향 ····· 146
그림 5-1. 환경라벨링 인증마크 ····· 171
그림 5-2. 환경표지의 MRA 체결 현황 ····· 174
그림 5-3. 환경 관련 기술규제 통보문 제출 현황 ····· 175
그림 6-1. 교토의정서 신축성 메커니즘 ····· 220
그림 7-1.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방안 개요 ····· 247

부표 차례

부표 1.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관련 주요 법률 ····· 266
부표 2.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한 부분별 정책 및 조치 조약 ·· 268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난 100년(1911~201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0.75℃ 상승했으며, 최근 50년간 기온상승은 과거 100년간 기온변화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다.[1] 한반도의 경우 지난 100년간 온도상승은 1.8℃로 지구평균 수치 보다 2.4배로 높게 나타났다.[2]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 등의 인위적 요인으로 본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인류는 홍수, 가뭄과 폭염 등 자연재해에 직면하고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다자적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국제연합은 1990년 제45차 총회에서 기후변화 기본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위원회 주도하의 협상 끝에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체결되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선진 공업국가와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UNFCCC와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지만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의 감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

1) 이병국(2012), p. 18.

2) 이병국(2012), p. 18.

가발전 패러다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는 녹색성장 관련 다양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채택되어 녹색성장정책 관련 법제가 구축되었다.[3] 또한 이러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와 같은 3대 전략과 3대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10대 정책방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5개년계획을 통해 단기 · 중장기적 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개별 업체 · 산업에 추가비용을 부과하거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혹은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관리하는 다양한 국내정책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이동, 판매 등의 조건을 결정함으로써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측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녹색기술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생산공정 시의 의무적 온실가스 배출감축 기준을 도입할 경우,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등은 국내외 시장에 영향을 준다. 만약 이러한 정책들이나 조치들로 인해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면, 다른 국가로부터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한국이 포함된 다자무역제도를 체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WTO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각각에 대한 다자적 규정을 두며, 또한 2001년에

3) 본 보고서 부록 [부표 1] 참고.

출범된 도하 라운드(DDA: Doha Development Agenda)를 통해 무역자유화, 규범개선에 대한 다자간 협상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DDA가 다자무역협상 역사에서 최초로 무역과 환경을 별도의 의제로 삼고 있다는 것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 문제와 다자무역제도 간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녹색성장정책 중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바, 이는 세계무역을 규율하고 있는 WTO 규범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WTO 사무총장이 2010년 6월 무역정책 검토기관에서 발표한 세계무역동향 자료에서 각국 무역 관련 조치 목록에 언급되어 있고,[4] 한국의 각종 녹색성장 관련 조치가 2012년도 WTO 사무국의 무역정책검토 보고서[5]에도 설명되어 있다는 점은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연계 가능성을 보여준다.

WTO 체계하에 환경 관련 분쟁이 이미 몇 차례 발생한 적이 있고, 그 중 특히 최근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그램, 중국의 풍력장비에 대한 보조금 관련 분쟁 등의 사건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WTO, UNFCCC하의 다양한 다자포럼에서 기후변화와 다자무역규범 간의 양립성, 환경보호와 보호주의의 문제 등 이슈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논의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이 앞으로 계속 추진될수록 무역에 대한 영향이 가시화될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제정한 법령, 채택한 각종 사업 등을 점검하고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WTO(2010f), p. 68 참고.

5) WTO(2012d), 제III장과 제IV장 참고.

이러한 검토는 외국 정부와의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제규범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우리 녹색성장정책의 모형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녹색성장 관련 법령 및 사업에 의한 국내조치가 WTO 규범과 양립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현행 법률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와 유사한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향후 녹색정책 추진 시 통상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검토

녹색성장정책이나 기후변화 관련 국내 제도, 또한 녹색성장 조치와 WTO 규범 간의 관계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관한 포괄적 연구로서 박덕영(편저)(2012)은 기후변화 관련 조약을 개관하고 미국, 유럽 국가, 아시아 국가 등 세계 주요국의 기후변화법제 전반과 각종 대응조치를 규율하는 입법을 상세히 분석하였다.[6)]

녹색성장과 WTO 간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배경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WTO-UNEP Report(2009)는 기후변화와 무역 간의 일반적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특히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과학적

6) 박덕영 편저(2012).

으로 확증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각종 분야와 무역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7)]

구체적인 개별 녹색성장정책들 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유형은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와 같은 외부경제의 내재화를 위한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부(負)의 외부성에 대해 가격을 부과하여 시장에서 사회적 후생극대화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이와 같은 정책이 통상이슈화될 때 국경간 탄소조정(BCA: Border Carbon Adjustment)의 형태로 가시화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경간 탄소조정에 관한 대부분의 경제학적 연구는 주로 모든 상황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볼 때, 이 조치가 도입될 경우 각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살펴보는 방식이었다.[8)] 국경간 탄소조정에 대한 이론연구는 최근 들어 시작되고 있으며, 그중 Gros(2009)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전 지구적 후생극대화를 위해서는 양(+)의 BCA가 필요함을 이론적으로 보여주었다.[9)] 한편 Suh(2012)는 국경간 탄소조정이 가능한 경우 이 조치의 존재가 개별 국가의 국내 탄소가격 수준 결정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선진국이 BCA 도입 이전에 비해 자국의 탄소가격을 높게 설정할 유인을 형성하게 되고, 역으로 탄소가격이 낮은 개도국은 선진국 시장에서 자국산업이 BCA를 통하여 입게 될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자국의 탄소가격을 이전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게 됨을 보여주었다.[10)]

---

7) WTO-UNEP Report(2009).

8) Böhringer, Fischer and Rosendahl(2010).

9) Gros(2009).

10) Suh(2012).

환경과 무역에 대한 법적인 연구 중 Vranes(2009)는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환경 전반과 관련된 국제통상법 규범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그의 기존 연구들과의 다른 점은 (1) 국내조치의 역외적용, 일방조치의 개념 등 가장 근원적 국제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 (2) 기후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국내조치를 검토하기보다는 WTO 규정 설명에 중점이 있다는 점, (3) 환경분야 가운데 기후변화와 오존층 보존 조치와 관련된 WTO 규정을 검토하였다는 것이다.[11] Bernasconi-Osterwalder *et al*.(2006)는 환경분야와 관련된 WTO 규정을 설명하였는데, 이 연구의 특징은 동종상품, 일반예외조항, 필요성 요건, 생산 · 공정 방법(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등 매우 구체적인 쟁점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관련된 WTO 분쟁사례를 소개한다는 점이다.[12]

한편 Condon(2009)은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WTO 규범의 관계에 대한 통상법적인 연구로서 기후변화 관련 조치들의 WTO 합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WTO 법상 미해결된 쟁점사항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보조금협정')하의 환경보조금 문제, PPMs가 동종상품의 결정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XX조 및 여타 WTO 협정과 다자환경협정 간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13] 또한 Cottier, Nartova and Bigdeli(eds)(2009)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다양한 국내조

11) Vranes(2009).

12) Bernasconi-Osterwalder *et al*.(2006).

13) Condon(2009).

치를 국제통상규범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바, 특히 PPMs, 재생에너지, 기술이전, 투자에 관련된 조치를 WTO 규범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14)]

앞의 법률적 연구보다 주제의 범위를 좁혀 녹색성장정책 중 산업지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Rubini(2012)는 재생에너지를 위한 보조금과 WTO 규범의 양립가능성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WTO가 이러한 보조금의 중요성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회원국들에 적절한 정책공간을 제공하는 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적합성에 대한 법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정책공간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규범 명료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사법적 해석보다 입법적 규범개선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15)]

Lodefalk and Storey(2005)는 Rubini(2012)와 달리 재생에너지 보조금에만 그치지 않고 탄소세와 국경세조정, 교토의정서 메커니즘인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 등과 같은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WTO 보조금협정과 연결시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보조금협정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치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으며, 특히 공여국이 제3국에 대한 잠재적 악영향을 고려하면서 특정적이지 않고 투명성 있는 보조금을 활용하면 통상마찰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16)] 한편 박지현(2011)은 배출권거래제의 보조금협정상의 지위를 분석하였는데,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설계에 따라 조치가능 보조금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WTO 규범과 합치하기 위해서 우선 배

14) Cottier, Nartova and Bigdeli eds.(2009).

15) Rubini(2012).

16) Lodefalk and Storey(2005).

출권거래 보조금을 차별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7)]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술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Chang(1997)은 상품 무관련 PPMs(NPR PPMs: Non-Product-Related PPMs)에 근거한 환경라벨링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하 'TBT 협정'이라 한다.)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민간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GATT의 적용도 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환경라벨링의 남용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협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18)] 이로리(2011)는 탄소라벨링에 대한 통상법적인 검토를 통해 WTO 협정에 합치하는 탄소라벨링의 요건을 분석하여 국내 탄소라벨링 제도의 운영 및 해석 외에 탄소라벨링에 대한 통상법적 평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NPR PPMs에 대한 TBT 협정의 적용 여부, 민간의 탄소라벨링, NPR PPMs과 상품의 동종성, PPMs와 GATT 제XX조, 녹색정부 구매의 정부조달협정과의 합치성 문제 등 탄소라벨링 관련 주요 쟁점들을 다루었다.[19)] 한편 김대원(2009)은 WTO법상의 환경마크 지위에 있어서 NPR PPMs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이 주제와 관련된 쟁점 중 특히 GATT에서 NPR PPMs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법적 추론으로 동종상품의 기준에 관한 심사를 통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TBT 협정 하에서의 비위반제소의 의의를 별도로 기술하였다.[20)]

앞에서 요약된 대표적인 문헌들은 주로 기후변화와 WTO 규범의 관계

17) 박지현(2012).
18) Chang(1997).
19) 이로리(2011).
20) 김대원(2009).

에서 국경세조정, 보조금, 기술규제 등 특정한 쟁점을 다루었거나, 어느 한 나라의 녹색성장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지 않고 수많은 국가와 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다자무역에 대한 연구였다. 반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문헌과 달리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법령, 구체적 조치 등을 검토하는 특수성을 보여준다. 둘째, 한국 정책의 맥락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여러 이슈를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제공한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보고서에서는 녹색성장과 무역 관련 국내외 규정, 사례, 관행, 현황 등을 검토한다. 또한 유럽 출장(유럽집행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RUEGEL 연구원 등 방문), 미국 출장(Peterson 국제경제연구원, Brookings 연구원, 의회조사국 등 방문), 기술규제 및 DDA 논의에 대한 국내 간담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부분에 반영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국내법, 각종 WTO 협정문, 기후변화 관련 조약, 분쟁사례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외국 녹색성장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림 1-1. 보고서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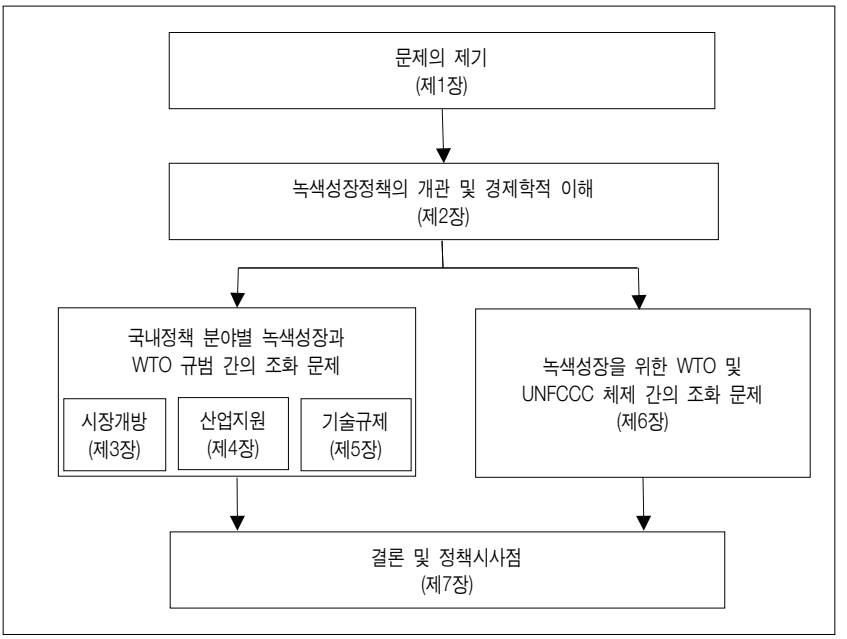

본 보고서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제2장에서는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WTO 규범 해석에 앞서 녹색성장정책이 무역 일반 및 다자무역제도와 어떠한 맥락에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소개한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을 경제학의 이론적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시킨 후, 각 정책유형별 논리적 필요성과 다자무역제도와의 관련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각국은 기후변화를 완화할 목적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내 규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조치는 수입상품을 차별하거나 수입을 규제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통상을 규율하는 WTO 협정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 규정에 의하여 정당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내조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상품무역과 관련된 주요 WTO 시장개방 규정과 이에 대한 GATT/WTO 패널 및 상소기관의 해석을 검토하고,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분석한다.

제4장은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과 WTO 보조금규범의 관계를 다룬다. 먼저 보조금협정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에, 녹색산업 육성 지원, 녹색 연구개발(R&D) 지원, 녹색상품 소비촉진 지원, 배출권거래제와 보조금의 관계의 네 가지 범주하에 한국의 녹색성장 지원정책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 현황과 관련 법률 조항을 파악하고, 진행 중인 대표적 사업을 설명한다. 또한 WTO 보조금 통보문(notification), WTO 분쟁사례, 상계관세 사례를 위주로 제기된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녹색성장 조치와 WTO TBT 협정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이를 위해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규제 중 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관된 국내제도에 대해 조사한다. 나아가 국내 기술규제와 TBT 협정 간 저촉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TBT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정무역현안, WTO 분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5장에서 주요 국내정책 분야별로 녹색성장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문제를 다루는 반면, 제6장에서는 대외적으로 접근하여 WTO와 UNFCCC 다자체제 간의 조화를 제고하고 녹색성장과 WTO 규범 간의 양립가능성

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WTO와 UNFCCC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하는 WTO 체제의 녹색화 방안과 기후변화체제에서 다자무역규범의 준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각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WTO 녹색화 방안으로 환경과 무역 관련 다자논의 및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녹색화를 통해 WTO를 더욱 친환경적인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기후변화체계에서 WTO 규범의 준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기후변화 조약상의 무역 관련 조치 조항과 기후변화 대응조치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앞 장들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방안 및 정책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본 연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분야를 다루려고 했으나, 공간적 및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연구에 포함된 각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모든 관련 조항, 사업, 조치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것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부분을 식별하여 검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12년 5월 14일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에 시행 예정이므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간략하게 다루었으며 심도 있게 분석하지 못했다.[21] 따라서 향후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통상법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1) 제3장 3절(나), 제4장 2절(라) 참고.

본 보고서의 범위에서 제외된 녹색성장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관계, 서비스 관련 규범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도 향후 연구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녹색성장과 다자무역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

1. 기후변화와 무역
2.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개관
3. 녹색성장정책의 경제학적 근거와 통상이슈화의 이론적 배경
4. 소결

무역의 증대가 환경오염의 증가를 수반한다면, 환경차원에서는 무역이 억제되는 것이, 무역차원에서는 환경이 희생되는 것이 바람직한 가치의 상충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무역과 환경 두 가지 영역 모두 인류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란 점에서, 이 두 영역이 가능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장에서는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WTO 규범 해석에 앞서 녹색성장정책이 무역 일반 및 다자무역제도와 어떠한 맥락에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소개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와 무역 간의 일반적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는 한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의 추진배경과 기본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정책수단들을 경제학적 논리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수단 유형별로 그 논리적 필요성과 다자무역제도와의 관련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1. 기후변화와 무역

가. 배경

2011년 현재 전 세계 무역규모는 1950년과 비교하여 약 32배 커졌으며,[22] 세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에서 국제무역의 비중이 25%에 달할 정도로 국제무역이 인류의 산업활동에서 차지하는

22) WTO(2011d), p. 204.

중요성은 점차로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23] 한편 기후변화 맥락에서 볼 때,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1.5%가 국제무역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국제교역의 증대가 온실가스 배출의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의 꾸준한 성장원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 교역증대의 주요 원인은 통상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25] 그중 첫째는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운송비용 및 소통비용 감소로 인한 무역량과 범위의 증가이다. 둘째로, 다자 및 지역 무역협정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국가들의 무역 · 투자 개방정책이 꼽힌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의 개방정책을 통한 국제무역 참여로 인한 측면이 큰데, 개도국이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41.4%로 196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앞선 두 가지 요인을 배경으로 등장한 전 세계적인 분업생산구조의 등장도 주요한 전 세계 교역증대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세계 곳곳에서 생산하게 되면서, 개도국들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기회 증가가 최종재 교역 외에 중간재 교역을 증대시켰다는 점이 본 요인의 특징이다.[26]

---

23) WTO(2012e), p. 16.

24) Peters and Hertwich(2008), p. 1403.

25) WTO-UNEP Report(2009), pp. 48-49.

26) WTO(2012e), p. 3.

나. 무역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효과

국제무역이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최근 국제무역의 규모가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국제무역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1) 규모, 구성, 기술 효과의 구분

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실증연구는 전체 효과를 바로 하나로 묶어서 분석하는 대신 규모효과, 구성효과, 기술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종합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27] 첫째, 규모효과(scale effect)는 경제활동의 양적 증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관계를 일컫는다. 가령 개방경제가 폐쇄경제보다 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무역개방 정책이 규모효과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무역개방 이전에 비하여 더욱 활발해진 경제활동으로 더 많은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특히 국제교역량의 증가는 국경간 교통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이어진다. 규모효과가 물론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의 관계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통하여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국제무역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에 의한 규모확대에 관한 개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는 무역개방으로 각 산업부문간 상대가격의 변화를 가져와 각 국가들의 산업생산 패턴을 변화시키는 관계를

27) Copeland and Taylor(2003).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진 부문의 제품생산 증대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배출집약적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는 무역개방으로 배출집약적 산업 생산이 더욱 증가하여 국가 배출량 증대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무역개방은 선진국들이 친환경 산업에 집중할 동안, 관련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들은 배출집약적 산업으로의 특화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효과(technique effect)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수단 발달로 인하여 배출량 감소가 발생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접근이 어려웠던 국가들은 무역개방을 통하여 이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되며, 수출국 입장에서도 확대된 친환경 기술 관련시장으로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할 동기가 부여되어 전 세계적인 배출량 감소로 이어지는 측면이 존재한다. 기술효과와 관련한 또 다른 측면은 무역개방에 의한 소득수준 증가가 대중들의 환경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춘다는 것이다. 일인당 소득과 환경의 질 간에는 역-U 모양의 관계가 있다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 이러한 개념이며,[28] 이에 대한 논의는 후술하기로 한다.

2) 기타 효과

앞선 세 가지 효과 외에 무역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할 때 사용되는 개념들이 있다. 먼저, 무역을 통한 기술확산(technology spillover through trade)은 연구개발을 통한 일반적인 기술확산이 무역을 통하여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무역으로 기존에 생산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28) Grossman and Krueger(1995).

가능해지고, 선진국들로부터 새로운 생산방식에 대한 지식이전 등으로 해외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무역뿐 아니라 투자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의 투자로 인한 해외기술이전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Helpman(1997)에 따르면, 한 국가가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을수록 R&D 활동에서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친환경 기술도 이러한 예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29)]

앞선 세 가지 효과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또 다른 중요한 효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무역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 외에 기후변화 적응에 미치는 효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무역은 비교우위를 가진 제품만 생산하게 함으로써 수입품에 의존하게 하여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무역은 또한 국가간 수요 · 공급의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가령 특정 제품들의 부족으로 이어질 경우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통하여 추가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기후변화 차원에서 보자면, 기후변화로 인한 농식품 부문의 공급부족 문제는 관련 교역을 통하여 해소 가능하며, 이는 기후변화 적응비용 감소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30)]

3) 효과분석의 실증결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하여 규모효과와 기술효과는 서로 반대로 작용하고, 구성효과는 국가의 비교우위와 오염피난처 가설에 의존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무역의 전반적인 영향은 쉽게 분석할 수 없다.

---

29) Helpman(1997).

30) Reilly and Hohmann(1993).

이는 세 가지 효과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험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역이 더 개방될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규모효과가 기술효과나 구성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될 경우에 해당된다.

실증연구의 결과들은 다소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Holtz-Eakin and Selden(1995)은 1951년부터 1986년까지 130개국 중 108개 국가에서 조사하였는데,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국지오염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Huang, Lee and Wu(2008)는 교토의정서의 Annex II 국가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 쿠즈네츠 가설과 맞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Roberts and Grimes(1997)는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과 경제성장 레벨이 선형관계에서 곡선관계로 바뀌었음을 보였지만, 이런 현상은 몇몇 개도국들의 생산효율성 발전과 저개발국들의 효율성 저하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라 결론지은 바 있다.

이러한 효과분석 결과가 본 보고서에서 중요한 이유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차이에 따라 배출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는 앞에서 잠시 살펴본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 있다. 환경 쿠즈네츠 가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인당 GDP가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환경오염이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면, 이는 경제가 성장하여 규모효과가 커지더라도 기술효과나 구성효과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의 질적 제고가 경제성장에 저해요소가 될지 혹은 양립가능한 가치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국가들, 특히 환경 쿠즈네츠 곡선상 변곡점 부분에 존재하는 중진국에 대해 본 가설

이 던지는 도전은 크다 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이러한 가설에 대한 긍정과 더불어, 이러한 가설이 단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기타 관련 이슈

지금까지 무역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무역과 기후변화 간의 관계는 일방향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후변화의 물리적 과정에 따라 무역의 패턴과 양이 변화될 수 있다. 즉 기후변화는 각국 산업의 비교우위를 변화시킴으로써 무역의 패턴을 바꿔놓을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생산, 수송과 유통 과정에서 취약성을 증가시켜 무역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충분한 연구를 통하여 정책입안을 해야 할 중요한 이슈이지만, 그 효과가 미칠 기간이 장기간이란 점에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놓이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큰 사건 발생으로 관심이 집중될 때 고려가 진전되는 경향이 있다.

2.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개관

가. 배경

앞 절에서 기후변화와 무역 간의 일반적 관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 도입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도입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또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국제기후변화체제와 국제통상체제에서의 조화노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본 절을 시작한다.

1) 국제기후변화체제 측면

국제기후변화체제의 근간인 UNFCCC는 인류의 (경제)활동이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높여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과학적 증거들에 기반을 두어, 회원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2년 체결 당시 합의된 내용은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만이 감축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개도국들은 감축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해왔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중국 · 인도 등 신흥개도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세계배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게 되었다.[31]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모든 회원들이 동일한 법적 책임을 갖기로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세계배출량 10위에 이르러, 선진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감축의무 부담 압력을 받아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 국가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UNFCCC상 감축의무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감축목표가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적 감

31) G20 선진국(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OECD 유럽)과 G20 개도국(남아공, 사우디,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멕시코)의 배출량 비율이 교토의정서상 감축 기준연도인 1990년에는 약 2:1이던 것이 2009년에는 1:1.2로 역전되었다.

축목표'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신 등을 고려할 때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시장에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투자에 대한 수요창출의 중요성은 다음에서 살펴볼 국제통상체제에서의 요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국제통상체제 측면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 라운드가 출범되었다. 특히 EC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DDA에 환경분야도 포함되었는데, 도하 각료선언 제31항에 따라 DDA 환경의제는 다음과 같이 3개의 협상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1. WTO 규범과 다자간 환경협정(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상의 특정무역의무와의 관계
2. MEA 사무국들과 WTO 관련 위원회 간 정기적 정보교환 절차 및 옵서버 자격 부여
3. 환경 관련 상품 ·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WTO 차원에서 환경의제가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MEA가 수적으로 많아질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복잡해짐에 따라 그 영역이 확대되어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WTO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국제적 인식이 있다. 세 가지 협상의제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 번째이다. 환경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역특혜를 허용하여 보다

원활한 유통이 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라 환경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다. 즉 환경문제를 무역자유화라는 WTO식 방안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논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거와 궤를 같이하는 개념이 '신성장동력산업'이며 특히 이 중 녹색기술 산업이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로 에너지효율이나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녹색수요가 증대될 것이고, 아직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녹색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다음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접근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개념을 산업적 · 무역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나. 기본목표

녹색성장은 산업구조를 녹색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소득 증대를 기본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기본 추진전략은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의 3대 전략으로 구분된다.

그림 2-1. 녹색성장의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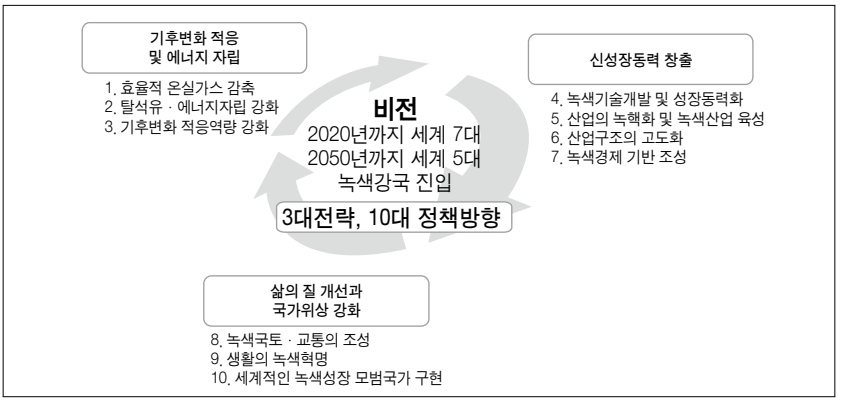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웹사이트(2012b).

3대 전략은 다시 10대 정책방향으로 세분화되는데, 개별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목표는 [표 2-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도입의 근저에는 우리나라 에너지소비와 생산구조는 해외의존형 · 탄소다배출형 체제로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탈석유와 에너지 자립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해외의존형 · 탄소다배출형 경제에서 에너지자립 · 녹색경제로의 질적 전환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가 깔려있는

표 2-1. 10대 정책방향별 추진방안

추진방안	주요 내용	목표
①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구현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탄소정보공개 확대, 국가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② 에너지 자립도 제고		(2009년) 32 → (2020년) 50 → (2050년) 100%
③ 효과적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지원	기후감시 · 예측능력 향상,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등	기후변화 감시 · 예측역량 선진화: (2009년) 40 → (2020년) 90 → (2050년) 100%
④ 녹색기술 기술력 제고 및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 (2009년) 2 → (2020년) 10 → (2050년) 18%
⑤ 자원순환형 경제 · 산업구조 구축	자원순환 · 생산성 제고 및 자원순환산업 성장동력화	자원순환율: (2009년) 15 → (2020년) 17.6 → (2050년) 19.8% 저탄소 고효율(doing more with less) 산업구조 구축
⑥ 첨단융합산업 육성	방송통신 융합, IT융합기술, 신소재, 바이오산업 등 첨단융합으로 신성장동력 영역 확대	IT 융합산업 수출액: (2009년) 755 → (2020년) 1,443 → (2050년) 3,489억 달러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⑦ 탄소시장 활성화 및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배출권거래제 도입, 녹색주가지수 개발 등 녹색기술 · 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국내 탄소시장: (2009년) 준비 → (2020년) 2 → (2050년) 5조 원
⑧ 개개인의 定住공간 녹색화	자원순환형 지역개발, 녹색도시 모델개발 및 조성, 녹색건축물 확대 등	자원순환형 지역개발, 녹색도시 모델개발 및 조성, 녹색건축물 확대 등 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생태공간 확대
⑨ 녹색성장 교육 확대 및 국민인식 제고	탄소라벨링 인증제품 및 녹색구매 협약기업 확대	탄소라벨링 인증품목: (2009년) 50 → (2020년) 1,000 → (2050년) 4,000개
⑩ 국제사회 기여 및 모범국가 이미지 정립	온실가스 감축노력 추진 및 녹색 정부개발원조(ODA) 비중 확대	녹색 ODA 비중: (2009년) 14(e) → (2020년) 30 → (2050년) 40%

자료: 녹색성장위원회(2009b).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대 전략과 함께 10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는데, 가령 이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자립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절약 및 청정에너지 보급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원전 및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2020년까지 에너지원단위(0.233), 신재생에너지 보급률(6.08%), 원전 설비비중(32%), 석유자주개발률(31%)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구체적으로 고효율 기기 보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2020년 에너지 자립도는 50%, 2050년에는 100% 달성을 기대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표 2-2. 에너지 자립도 관련 연도별 목표수준

관련 지표	연도별 목표수준			
	2013년	2020년	2030년	2050년
에너지원단위(toe/천 달러)	0.290	0.233	0.185	0.101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78	6.08	11.0	30.0
원자력발전 설비비중(%)	27	32	41	3E 고려* 적정비중 유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	31	40	100
에너지 자립도(%)	42	50	65	100

주: * 3E(에너지 안보 · 효율 · 환경)를 고려하여 원자력 적중비중 확보.
자료: 녹색성장위원회(2009b).

다. 녹색성장 추진전략

1) 녹색성장 추진체계 및 주체

현재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간으로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계획은 국가전략, 5개년 계획, 기관별 계획으로 구성되며, 부문별 계획은 핵심계획과 연관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전략은 녹색성장의 장기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2009~50년)하며, 5개년 계획은 녹색성장 장기비전 달성을 위한 5년 단위의 상세 실행계획이고, 기관별 계획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단위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이다. 핵심계획은 녹색성장과 직접 연관된 계획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며, 연관계획은 녹색성장과 간접 연관된 계획으로 소관위원회에서 확정한 후 기본방침을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32] 각 계획의 시행주체는 중앙 및 지방 행정조직이며,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해 각 부처 및 광역지자체는 중앙추진계획과 지방추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일관성 및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2) 정책수단의 구분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정하고 있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르면, 녹색성장 목표 달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체별 적극참여 유도를 위하여 5대 정책수단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전통적인 규제 위주보다는 효율적인 시장원

32) 핵심계획의 예로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연관계획의 예로는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등을 들 수 있다.

리를 적극 원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1) 녹색 신기술 개발 및 시장화를 위한 경성 · 연성 인프라 구축에서 정부의 촉매적 투자 개입 등의 '국가직접투자', (2) 환경수준을 공공재로 간주하여 이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능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는 '규제 도입', (3) 환경친화 준수 및 오염복원 등 직접 거래시장이 없는 경우 비용책정의 한계극복을 위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의 '유인책', (4) 환경적 영향의 저감에 수반되는 비용과 이로 인한 편익을 시장 메커니즘에 녹아들게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보장책인 '외부경제 내부화', (5) 정부는 사회선행의 담지자(擔持者)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친환경 생활을 촉구할 수 있는 창도(唱導) 역할 수행을 위한 '도덕적 설득'이 그것이다.

표 2-3. 녹색성장 5대 정책수단

정책수단	전개방향	주요 추진내용
외부경제 내부화	"개선효과 확산이 가능한 열린 수렴"	
국가직접투자	"선택과 집중"	o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한 인프라 구축 - 녹색 R&D 투자 - 녹색 뉴딜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유인책	"작동 유발을 위한 최소 자극"	o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신규시장 창출 및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 - 친환경 세제 개편 - 발전차액 보조금제도 등
규제 도입	"유인책과 공조" "對 시장 메시지 확보"	o 에너지 효율 상승 및 청정에너지 활용과 같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사회에 명확하고도 직접적인 사인을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도덕적 설득	"생활수칙 개발" "要人 후광효과 활용"	o 녹색성장 교육 또는 홍보를 통해 시민의식 전환 추진 - 녹색교육의 정규 학과과정 포함 -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자료: 녹색성장위원회(2009b).

3) 추진경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5개년계획 국가전략'이라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최상위 국가계획을 기준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연도별 달성목표, 투자계획, 수행주체 등 실행방안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9조를 그 법적 근거로 하는 '5개년 전략'은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 · 추진전략 · 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을 수립 ·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범부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 국민참여형 국가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및 국가전략은 산업 · 무역적 차원에서는 '신성장동력'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비전이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 외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산업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세워짐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은 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령 · 제도개선과 더불어 공공수요 활용, 시범사업 등을 통한 조기 시장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2012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33]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으로 녹색기술, 첨단융합에서 지난 3년간(2009~11년 누계) 생산 432조 원, 설비투자 37조 원, 수출 561억 달러를 창출하였다.

* 생산: (2009) 92조 원 → (2010) 140조 원→ (2011) 200조 원
* 설비투자: (2009) 6.9조 원→ (2010) 12.9조 원→ (2011) 16.8조 원
* 수출: (2009) 100억 달러 → (2010) 189억 달러 → (2011) 272억 달러

33) 지식경제부(2012).

또한 신성장동력 대부분이 아직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고, 완제품 위주의 전략으로 소재 · 장비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은 미흡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3. 녹색성장정책의 경제학적 근거와 통상이슈화의 이론적 배경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기술 개발 및 시장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정부의 촉매적 투자, 건물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직접규제,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설정(carbon pricing)으로 외부경제를 내부화하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등의 정책을 활용 및 계획하고 있다. 앞서 본 5대 정책수단 중 마지막 도덕적 설득을 제외한 네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경제학적인 근거(rationale)와 다자무역제도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경우 이론적 함의들을 논하고자 한다. 이론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국가직접투자와 유인책은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다루기로 한다.

가. 외부경제의 내부화 정책

1) 경제학적 근거: 온실가스 배출의 부(負)의 외부성

온실가스는 그 특성상 그 환경적 효과가 배출원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負)의 외부성이 존재한다. 즉 민간 경제주체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할 때, 배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적 비용만을 고려할 뿐, 타 경제주체들이 부담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시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높은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게 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부의 외부성의 존재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해당 외부성에 따른 비용만큼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외부성에 따른 비용만큼 가격이 설정되면 개별 경제주체는 온실가스 배출 시 외부성에 따른 비용을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어(즉 외부성을 내재화하여) 시장을 통해 스스로 사회적으로 최적의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골자이다.

외부성의 내재화를 위한 정책은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만큼 추가비용을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로 가격 및 시장메커니즘인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로 나타나고 있다. 탄소세는 연소와 관련된 화석연료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부가되는 세금으로서, 연소되는 이산화탄소량과 비례하는 화석연료의 탄소량을 측정하여 세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실제 집행에서는 탄소세와 에너지세의 조합이 주로 이용되는데, 이는 탄소세와 에너지세가 다른 과세표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에너지세는 다른 에너지원의 양에 기반을 두고 탄소세는 탄소함유량에 기반함에 따라, 에너지세는 화석연료는 물론 비탄소(carbon-free) 에너지원에도 부과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가격을 책정한다는 점에서 탄소세와 동일하지만, 각 배출원에 대해 총배출량 한도(cap)를 설정하고 고정된 한도를 '배출 허용할당량' 또는 할당량(allowance)으로 전환하여 실제 배출량이 이보다 적으면 배출한도와의 차이만큼 팔 수 있고, 반대에 경우 구입

하여 허용량에 대한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조성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보통 할당량 한 단위는 법적 소유권자에게 1톤의 이산화탄소 또는 그와 동등한 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론적으로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각 기업의 한계저감비용과 동일하게 형성되어, 개별 기업의 저감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효과는 시장에 가격신호를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 이뤄진다. 외부성에 대한 가격이 설정되기 전과 비교하여 한 단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되면 배출원으로 하여금 이전보다 덜 배출할 유인을 제공한다. 배출량 감소노력은 일차적으로는 배출을 유발하는 생산공정의 감소를 통하여 이뤄지지만, 이차적으로는 이전과 동일량을 생산하더라도 총배출량은 적게 만드는 기술 및 연료의 사용으로 전환을 통하여 이뤄진다. 즉 외부성을 내재화하는 정책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감소 자체뿐 아니라, 제품과 연료로의 전환 촉진, 경제적 생산과 수요 구조의 변화까지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간접적 효과로는 에너지 효율성 등 관련 측정(measurements) 정보 확산, 친환경적 기술투자 유도나 배출감소와 관련한 투자패턴 변화를 들 수 있다.

2) 통상이슈화의 이론적 배경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등 외부성에 대해 가격설정을 하는 방식은 모두 배출기업으로 하여금 이전과 비교할 때 생산에 추가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추가비용은 동일국가 내 기업들간 생산기술이나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지만, 해당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과 기준에 따른 차등이란 점에서 공정성(fairness) 논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

로울 수 있다. 문제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한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설정 수준에 차이가 있을 때이다. 국가간 상이한 수준의 환경정책과 이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관련 비용의 차등적 부담은 단지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에 의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성에 대한 가격설정은 부담의 계량화를 통하여 부담의 비교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통상쟁점화되기 쉬운 이론적 특성을 가진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 환경오염에 대한 감축비용을 한 국가에서는 부담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비용부담 국가에 속한 기업들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 경쟁력 우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배출규제로 인하여 규제가 미약한 지역으로 산업이 이전하는 현상인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탄소누출과 기업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환경체제인 UNFCCC상 의무감축국으로 하여금 일국 정부의 일방적 개입의 타당성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즉 국제적 수준에서 공정한 외부성의 내부화를 위해서는 양국간 환경규제의 정도 차이만큼 배출비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논리에서 고려되는 것이 탄소배출의 국경간 조정(BCA)이다. 그 구체적 형태로는, 탄소세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탄소함유량에 따라 화석연료 소비나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에 대한 배출권 구입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주로 고려된다.

탄소누출과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맞물려 있다. 탄소배출의 국경간 조정에 대한 이론적 논거는

주로 비용부담의 차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공정성(기업경쟁력 약화 및 탄소누출)과 함께 비의무감축국의 감축노력 동참 압력을 통한 환경적 건전성에 기반하고 있다. 지금까지 탄소배출의 국경간 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는 주로 모든 상황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볼 때 이 조치가 도입될 경우 각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살펴보는 방식이다.[34] 탄소배출의 국경간 조정에 대한 이론연구는 최근 들어 시작되고 있으며, 그중 Gros(2009)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전 지구적 후생극대화를 위해서는 양(+)의 탄소배출의 국경간 조정이 필요함을 이론적으로 보여주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생산자보다는 탄력성이 높은 생산자가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논리를 따를 경우 필수재를 공급하는 중국보다는 유럽연합(EU)에서 공급하는 사치재의 수요탄력성이 충분히 클 때 중국이 아니라 EU 제품에 탄소배출의 국경간 조정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 약화 우려 외에 탄소배출의 국경간 조정의 주요 논거가 비의무감축국의 감축노력 동참 유도였다. Suh(2012)는 탄소배출의 국경간 조정이 가능한 경우 이 조치의 존재가 개별 국가의 국내 탄소가격 수준 결정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앞선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가정하는 것과 달리 각국의 산업이 국제시장에서 불완전 경쟁상황에 처해 있고 환경정책이 자국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결정될 경우 탄소배출의 국경간 조정은 개도국의 감축노력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탄소배출의 국경간 조정

34) Böhringer, Fischer and Rosendahl(2010).

은 탄소가격이 높은 국가가 낮은 국가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역은 이론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탄소가격이 높은 선진국이 환경규제 수준을 높여 탄소가격을 높일 때, 이전에는 자국 내 기업에 대해서만 보이던 감축효과가 탄소배출의 국경간 조정을 통하여 상대국 기업에 대한 감축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선진국이 BCA 도입 이전에 비해 자국의 탄소가격을 높게 설정할 유인을 형성하게 된다. 역으로 탄소가격이 낮은 개도국은 선진국 시장에서 자국산업이 BCA를 통하여 입게 될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자국의 탄소가격을 이전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게 된다. BCA의 도입은 전 세계적 배출량 감소를 가져오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탄소가격으로 대표되는 감축노력의 불균형 현상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할 수 있다.[35)]

통상쟁점화 가능성 측면에서 배출권거래제 운용에 주목할 점이 있다.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배출권거래제는 다양한 설계변수가 존재하는데, 이 중 무역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인 초기할당량(initial allowance)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초기할당방법은 대상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분배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정 산업들에서 경쟁력의 잠재적 손실과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규제기관은 기존의 배출원에 할당량을 분배하기 위해 주로 두 가지 방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무상할당과 경매제가 그것이다. 무상할당은 에너지 효율적이고 무역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 분야의 경쟁력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반면, 경매제는 즉각적인 가격 신호 제공이 가능하여 배출

35) Suh(2012).

권거래제의 유효성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효과성 측면에서는 경매제가 무상할당에 비해 바람직하나,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 정치적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무상할당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무상할당은 보조금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제도운용이 필요하다.

비교가능성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 유발가능성,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법적인 측면 외에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특정 제품들의 배출량 계산을 위해서는 각 생산 과정에서의 배출량에 대한 측정이 필요한데, 이는 제품, 기업,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해 제품 수입국가가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의 배출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정확한 양의 배출량 측정은 많은 비용을 요구할 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 대한 기술정보 유출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더구나 정보를 요구하는 국가의 기술수준이 수출국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이만큼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이론적인 비교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제 비교를 위해서는 높은 관측비용(observation costs)이 요구되어 그 적용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나. 국가직접투자 및 유인책: 친환경 기술 확산증진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

1) 경제학적 근거: R&D 파급효과의 정(正)의 외부성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투자는 두 가지 종류의 외부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앞서 본 환경문제가 가지는 부(負)의 외부성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타 기술 R&D가 가지는 정(正)의 외부성인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가 있다는 것이다. 기술개발의 파급효과란 한 기업의 기술투자로 기술혁신이 일어나면 이는 시차를 두고 다른 경제주체들에 파급되어 결과적으로 관련 기술이 사회적으로 향유된다는 특징을 일컫는다.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부족할 경우 개별 기업은 사회적으로 최적 기술개발 수준보다 낮은 투자유인을 가지게 된다. 환경 관련 기술은 혁신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환경의 부의 외부성과 맞물려 사회적 최적수준의 기술투자와 개별 기업의 기술투자 간의 유인 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와 산업체들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저탄소 기술을 좀 더 알맞은 가격에 발전시킬 수 있게 고무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직접투자 및 유인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저탄소 신기술 개발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성능목표 달성과 같은 특정 상황이 이행될 경우 정부지원을 제공하거나 신기술 개발에 대한 포상이나 지원정책 등이 그 예이다. 둘째, 재생에너지, 친환경 제품 및 기술의 보급 ·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다. 이에는 세금감면 및 세액공제, 친환경 제품과 대체에너지 소비 및 관련 분야 투자유인 등의 재정조치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의 가격보조조치(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로 전환), 대체에너지 기술 구축 시 소요비용 감소를 위한 정책 등의 투자지원 조치가 있다.

2) 통상이슈화의 이론적 배경

자국 기업에 대한 일국의 정부보조금으로 발생된 해외기업들이 입게

될 불공정 무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협정에서는 보조금을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중 R&D 보조금은 확산효과라는 외부성 문제 해결수단이라는 점에서 보조금협정 제8조에서 허용보조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5년의 시한을 가진 잠정조치로 1999년 허용보조금으로서의 성격이 만료되어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직접투자 및 유인정책은 소비자의 비용감소와 제품가격 하락을 가져오며, 특히 국제무역의 관점에서는 수출보조를 통한 해외시장 접근성을 높여 주고 수출증가로 이어진다. Spencer and Brander(1983)는 산업이 국제적으로 과점의 형태로 불완전경쟁일 경우 각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해외 경쟁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저지할 유인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R&D 투자수준을 정한 후 생산량을 결정하는 경우, 한 기업이 막대한 R&D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상대기업은 이에 맞서 투자경쟁을 벌일지 혹은 상대의 투자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범위 안에서 이윤을 극대화는 생산량만을 생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기업의 최적반응은 (1) 상대기업이 R&D 투자를 한다면 투자경쟁으로 상호 피해를 주고 낮은 이윤을 얻는 대신 투자경쟁을 피하고 일정 수준의 이윤을 확보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2) 상대가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R&D 투자규모를 확충하여 시장점유율을 늘려 더 큰 이윤을 얻는 것이 된다. 따라서 각 기업은 투자계획 단계에서 자신의 투자계획이 상대가 투자를 하든 하지 않든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상대의 투자계획을 위축시켜 해당 산업에서의 리더가 되

는 것을 바라게 된다. 하지만 기업들이 합리적이라면 한 기업이 반드시 투자계획을 발표하더라도 그러한 투자계획이 신뢰할 만한 위협(credible threat)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한 기업의 투자계획 발표만으로는 산업 리더의 자리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의 R&D 투자 및 유인책은 자국 기업의 투자계획을 단순한 전략적 위협이 아니라(기업 측면에서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신뢰할 만한 위협으로 만들어 자국 기업이 해당 산업에서 리더가 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일국의 R&D 직접투자 및 유인정책으로 인한 자국기업의 수출증진은 상대국 기업의 이윤 이전(profit-shifting)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적 측면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규제활용: 친환경 상품 및 기술 사용증진을 위한 기술규제

1) 경제학적 근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완전 정보

기술규제는 규제적용의 강도에 따라 강제적 기준과 자발적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강제적 기준이란 규제당국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이하인 제품에 대하여는 유통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하여, 자발저거 기준은 유통은 허용하되 기준 이상인 제품에 대해 인증(certification)을 부과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인증가치(certification value)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규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는 제품시장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즉,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정확히 관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술규제라는 정책개입으로 정보

격차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다.[36]

친환경 상품 및 기술의 사용을 증진을 위한 기술규제는 적용 단계에 따라 제품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기술요건과 최종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에 대한 기술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요건들은 주로 국가차원에서 시행되지만, 경우에 따라 그 주체가 민간인 경우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도 존재하게 된다. 특히 제품생산 과정에 관한 기술요건은 디자인과 제품성능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가능하다. 디자인 관련 요건은 주로 배출을 통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사용하며, 제품 자체나 제품생산 과정에서 취해야 할 특정한 조치를 명시하고 어떤 기술을 이용해야 하는지 밝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품성능과 관련한 요건은 제품 자체 및 생산 과정에서 요구되는 성능에 관한 규격을 특정한 환경적 결과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에너지 비효율적 제품의 감소나 효율적인 대안 개발을 목적으로 취해진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관련 요건이 성능 관련 요건보다 좀 더 유연하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목표달성 비용이 더 낮은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7]

기술규제가 생산자입장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도입이 정당화되는 기술규제는, 규제가 줄이는 정보대칭성만큼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 국가의 기술규제는 수출기업에게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가져온다.

---

36) 장용준, 서정민, 김민성, 양주영(2011), pp. 159~160.

37) WTO-UNEP Report(2009).

먼저, 수출기업 입장에서 수출국의 기술규제를 따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설비 설치하여야 하고 인증·검사에 따르는 시간이 소요되는 등 순응비용 증가라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규제에 대한 순응비용(compliance cost)의 증가를 가져온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규제로 인해 수출기업이 제품의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고 소비자 선호와 같이 진출 국가에 대한 시장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등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기술규제에 따른 시험인증을 통과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 더 높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즉, 기술규제를 통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감소가 가능하다.[38)]

2) 통상이슈화의 이론적 배경

저탄소 기술규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무역규범으로 기술규제의 준비 · 도입 · 적용 등이 불필요한 기술적 무역장벽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담은 WTO TBT 협정이 있다. TBT 협정은 WTO 회원국들이 기술규제와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상호조화를 이룰 것과, 타 회원국들의 기술규제를 동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을 권장한다. TBT 협정의 또 다른 측면으로, WTO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투명성이 기술적 무역장벽에 중요하게 적용되어 무역의 흐름이 공정하고 원활하며 예측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함이 강조되어 있다.

환경 관련 규제가 어떻게 무역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표

38) 장용준, 서정민, 김민성, 양주영(2011), p. 191.

적인 경제학 이론연구는 Barrett(1994)를 들 수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일국의 환경규제가 자국 기업에 추가적 생산비용을 요구하여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경우 각국 정부들은 사회적으로 최적수준의 환경규제보다 느슨한 규제수준을 부과할 유인이 있다. 이때 환경규제는 그 수준이 낮을수록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규제는 아무런 긍정적 기능 없이 단순히 비용상승만을 목적으로 도입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떠한 제품시장에서 안전기준이라는 기술규제는 수입품을 포함하여 그 제품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들의 최소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술규제는 주로 품질에 따른 수요탄력성이 높은 국가에서 요구된다는 점에서, 교역상대국에 있어 비용증가에 따른 수출위축 가능성과 함께 지불의사 상승으로 인한 이윤증가 가능성을 동시에 가져오게 된다. 한 효과가 다른 효과보다 클지는 양국간 관련 기술의 격차 등의 다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39]

Baldwin(2000)은 기술규제가 교역상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혹은 덜 엄격한지에 대한 순서지움(ordering) 가능여부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 '수평적 규범 TBT(vertical-norm TBT)', 가능한 경우 '수직적 규범 TBT(horizontal-norm TBT)'로 개념화한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나 연비에 대한 기준은 '수준(level)'이 존재하는 개념이란 점에서,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는 수직적 규범 TBT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수직적 TBT의 경우는 Barrett(1994)의 모형과 달리 일국의 기술규제가 자국기업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수입기업에 대한 사실상 진입장벽으로도 작용가능하

39) Barrett(1994).

다. 수입국이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100g/km로 설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보다 낮은 기준(가령, 150g/ km)을 설정하고 있는 수출국의 자동차 기업에게 수입국의 엄격한 기준은 수출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수출국의 기업이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배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높은 고정투자비용을 소요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수입국의 시장의 크기가 작다면, 수출국 기업의 수입국 시장진출의 경제성이 상실된다. 기술규제는 이렇게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더라도 수입국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킨다면 정당화될 수 있어 TBT 협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직적 TBT는 그 정의상 저품질의 수입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이나 국민정서에 민감한 기술규제라 할 수 있다.[40]

4. 소결

우리나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은 외부경제의 내부화, 국가직접투자, 유인책, 규제활동, 도덕적 설득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통상이슈 가능성 차원에서 도덕적 설득방식의 정책을 제외하고, 이론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국가직접투자와 유인책을 한데 묶어 살펴보면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제3장의 상품무역과 관련한 이슈인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와 같

40) 장용준, 서정민, 김민성, 양주영(2011), pp. 169~170.

은 외부경제의 내부화 방식의 정책은 환경오염이라는 외부성을 교정하는 측면 외에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통상이슈화 가능성 측면에서는 일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탄소가격으로 수치화되어 나타남에 따라, 탄소배출의 국경간 조정 혹은 탄소관세 도입 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탄소관세를 도입하는지 혹은 수입 상대국가가 도입하는지에 따라, 또 우리나라가 상대에 비하여 높은 탄소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해득실이 달라질 것이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 살펴볼 보조금협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직접투자는 녹색기술 R&D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유인 저하문제 해소와 기초기술의 확산효과라는 정(正)의 외부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종류의 정책수단은 국제통상규범에서 전통적으로 보조금을 통한 보호무역 정책화 우려대상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는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다루어질 친환경 상품 및 기술사용 증진을 위한 기술규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환경 관련 품질정보에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특히 유용하다. '국제무역의 맥락'에서 상대국의 기술규제가 수출기업에 순응비용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술종류에 따라 해외수요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경우 거래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 소비자 후생은 물론 수출기업에도 반드시 불리한 종류의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규제의 강도에 수준이 존재하여 한 국가의 규제수준이 상대방 국가의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표현 가능한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규제가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

지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 후생이나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과, 기술규제 도입은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더라도 다른 정책적 목적을 수반하여 정당화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통상마찰의 잠재성은 존재하지만 그 가시성은 다른 두 수단들에 비하여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3장
녹색성장과 상품시장 개방

1. GATT상의 시장개방 관련 주요 규정
2. 녹색성장 관련 GATT/WTO 사례
3. 녹색성장 조치의 GATT 규정 합치성
4. 소결

녹색성장 조치는 상품의 생산 또는 소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상품과 이를 배출하지 않거나 소량으로 배출하는 상품을 차별할 수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조치는 WTO 규범 중 특히 GATT 제I조의 최혜국대우 규정, 제III조의 내국민대우 규정, 제II조 2항 (a)호의 국경세조정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이들 조항은 다자무역규범 중 상품시장 개방을 규율하는 가장 대표적 규정 가운데 하나이다.[41] 한편 녹색성장 조치가 이러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GATT 제XX조의 일반예외 규정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도 있다.

본 장에서는 GATT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국경세조정 규정, 일반예외 규정 및 주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지금까지 다른 국가로부터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조치와 이들 규정과의 합치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사항이 제기되었거나 분쟁이 제소된 사례는 없었지만, 본 장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조치와 제도를 중심으로 GATT/WTO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요 분야를 분석하고자 한다.

41)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개방 정책은 무역장벽을 낮추어 외국상품의 국내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 무역장벽은 크게 국경조치와 국내조치로 나누어지며, 국경조치는 GATT 규정 중 특히 제I조와 제II조의 적용 대상이며, 국내조치는 GATT 제I조와 제III조의 적용 대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 조항을 시장개방과 관련된 주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1. GATT상의 시장개방 관련 주요 규정

가. 내국민대우의무

1) 내국민대우의무의 의의

내국민대우의무란 수입상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로 GATT 제III조에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산승용차에 대하여 7%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반면 동종의 수입승용차에 대하여 10%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반된다. 이 의무는 수입국 시장에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평등한 경쟁조건을 유효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수입국의 국경을 통과하여 국내시장에 반입된 상품에 대해 국내상품과 비교하여 동등한 경쟁조건을 부여하여 자유무역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미국의 석유 및 수입물질에 대한 내국세 사건에서 패널은 내국민대우조항이 경쟁관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현재의 무역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무역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예견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42] 그리고 일본의 수입 포도주 및 주류에 대한 관세, 조세와 라벨부착 관행 사건의 패널은 내국민대우의무가 무역량에 대한 기대가 아닌, 평등한 경쟁조건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 GATT의 확립된 관행이라고 보았다.[43] 내국민대우의무는 무역량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량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여 회원국의 국

42) GATT Panel Report(1987c), para. 5.2.2.

43) GATT Panel Report(1987b), para. 5.5(b).

내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또는 거의 없더라도 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

2) 내국민대우의무의 적용대상

내국민대우의무는 수입상품에 대한 의무이며 수입상품에 대한 대우와 국내상품에 대한 대우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수입에 적용되지만 수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교대상이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에 대한 대우이므로 양자에 모두 적용되는 국내조치에만 적용되며, 수입상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국경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물품세, 상품안전기준 등은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에 모두 적용되므로 내국민대우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관세 및 통관 절차 등은 수입상품에만 적용되므로 이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수입국이 수입상품에 대한 물품세 등 내국세를 국경에서 징수하거나 상품안전기준을 국경에서 적용하더라도 이들은 국내상품에 대해서 동일하게 징수되거나 적용되므로 국내조치에 해당하며 내국민대우의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즉 수입국의 조치가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에 모두 적용되는 경우, 이는 비록 국경에서 적용되더라도 국내조치에 해당하며 내국민대우의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3) 상품의 구별

내국민대우의무는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이 동종상품(또는 직접경쟁상품)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적용된다. 즉 이 의무는 국내상품과 동종관계(또는 직접경쟁관계)에 있는 수입상품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수입

상품이 국내상품과 동종상품(또는 직접경쟁상품)이 아니라면 수입상품에 대한 차별은 내국민대우를 위반하지 않는다.[44)]

GATT 제III조는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의 동종상품(또는 직접경쟁상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GATT/WTO 패널과 상소기관은 동종상품 여부는 구체적 시장에서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 기호, 상품품목분류표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동종상품 여부는 앞에 제시된 기준과 같은 상품 그 자체의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품생산방법 또는 생산자를 기준으로 상품을 구별하여 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GATT/WTO 패널 및 상소기관의 확립된 태도이며, 이를 상품생산방법론(product-process doctrine)이라 한다.

예를 들어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철강제품과 소량으로 배출하는 철강을 구별하여 차별대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산방법에 차이가 있더라도 철강제품 자체는 동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입상품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정으로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생산된 국내상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반된다.

4) 차별의 종류

수입상품에 대한 차별에는 법률상 차별(de jure discrimination)과 사실상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이 있다. 법률상 차별이란 원산지를 기준

44) GATT 제III조상의 '동종상품'/'직접경쟁상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이재형 외(2012), pp. 124-139; Choi(2003), pp. 104-115 참고.

으로 수입상품에 대하여 국내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수입 농기계 사건에서 자국산 농기계 구매자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특별 신용조건을 제공한 이탈리아 법규는 원산지에 따라 수입상품을 차별하는 것으로 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45] 사실상 차별이란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에 대하여 외형상 동등하게 적용되는 국내조치가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5) 구체적 의무

가) 동종상품에 대한 내국세 등 차별 금지

GATT 제III조 2항 1문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수입상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부과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부과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이 동종인 경우 수입상품에 부과된 내국세 등이 국내상품에 부과된 내국세 등을 초과하면 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반된다.

WTO 패널과 상소기관은 (1)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이 동종이며, (2) 수입상품에 부과된 내국세 등이 국내상품에 부과된 내국세 등을 초과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국민대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를 이단계 분석법이라 한다.[46] 첫째 요건인 동종성에 관하여 GATT 제III조는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GATT/WTO 패널과

45) GATT Panel Report(1958), paras. 5-16.

46) WTO Appellate Body Report(1997), pp. 22-23.

상소기관은 동종의 의미를 정의한 바는 없지만 1970년 국경세조정 작업반이 사안별 분석원칙(case-by-case rule)을 처음 제시한 이래 이 원칙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원칙은 각 사안별로 서로 다른 요소들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동종상품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47] 국경세조정 작업반은 동종성 판단의 요소로 특정 시장에서의 최종용도, 각국마다 다른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 상품의 특성과 본질 및 품질 등을 제시하였다.[48] 동종상품 여부가 구체적 시장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상품이 특정 국가에서는 동종상품이라도 다른 국가에서는 동종상품이 아닐 수 있다.[49]

내국세 등의 부과가 수입상품에 대한 차별이 되기 위한 둘째 요건은 수입상품에 부과된 내국세가 국내상품에 부과된 내국세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입상품이 국내상품과 비교하여 낮은 내국세가 부과되거나 또는 동일한 내국세가 부과되어야 내국민대우의무에 합치하게 된다. 국내상품에 대한 것보다 중한 내국세가 수입상품에 부과된다면 그 양이 아무리 미미한 정도라 하더라도 제III조 2항 1문 위반이 된다는 것이 종래 패널의 확립된 견해이다.

나) 직접경쟁상품에 대한 내국세 등 차별 금지

GATT 제III조 2항 2문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수입상품에 대하여 직접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

47) GATT(1970), para. 18.

48) *Ibid.*

49) 또한 상소기관은 상품의 '동종성'의 기준이 WTO 규정마다, 그의 적용 맥락과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WTO Appellate Body Report(1996a), pp. 21-22.

의 내국부과금을 유사한 범위를 초과하여 부과함으로써 국내생산을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에서 내국세가 상품에 부과되는 간접세만을 의미하는 것은 2항 1문의 경우와 동일하다. 제III조 2항 2문에 대한 위반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1)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이 직접경쟁 관계에 있고, (2)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국내부과금이 국내상품에 대한 것과 비교하여 유사한 정도를 초과하여야 하며, (3) 유사한 범위를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국내부과금이 국내생산을 보호한다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를 삼단계 분석법이라 한다.[50]

GATT 제III조에서는 직접경쟁상품을 정의하지 않지만, GATT/WTO 패널과 상소기관은 다수의 분쟁사례에서 이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 직접경쟁 여부도 동종성과 같이 구체적 시장에서 사안별로 판단되며, 상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 기호 등에 따라 판단된다. 동종상품은 직접경쟁상품의 부분집합으로 상품의 물리적 특성 및 경쟁관계에서 직접경쟁상품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EC 석면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건강에 대한 유해가능성(health risk)은 상품의 물리적 특성 또는 소비자 기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경쟁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품을 구별하여 차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51] 이는 건강에 대한 유해가능성을 상품구별의 한 요소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서, 환경친화적 상품과 비친화적 상품의 차별대우가 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반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비자 기호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앞에

50) WTO Appellate Body Report(1996a), p. 24.

51) WTO Appellate Body Report(2001), paras. 114-128.

설명한 건강에 대한 유해가능성 등 상품의 특성에 기초하여 형성된 소비자 기호가 상품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광고 등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 기호는 상품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입상품 및 직접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상품에 부과된 내국세가 유사한 범위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GATT/WTO의 패널과 상소기관의 해석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입상품에 부과된 내국세가 국내상품에 적용되는 내국세보다 무거워야 한다. 둘째, 두 상품간의 내국세 차이는 미미(de minimis)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미미한 수준은 각각의 시장에 기초하여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한다.[52] 동종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2항 1문의 경우 수입상품에 적용되는 내국세가 아주 미미한 적은 양이라도 국내상품에 대한 내국세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민대우위반이 되는 반면, 직접경쟁상품에 적용되는 2문의 경우 미미한 수준 이하의 초과는 허용된다. 또한 1문의 경우 동종의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의 초과 그 자체로 내국민대우의무 위반이 되는 반면, 2문의 경우 유사하지 않은 내국세 부과 그 자체로 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 2문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내국세 부과가 국내생산 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국내법규 적용 차별 금지

WTO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이하 '국내법규'라 한다.)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상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52) WTO Appellate Body Report(1996a), p. 27.

대우를 수입상품에 부여하여야 한다.[53] 수입국의 국내법규가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이 동종상품이어야 한다. 둘째, 법률, 규칙 및 요건 등이 국내상품과 비교하여 수입상품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III조 4항은 상품판매 등에 적용되는 국내법률, 규칙 및 요건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GATT/WTO 패널과 상소기관은 4항의 국내법규를 매우 넓게 해석하여 수입상품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규정뿐 아니라, 절차규정을 포함한 모든 국내법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III조 4항의 국내법규는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조치로 한정되며, 민간기업의 조치에 대해서 내국민대우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제III조 4항에 의한 내국민대우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상품이 국내상품과 동종관계이어야 한다. 동종상품 여부의 판단은 2항 1문과 같이 구체적 시장 내에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안별 분석을 해야 한다. 그 판단은 상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 기호 등의 기준에 따른다.

국내법규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의무 위반판정을 하려면 이 법규가 수입상품을 국내상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즉 수입상품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뿐만 아니라 유리한 대우를 하는 것도 일반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여기서 동등한 대우란 수입상품에 대하여 동등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에 형식적으로 동일한 국내법규를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목적상의 이유로 양자간에 서로 다른 법규를 적용하더라도 경쟁조건을 동등하게 보장한다면 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반하지 않는다. 캐나다 지방판매기관의 주류수입, 유통 및 판매 관련 사

53) GATT 제III조 4항.

건의 패널도 서로 다른 법규적용이 4항 위반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54]

나. 최혜국대우의무

1) 최혜국대우의무의 의의

최혜국대우의무란 회원국이 다른 국가에서 오는 수입품 또는 다른 국가로 향하는 수출품에 대해 부여한 이익, 특혜, 특권 및 면제를 다른 모든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행선지로 하는 동종상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의무이다.[55]

최혜국대우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는 (1) 수출입 시의 관세 및 부과금, (2) 수출입 대금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부과금, (3) 이러한 관세 및 부과금의 부과방법, (4) 수출입과 관련한 모든 규칙 및 절차, (5) 수입품에 대한 직 · 간접의 내국세 및 부과금, (6) 수입품의 국내판매 · 판매제의 · 구매 · 운송 · 유통 · 사용에 관한 국내법규나 요건으로서 매우 광범위하다. 최혜국대우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회원국이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해 부여한 이익, 특혜, 특권 및 면제이다. 그러므로 WTO 회원국은 어느 한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여하는 각종 특혜 등을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최혜국대우의무는 수출상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따라서 WTO 회원국은 어느 한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으로 수

54) GATT Panel Report(1991a), para. 5.12.

55) GATT 제I조 1항.

출되는 자국상품에 대해 부여하는 특혜를 다른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부여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최혜국대우의무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가 상대국이 부여하는 특혜를 조건으로 부여하는 조건부 최혜국대우의무에서 발달하였다. 그러나 GATT 제I조 1항은 상대국의 특혜 부여와 무관하게 특혜를 부여하여야 하는 무조건적 최혜국대우의무를 도입하였다. 조건부 최혜국대우는 예를 들어 B국이 A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주장하면서 A국이 C국에 부여한 특혜를 자국에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A국은 C국이 A국에 양허한 내용 정도의 양허를 B국이 A국에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B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1923년 이전에 미국은 이러한 조건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협상 당사국 사이에 교환할 조건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신흥 공산품 수출국인 미국은 자국산업에 불리하다는 판단하에 1923년 이후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 원칙을 고수하였고, 이러한 경향이 자리 잡게 되면서 후에 GATT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56] 무조건적 최혜국대우의무는 어느 한 WTO 회원국이 부여하는 특혜가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되어 전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2) 차별의 종류

최혜국대우의무를 위반하는 차별에는 법률상 차별과 사실상 차별이 있

56) 이재형 외(2012), pp. 86~87.

다. 법률상 차별은 수입품의 원산지(자국상품의 수입국)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며, 사실상 차별은 외형상 중립적으로 원산지(또는 수입국)에 따라 상품을 차별하지 않는 조치가 실질적으로 원산지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는 것이다.

3) 내국민대우의무와의 차이점

최혜국대우의무는 GATT 제III조의 내국민대우의무와 함께 '비차별의무'로 불린다. 내국민대우의무가 수입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데 비해, 최혜국대우의무는 수입품과 수출품 모두에 적용된다. 내국민대우의무는 국내상품보다 수입품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서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이 수입상품과 수입국의 국내상품이므로 수입의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 한편 내국민대우의무는 상품이 수입국의 국내상권에 반입된 이후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국내조치만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혜국대우의무는 수입상품(또는 수출상품)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국내조치뿐 아니라 국경조치에도 적용된다.

다. 일반예외

1) 일반예외의 의의

GATT는 국제무역의 공정성과 자유를 고양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동시에, 회원국들이 일정한 조건과 제한하에 무역과 관련된 각종 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서 GATT 제XX조는 회원국이 제한적 범위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협정상의 일반적 의무로부터 일탈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회원국의 국내조치가 GATT상의 일반적 의무인 최혜국대우의무, 내국민대우의무 또는 수량제한금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제XX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GATT 규정을 위배하지 않게 된다.

오늘날 환경보호에 관한 전 인류적 관심이 증대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각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무역제한 효과를 초래함으로써 국가간 분쟁이 되어 WTO에 제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피소국은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XX조를 원용하고 있다.

제XX조는 전문(chapeau)과 일반협정상의 실체적 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10개의 구체적 사유로 구성되어 있다. 내국민대우의무, 최혜국대우의무 또는 수량제한금지의무 등 GATT상의 의무에 위반되는 조치라도 제XX조가 규정한 10개의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며,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조치는 GATT 규정에 합치하는 조치로서 정당화된다. 정당화 사유는 공중도덕, 식품안전, 환경 등 비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XX조에 규정된 10개로 한정된다. 이 가운데 (1)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GATT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 등이 중요하며, (2)와 (4)의 조치는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다.[57]

57) 본 장에서 검토되는 GATT 제XX조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정당화 사유

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GATT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회원국의 조치라도 그것이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경우 제XX조 (b)호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GATT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 미국 가솔린 사건의 패널은 제XX조 (b)호를 원용하는 당사국이 (1) 대상 조치가 추구하는 정책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 (2) 대상 조치가 그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종래 분쟁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조치가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의 문제이다. 즉 필요성의 의미가 핵심 쟁점이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GATT/WTO의 해석은 점차 구체화되고 발전되어 왔다.

미국의 자동차부품 수입 사건의 패널은 필요성이 "만족스러우며 효과적인 대체조치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다.[58] 그러나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337조 사건의 패널은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1) 채택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g)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

58) GATT Panel Report(1982), para. 60.

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다른 GATT 규정과 합치하는 대체조치를 이용할 수 있거나, (2) GATT 규정에 덜 위반하는 대체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분쟁대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59] 태국의 담배수입 제한과 담배에 대한 내국세 사건의 패널도 국민건강 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GATT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또는 가볍게 위반되는 대체조치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 패널의 입장을 따랐다.[60]

그러나 미국의 참치수입제한 I 사건의 패널은 더 엄격한 해석을 하여 돌고래 보호라는 일반적 정책목적 외에 일반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조치의 최후수단성을 요구하였다.[61] 이 요구는 다른 구제수단을 사용할 충분한 시간이 전제되어야 하나, 그 시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고 다른 조치의 성공가능성 판단도 주관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미국의 참치수입제한 II 사건의 패널은 무역제한조치는 이를 통하여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 정도는 이 조치에 따라 달성되는 정책목표의 중요성에 비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62]

미국 가솔린 사건의 패널은 제XX조 (b)호의 필요성 요건이 정책목표의 필요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뜻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63] 즉 패널의 임무는 대상조치의 환경목적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조치가 정책목

59) GATT Panel Report(1989), para. 5.26.
60) GATT Panel Report(1990), para. 40.
61) GATT Panel Report(1991b), para. 5.28.
62) GATT Panel Report(1994a), paras. 5.30-5.35.
63) WTO Panel Report(1996), para. 6.22.

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XX조 (b)호의 규정상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64] EC 석면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지적하였다. 첫째, 상소기관은 WTO 회원국이 건강보호의 정도 또는 수준(level)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WTO 회원국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건강 또는 환경보호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국은 이러한 보호의 수준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의 조치가 이 보호의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65] 둘째, 상소기관은 태국 담배 사건과 미국 가솔린 사건에서 고안된 필요성의 요건, 즉 '회원국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 것'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였다.[66] 상소기관은 대안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reasonably available)'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안의 적용상의 어려움뿐 아니라 '당해 정책목적의 달성에 대한 기여의 정도' 및 '국제통상에 대한 제한적 영향의 정도'를 비교 · 형량(weighing and balancing)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67] 또한 상소기관은 추구하는 공동이익이나 가치가 더 중요하면 할수록 이 목적을 위해 고안된 조치의 필요성이 더 용이하게 인정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상소기관은 당해 정책목적의 달성에 대한 기여의 정도뿐 아니라 가치의 중요성 역시 고려하였다. 셋째, 상소기관은 태국 담배 사건에서 제시된 대안조치가 GATT에 합

64) Van den Bossche(2005), p. 605.

65) *Ibid.*, p. 606.

66) *Ibid.*

67) 한편 브라질 재생 타이어 사건에서 상소시관은 대안조치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성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았다. WTO Appellate Body Report (2007), para. 156.

치하거나 덜 불합치하여야 한다는 것 대신에, 대안조치가 문제의 조치보다 덜 무역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68)]

나) 유한천연자원 보존과 관련된 조치

제XX조 (g)호에 따라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 회원국의 조치가 (1)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여야 하고, (2) 유한천연자원의 보존과의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며, (3)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시행되는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GATT/WTO 패널과 상소기관은 유한천연자원의 범위를 발전적으로 해석해 왔다. 미국의 참치수입제한 II 사건에서 제소국인 멕시코는 유한천연자원을 화석 또는 기타 광물과 같이 한 번 발굴되어 사용하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 즉 비생물자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좁게 주장하였으나,[69)] 이는 자원의 유한성과 회복가능성을 혼동한 것으로 패널은 묵시적으로 이를 배척하고 생물자원인 돌고래를 유한천연자원으로 인정하였다.[70)]

한편 유한성에 관하여 멕시코는 비록 생물자원을 유한천연자원의 범위에 포함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데이터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제XX조 (g)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71)] 본 호의 목적이 이미 고갈된 자원의 보호가 아니라 고갈될 수 있

68) Van den Bossche(2005), p. 607.

69) GATT Panel Report(1994a), para. 3.43.

70) *Ibid.*, para. 3.43.

71) *Ibid.*, para. 3.44.

는 자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생물자원이 유한천연자원으로 보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멸종위기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보존대상에 대한 일방적 기준을 제3국에 강요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 가솔린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청정한 대기를 유한천연자원에 포함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하여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72)]

GATT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회원국의 조치라도 그것이 유한천연자원 보존과 관련된 조치인 경우 제XX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종래 분쟁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조치가 유한천연자원 보존과 관련된 조치인지의 문제이다. 즉 '관련성'의 의미가 핵심 쟁점이 되어 왔다.

제XX조 (g)호는 관련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과거의 패널은 일관되게 조치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정책을 주된 목적(primarily aimed at)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관해 최초로 해석을 한 1987년 캐나다의 가공되지 않은 청어와 연어의 수출금지조치 사건 패널은 제XX조의 다른 호에서 필요한 또는 필수적 조치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g)호의 경우 유한자연자원의 보전에 관련 있는 조치일 것만이 요구됨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패널은 제XX조의 전문에 따라 (g)호의 목적이 무역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GATT의 의무가 유한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한 정책의 추구를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임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무역조치가 유한천연자원 보전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주요하게(또는 일차적으로) 목표한 것이어야 (g)호의 관련성을 충족하는

72) WTO Appellate Body Report(1996b), pp. 13-22 참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조치는 국내 수산물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유한천연자원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본 호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73]

이후 미국의 참치수입제한 I, II 사건 패널은 위 패널의 해석을 따랐다. 이와 같은 엄격한 해석은 회원국의 환경 관련 조치가 제XX조의 예외로 인정받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가솔린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관련'이라는 용어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과거의 '주된 목적'이라는 해석을 배척하였다.[74] 그 결과 환경자원보전을 위한 무역제한조치가 광범위하게 동 호에 해당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유한천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는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취해져야 하며, '관련하여(in conjunction with)'는 이 조치가 자국 내에서 취한 제한조치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75] 즉 유한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규제조치는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에 동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미국의 캐나다산 참치수입금지 사건 패널은 미국의 수입제한조치에 대하여 국내생산 제한조치가 없는 것을 이유로 제XX조 (g)호의 적용을 배척한 바 있다.[76] WTO 상소기관은 미국의 가솔린 사건에서 '관련하여'를 '함께(together with)'의 의미로 보아 수입휘발유에 규제가 가해지면 국내휘발유에도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고 하여 종래의 동등성 접근법을 유지하였다.[77]

---

73) GATT Panel Report(1987a), para. 4.7.

74) WTO Appellate Body Report(1996b), pp. 15-19.

75) GATT Panel Report(1987a), para. 4.4.

76) GATT Panel Report(1981), para. 4.7-4.15.

77) WTO Appellate Body Report(1996b), p. 18.

3) 전문

GATT 제XX조 전문은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 조치를 허용하는 반면, 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조치가 (1)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2)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가솔린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전문이 문제의 조치 그 자체 또는 그 구체적 내용보다는 이 조치가 적용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이며, 제XX조의 협상 과정에 비추어보아 전문의 목적은 제XX조의 예외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78] 전문은 제XX조 예외를 원용할 권리가 있는 회원국과 GATT의 다른 실체적 권리를 갖는 회원국 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라. 국경세조정

1) 국경세조정의 개념

각국은 기후정책을 위하여 소비자 단계에서의 과세를 대신하여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양에 따라 생산자 단계에서 과세할 수 있다. 만일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을 설정한다면 자국의 생산자는 타국의 생산자에 비하여 상품생산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조세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경쟁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보조금을 제공하는

78) *Ibid.*, p. 22.

방법이고, 둘째,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국경세조정을 하는 방법이다.

국경세조정은 기후변화 정책이 에너지와 에너지 다소비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국가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부가 기후정책에 의하여 피해를 입기 쉬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상품에 유사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수출상품의 비용을 감소시켜 국내 기후변화 대응조치로 초래된 비용을 보상하는 방법이다. 수출상품에 대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국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미 징수된 조세를 환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국가영역에 존재하는 상품생산자들 사이에 과세제도의 차이가 야기하는 경쟁력의 왜곡을 시정하여 동등한 경쟁여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종의 국내상품에 부과하는 조세를 수입상품에 대하여 과세하고 수출상품에 대하여 내국세를 감면 또는 환급하는 것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 그러므로 국경세조정은 각국의 조세제도의 무역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무역상대국 사이에 통일적인 조세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한, 국경세조정은 이중과세 또는 조세제도의 허점을 방지함으로써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간의 대등한 경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79]

2) 국제통상법적 쟁점

각 국의 조세정책 등 재정정책은 정부의 재량에 속하나, 국제교역의 대상인 상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는 WTO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80] 만일 수

79) WTO(1997), para. 24.

80) *Ibid.*, para. 23.

출에 대한 조세환급이 없고 수입품에 대한 과세가 없다면 WTO 규정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각국은 통상적으로 동등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상품에 대응하는 조세를 수입상품에 부과한다. 그리고 각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자국 수출품의 경쟁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수출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이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등한 환경세를 부과하거나, 환경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환경세를 감면하거나 이미 징수한 것을 환급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WTO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수입상품에 대한 국경세조정이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할 수 있으며, 수출상품에 대한 조세감면 또는 환급이 수출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다.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의 국경세조정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나, 수출상품 또는 수입상품의 생산요소에 부과된 조세에 대한 국경세조정은 법적 ·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WTO 규정상 매우 불분명한 점이 있다.

3) 국경세조정의 대상

가) 소비지 과세원칙과 생산지 과세원칙의 구별

1968년 GATT 체약국단은 국경세조정에 관련된 GATT 규정, 체약국들의 관행 그리고 국경세조정이 국제통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경세조정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이 작업반은 국경세조정의 정의를 OECD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채용하여 “수출국에서 국내소비용으로 판매되는 유사한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고, 수입국에서

유사한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조세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소비지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재정조치"라고 보았다.[81] 소비지 과세원칙은 상품에 대한 과세가 상품생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지(또는 원산지) 과세원칙(origin principle)과 대별된다. 그러므로 소비지 과세원칙의 적용을 받는 조세만이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되며, 생산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조세는 그 대상이 아니다.[82]

나) 간접세와 직접세의 구별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조세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와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직접세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국경세조정에 관한 GATT/WTO 규정의 기초로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다.[83] 국경세조정 작업반은 보고서를 통하여 "제품에 직접 부과되는 조세[간접세를 지칭한다]가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러한 조세의 예로 특정판매세(specific excise duties), 물품세(sales taxes), 누적세(cascade taxes), 부가가치세(tax on value added)가 있다. 한편 기술적인 과세방법이 어떻든지 부가가치세는 제품에 직접 부과되는 물품세와 동등하다는 점에 동의가 있었다. 더욱이 작업반은 제품에 직접 부과되지 않는 조세[직접세를 지칭한다]가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조

81) GATT(1970), para. 4.

82) WTO(1997), para. 28.

83) *Ibid.*, para. 31.

세의 예로 사용자 또는 피용자에 대한 사회보장부담금과 소득세 등이 있다고 밝히고, 간접세만이 국경세조정의 대상이라고 보았다.[84)]

WTO 보조금협정도 직접세는 임금, 이윤, 이자, 임대료, 사용료, 그 외의 다른 형태의 소득세, 부동산보유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접세는 물품세, 판매세, 거래세, 부가가치세, 프랜차이즈세, 인지세, 양도세, 재고세, 설비세, 국경세 그리고 직접세와 수입부과금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85)]

4) 수입상품에 대한 국경세조정

가) 관련 규정

GATT 제II조 1항 (b)호는 회원국이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상품에 대하여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관세를 비롯한 기타 과징금의 징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로서 제II조 2항 (a)호는 수입국이 어느 시점에서든지 수입상품에 대하여 국내상품에 부과하는 내국세와 동등한 과징금(charge)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된 품목(article)에 대하여 부과되는 내국세와 동등한 과징금을 수입완제품에 부과하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그 방법은 전술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제III조 2항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수입국은 동종의 국내상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직접경쟁상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와 유사한

84) GATT(1970), para. 14.

85) 보조금협정 부속서 I, 각주 58.

범위 내에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과징금을 징수하여 국경세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경세조정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국경에서, 즉 상품의 통관 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수입업자로부터 중간상인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내국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상품이 국경을 통과한 이후 국경세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86)]

나) 투입요소에 대한 국경세조정

제II조 2항 (a)호는 동종의 국내완제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요소에 부과하는 내국세에 대해서도 국경세조정을 허용한다. 그 근거로 하바나 헌장[87)]의 협상당사자들이 제II조 2항 (a)호의 '동등한'의 의미를 만일 알코올 성분 때문에 향수에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과징금은 향수의 가치가 아닌 알코올의 가치를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것, 즉 전체의 가치가 아닌 요소의 가치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점을 들 수 있다.[88)] 수입상품에 대한 국경세조정의 한계가 되는 제III조의 내국세 규정도 투입요소에 대한 조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제III조 2항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된 내국세에 관련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다. 여기서 '간접적으로'란 상품 그 자체가 아닌 상품의 생산공정에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89)] 따라서 상품 생산공정에

86) WTO(1997), para. 25.

87) 하바나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설립을 위해 1948년 쿠바의 하바나에서 53개 국가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나, 최초 제안국인 미국이 의회에서 비준을 얻지 못해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은 무산되고 말았다.

88) UN(1947), GATT Analytical Index(1995), p. 86 재인용.

부과된 조세, 즉 투입요소에 대한 조세도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된다.

5) 수출상품에 대한 국경세조정

가) 관련 규정

1970년 국경세조정 작업반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GATT의 국경세조정은 수입뿐 아니라 수출에도 소비지과세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결과 수출상품은 소비지에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국내소비용 상품에 부과되는 조세가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감면될 수 있다.[90] GATT 제XVI조 주해(Ad Note)는 "국내소비용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나 조세의 수출상품에 대한 면제 또는 납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의 환급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수출상품에 대한 국경세조정을 간접적인 표현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GATT 제VI조 4항은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에서 국내소비용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나 조세의 수출상품에 대한 면제나 환급을 이유로 수출상품이 수입국에서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조세감면 또는 환급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WTO 보조금협정도 GATT 제XVI조와 동 협정의 부속서 I, II, III에 따르면 국내소비용 동종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나 조세의 수출상품에 대한 면제 또는 납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의 환급은 보조금이 아니라고 본다.[91]

---

89) WTO Panel Report(2005), paras. 8.40-8.45 참고.

90) WTO(1997), para. 59.

91) 보조금협정 제1.1(a)(1)(ii)조, 각주 1.

나) 투입요소에 대한 국경세조정

GATT 제VI조 4항과 제XVI조의 주해는 제III조 2항과 달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하바나 헌장의 협상기록을 통하여 제XVI조의 주해가 원료와 중간재에 부과된 관세나 조세의 환급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92] WTO 보조금협정 부속서 I는 국내소비용 동종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된 동종의 전단계 누적간접세(prior-stage cumulative indirect taxes)의 면제, 경감 또는 유예를 초과하는, 수출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경감 또는 유예를 수출보조금으로 본다.[93] 즉 수출완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전단계 누적간접세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는 동종의 국내소비용 완제품에 부과된 전단계 누적간접세도 감면, 환급 또는 유예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소비용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투입요소(inputs that are consumed in the production)'에 부과된 전단계 누적간접세에 대한 면제, 환급 또는 유예를 하지 않더라도 수출완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투입요소'에 부과된 전단계 누적간접세에 대하여 국경세조정을 할 수 있다.[94] 한편 수출상품 생산에 소비된 수입된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징금도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된다. 다만 부과된 수입과징금을 초과하여 환급하거나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95]

92) WTO(1997), para. 71.

93) 보조금협정 부속서 I, (h)호 전단.

94) 보조금협정 부속서 I, (h)호 후단.

95) 보조금협정 부속서 I, (i)호.

2. 녹색성장 관련 GATT/WTO 사례

가. 미국 자동차세 사건

1) 가솔린 과소비세

미국은 1978년 연료효율이 갤런당 22.5마일(22.5mpg)인 자동차에 대해 가솔린 과소비세를 도입하였는데, 과세대상 자동차의 대부분은 EC산이며 매우 소량의 미국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었다. EC는 모든 자동차는 물리적 특성 및 최종용도가 동일하므로 동종상품이며 연료효율이 자동차를 구별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조치가 GATT 제III조 2항 1문의 내국민대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96] GATT 패널은 가솔린 과소비세는 미국 자동차 생산자와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GATT 제III조의 내국세에 해당하지만, 22.5mpg 기준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EC의 주장을 배척하였다.[97]

이 사건의 패널은 소위 '목적-효과 분석법(aim-and-effect test)'에 따라 GATT 제III조를 해석하여 판단하였다. 그런데 '목적-효과 분석법'은 GATT 패널이 두 차례에 한하여 적용한 제III조 해석방법으로서 WTO 출범 이후 패널과 상소기관에 의하여 배제되었다. WTO는 현재 전통적인 이단계 분석법에 따라 GATT 제III조 2항 1문을 해석한다. 현재의 이단계 분석법에 따르면, GATT 패널이 심사한 국내생산을 보호할 목적은 제III

96) GATT Panel Report(1994b), para. 5.19.

97) *Ibid.*, para. 5.36.

조 2항 1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은 현재도 가솔린 과소비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연료효율이 22.5mpg 미만의 차동자의 경우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표 3-1]과 같이 미화 1,000~7,700달러만큼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만일 현행 미국 제도가 WTO에 제소되어 현재의 전통적 해석법에 따라 판단된다면 결과는 GATT 패널의 판결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WTO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방법에 따르면, 연료효율이 22.5mpg 이상인 자동차와 그 이하인 자동차가 (1) 동종상품이라면 미국의 가솔린 과소비세는 제III조 2항 1문 위반이 될 것이며, (2) 직접경쟁상품이라면 유사한 범위를 초과하고 그 결과 국내생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제III조 2항 2문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앞에 설명한 일반예외 규정에 따라 유한천연자원 보전을 위한 조치로서 정당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3-1. 미국의 현행 가솔린 과소비세 현황

차량의 복합연비(mpg)	과소비세 액수(미화 달러)
22.5 이상	세금 없음
21.5~22.5	1,000
20.5~21.5	1,300
19.5~20.5	1,700
18.5~19.5	2,100
17.5~18.5	2,600
16.5~17.5	3,000
15.5~16.5	3,700
14.5~15.5	4,500
13.5~14.5	5,400
12.5~13.5	6,400
12.5 미만	7,700

자료: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웹사이트(2012).

2) 기업평균연비 규정

미국 자동차세 사건에서 논의된 또 다른 조치는 기업평균연비(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규정이었다. 미국의 CAFE 규정은 자동차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27.5mpg 이상일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미국 국내 생산자들은 소형자동차 판매를 통하여 대형자동차의 평균연비를 높일 수 있었으나, EC산 대형자동차를 수입하는 업자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 따라서 GATT 패널은 미국의 CAFE 규정이 동종상품인 수입자동차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므로 GATT 제III조 4항의 내국민대우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98] 이에 대하여 미국은 이 조치가 유한천연자원 보전을 위한 조치로 GATT 제XX조 (g)호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99] 그러나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유한천연자원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00]

미국은 현재도 CAFE 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2025년에 54.5mpg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101] 미국의 CAFE 규정이 WTO에 제소된다면 종전 GATT 패널과 다른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WTO 출범 이후 패널과 상소기관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유한천연자원 보전과 관련된 조치에서 '관련'의 의미를 주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안정화된 대

98) GATT Panel Report(1994b), paras. 5.54-5.55.

99) *Ibid.*, para. 5.57.

100) *Ibid.*, para. 5.61.

101) US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웹사이트(2012).

기를 유한천연자원으로 본다면 CAFE 규정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정당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

나. 미국 슈퍼펀드 사건

1) 원유세

미국은 1986년에 유해폐기물 처리장을 정화하고 유해폐기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슈퍼펀드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미국산 원유에 대하여 배럴당 8.2센트, 수입원유에 대하여 11.7센트의 원유세를 부과하는 것이다.[102] 캐나다, 멕시코, EC는 미국의 원유세가 동종상품인 수입원유에 대하여 미국산 원유에 부과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GATT 제III조 2항 1문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103] 미국은 수입원유에 부과되는 원유세가 미미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제소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미국의 원유세가 내국민대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104]

2) 국경세조정

미국의 슈퍼펀드법은 중간재로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였다. 그 결과 조세가 부과된 화학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한 미국산 최종상품은 동일한 화학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한 수입 최종상품보다 가격경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리한 가격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하여

---

102) GATT Panel Report(1987c), para. 2.1.

103) *Ibid.*, para. 3.1.1.

104) *Ibid.*, para. 5.1.12.

슈퍼펀드법은 조세가 부과된 중간재 화학제품과 동일한 화학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한 수입 최종상품에 대하여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수입업자는 조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신이 수입한 상품에 투입된 중간재 화학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105)]

캐나다와 EC는 미국이 동종의 최종상품에 부과하지 않는 조세를 수입 최종상품에 부과하므로 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106)] 그러나 미국은 미국산 최종상품에 투입된 화학제품에 부과되는 조세와 동등한 조세가 수입 최종상품에 부과되므로 미국산 최종상품과 동종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동등하며 GATT 제II:2(a)조의 국경세조정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107)] 한편 EC는 미국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화학제품에 조세를 부과하지만 수입상품은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므로 미국의 환경에 유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오염자부담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08)]

패널은 국경세조정은 어떠한 정책 목적을 위해서도 가능하며, GATT 제III조 2항 1문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사용된 중간재 화학제품에 부과된 조세와 동등한 조세를 부과한다면 정당한 국경세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109)]

---

105) *Ibid.*, para. 2.3-2.6.

106) *Ibid.*, para. 3.2.4.

107) *Ibid.*, para. 3.2.5.

108) *Ibid.*, para. 5.2.3.

109) *Ibid.*, paras. 5.2.4, 5.2.10.

다. 미국 가솔린 사건

미국은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청정대기법을 1990년에 개정하였다. 개정법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하기 위하여 미국의 정제업자, 혼합업자와 수입업자 각각에 대하여 이들이 1990년에 판매한 가솔린의 품질기준을 설정한 후 그 기준에 미달하는 가솔린 판매를 규제한다는 것이다.[110)]

1990년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내 정유업자는 자신의 1990년 품질자료와 생산기록을 사용하고, 이 자료가 없는 경우 1990년 혼합물 품질자료와 혼합물 생산기록을 사용하며, 이 자료도 없는 경우에는 1990년 이후의 자료를 사용하여 개별 품질기준을 설정한다.[111)] 그러나 수입업자는 앞의 첫 번째 방법인 1990년의 품질자료와 생산기록이 없는 경우 법정품질기준을 적용받는다.[112)] 그리고 수입업자가 외국의 정제업자인 경우 미국 정제업자와 동일하게 앞의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자신이 생산한 가솔린의 75%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113)]

패널은 국산 가솔린과 수입 가솔린은 동종이며 국산 가솔린은 개별 품질기준이 설정되고 그 방법으로 세 가지가 가능한 반면, 수입 가솔린은 75% 규정이 적용되거나 법정 품질기준이 적용되므로 수입 가솔린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존재하여 GATT 제III조 4항의 내국민대우의무를 위반

110) WTO Panel Report(1996), para. 2.5.

111) *Ibid.*, para. 2.6.

112) *Ibid.*, para. 2.8.

113) *Ibid.*, para. 2.7.

하였다고 판단하였다.[114] 미국은 가솔린 품질기준 설정방법이 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반되어도 유한천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서 GATT 제XX조의 일반예외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WTO 상소기관은 청정한 대기는 유한천연자원이며 가솔린 품질기준은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제XX조 (g)호에 해당하지만, 미국의 제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며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에 해당하여 제XX조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15]

WTO 패널과 상소기관은 이 사건에서 미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지만, 청정한 대기를 유한천연자원으로 인정한 것은 녹색성장 조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녹색성장정책은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WTO에서 청정대기를 유한천연자원으로 인정하였듯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안정화된 대기를 유한천연자원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각종 녹색성장 조치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 GATT상의 의무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제XX조 (g)호와 전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예외 규정에 의하여 정당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

114) *Ibid.*, paras. 6.5-6.16.

115) WTO Appellate Body Report(1996b), pp. 13-30.

3. 녹색성장 조치의 GATT 규정 합치성

본 절에서는 앞선 내용과 달리 기존 GATT/WTO 분쟁사례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특정 녹색성장 조치와 GATT 규정의 합치성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즉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수입상품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탄소세, 배출권 구매 의무, 자동차 보조금 · 부과금(Bonus-Malus) 제도를 통상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 조치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녹색성장정책 추진 시 시행될 경우 고려해야 할 쟁점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탄소세와 국경세조정

생산 및 소비활동에 필수적 재화인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된 요인인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UNFCCC와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주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를 규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부 국가는 환경세의 일종인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다. 탄소세란 에너지원별로 함유하고 있는 탄소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일종의 물품세로서, 석탄과 석유 같은 고탄소 함유 에너지에 고율의 조세를, 가스와 같은 저탄소 에너지에 저율의 조세를 부과하고,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수력 또는 원자력 등의 에너지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즉 탄소세는 에너지 가격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종상품 가격에 전가됨으로써 화석연료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

하게 된다. 그러므로 탄소세는 청정에너지의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탄소세는 주로 선진국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영국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도입 방안이 검토 중이다.[116]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향후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통상법적 쟁점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탄소세를 부과할 때 만일 포함하고 있는 탄소량이 상이한 두 상품이 탄소의 양을 제외한 그 밖의 물리적 특성, 소비자 기호, 최종용도 등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두 상품에 대한 차별적 조세가 최혜국대우의무 또는 내국민대우의무를 위반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차별적 조세가 허용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상품이 포함하고 있는 탄소량의 차이가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인정될지에 달려 있다. 만일 탄소량의 차이로 인한 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두 상품은 동종상품이 아니므로 차별적인 내국세 부과가 허용될 것이다. 탄소량의 차이와는 구별되지만 EC 석면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석면이 포함된 제품과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표 3-2. 탄소세 도입 주요국 현황(2008년 2분기 기준)

구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도입시기		1990년	1991년	1992년	2001년	1991년
세수용도		일반재원	일반재원	일반재원	사회보험료 감면	일반재원
유종별 세율	경유	86.9원/ℓ	489.9원/ℓ	52.3원/ℓ	-	-
	휘발유	76.9원/ℓ	367.0원/ℓ	48.2원/ℓ	-	163.8원/㎘
	천연가스	32.5원/㎥	-	47.4원/㎥ (가정용만)	3.2원/㎾h	-

주: 영국은 기후변화세로 명칭함.
자료: 서울신문 웹사이트(2010).

116) 해외 각국의 탄소세 운영 현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장철원(2012), pp. 308~322 참고.

제품은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유해성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의 기호가 다르므로 동종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117)]

그리고 두 상품은 탄소량의 차이는 있지만 동종상품으로 볼 수 있다면 차별적 과세는 최혜국대우의무 또는 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반 된다. 이 경우 GATT 제XX조 일반예외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XX조 (b)호인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g)호의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 탄소세를 적용하는 정책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가능한 규정이 달라질 것이다. 일반예외에 의하여 차별적 탄소세 부과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호의 경우 필요성 요건, (g)호의 경우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고, 전문의 요건 역시 충족되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배출권거래제와 수입규제

우리나라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는 [그림 3-1]에서 보는 것처럼 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

117) WTO Appellate Body Report(2001), paras. 114-128 참고.

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법률 제2장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의 총수량, 대상부문 · 업종 등을 포함하는 5개년 단위의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직 이러한 할당계획,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목록, 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상세한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향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때 미국의 Lieberman-Warner 법안에 따라 도입하고자 했던 'cap-and-trade'라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통상법적 쟁점사항을 고려해 볼 만하다.[118)]

미국의 Lieberman-Warner 법안상의 'cap-and-trade' 제도는 이와 동등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의 상품과 비교하여 국산상품을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 국내상품이 불리한 경쟁력에 놓이는

그림 3-1.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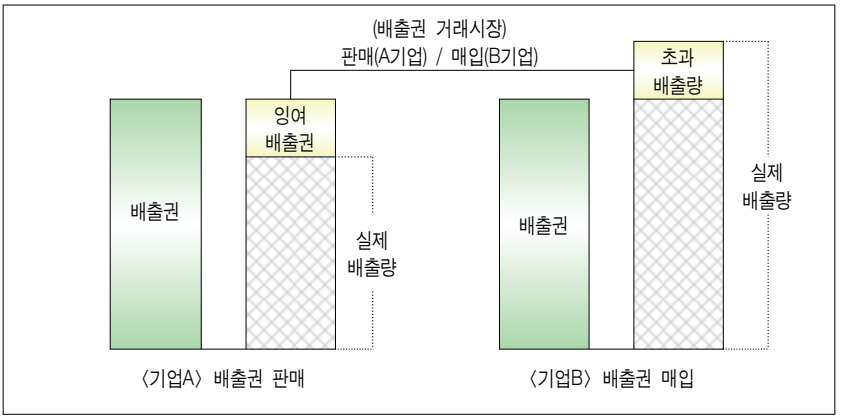

자료: 법제처(2012).

118) 박덕영(편저)(2012), p. 59에 따르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3% 감축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2007년 Lieberman 의원과 Warner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2007년 12월 상원의 환경공공사업위원회를 통과하였지만 2008년 6월 상원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 법안과 같이 자국에 수입되는 상품의 수출국이 자국 제도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규제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수입상품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할 것을 수입조건으로 할 수 있다.[119)]

미국의 Lieberman-Warner 법안의 수입규제제도는 수입업자가 대상 상품을 수입할 때 수출국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제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국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배출권 구매요건은 상품이 수입될 때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를 위해 인출될 때 적용되는 요건이다. 따라서 외견상 국경에서 적용되는 국경조치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GATT 제III조 주해는 수입 시 국경에서 징수 또는 적용되는 부과금 또는 조치를 내국부과금 또는 국내조치로 간주한다. 국경조치(수입부과금 징수 포함)인지 국내조치인지(내국세 징수 포함)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배출권 구매요건이 수입상품에만 적용되는지 또는 수입상품과 국내상품 모두에 적용되는지이다. 수입상품과 국내상품 모두에 적용되는 조치는 국내조치에 해당한다. 배출권 구매요건은 국내생산자가 상품생산과 관련하여 배출한 온실가스에 상응하는 수준의 배출권 구매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수입상품과 국내상품 모두에 적용되는 조치로서 국내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배출권 구매요건이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내국부과금인지 또는 상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조치인지가 문제된다. Lieberman-Warner 법안은 원산지국에서 수입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의 초과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업자가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품에 부과되는 내국부과금이라기보다 상품판매에 영향을 미치

119) Lieberman-Warner Climate Security Act of 2007, Sec. 6002.

는 국내조치로 판단된다. 미국에 수출되는 상품의 원산국이 미국의 cap-and-trade 제도와 매우 비슷한 성격의 배출권 규제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수입상품은 동종의 미국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으므로 내국민대우의무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런데 본국의 배출권 규제제도가 미국의 제도와 상응하지 않는 경우 수입업자는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이때 상품 수입을 위한 배출권 구매가 수입상품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적 조치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생산자가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상품을 생산하였으나 수입상품의 경우 원산국이 미국과 상응하는 제도를 가지지 못하여 배출권 구매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수입상품의 경쟁력을 불리하게 왜곡하게 되어 내국민대우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배출권거래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산상품의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한 배출권구매제도 등 수입규제제도는 수입상품을 국산상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입상품이 구매하여야 할 배출권 규모를 매우 정교하게 계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자동차 보조금 · 부과금 제도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만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녹색제품 등의 구매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이와 같은 친환경 상품 구매를 위한 지원은 공공기관이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국산 녹색상품과 외국산 비녹색상품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은 외견상으로 내국민대우 위반이 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에 의한 구매거래는

정부조달로 간주되어 GATT 제III조 8항에 따라 일반 내국민대우의무로 면제 받을 수 있다.[120] 정부조달은 원칙적으로 GATT상의 내국민대우 예외사항이지만, 한국이 가입한 WTO 복수국간의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모든 정부조달 거래가 자동으로 이 협정의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즉 정부조달협정상의 내국민대우 등 조항의무는 (1) 여타 정부조달협정 체약국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으며, (2) 우리나라가 이 협정 부록 I에 명시한 공공기관의 기준금액 이상인 모든 구매거래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조치는 이 협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반면 일반 소비자를 위한 혜택은 아래의 Bonus-Malus 제도와 같이 GATT 의무의 대상이 된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감축하고자 저탄소 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제공하고, 고탄소 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소위 Bonus-Malus 제도를 [표 3-3]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Bonus-Malus 제도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만일 위반이 있는 경우 일반예외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저탄소 자동차 구매자에 제공되는 보조금은 자동차 국내판매에 영향을 미치

120) GATT 제III조 8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이 조의 규정은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기관에 의하여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되는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 이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합치되게 적용된 내국 세금 또는 과징금의 수익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생산자에 대한 지급금 및 정부의 국내상품 구매를 통하여 실현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국내생산자에게 배타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표 3-3. 자동차 Bonus-Malus 제도 개요

CO_2 배출량 (g/km)	보조금 (유로)	대상 자동차 예시	CO_2 배출량 (g/km)	부과금 (유로)	대상 자동차 예시
0~50	7,000	Nissan Leaf, Renault Fluence ZE, Citroën C-Zero, Peugeot iOn	0~140	0	Renault Clio, Peugeot 207
51~60	4,500	-	141~150	200	-
61~90	550	Smart Fortwo cdi, Volkswagen Polo Bluemotion, Seat Ibiza E Ecomotive	151~155	500	-
91~105	200	Citroën C3 AirDream, Ford Fiesta ECOnetic, Peugeot 207 Blue Lion, Volvo C30 DRIVe, Toyota iQ, Nissan Pixo, VW Golf Bluemotion, Toyota Aygo, Citroën C1, Peugeot 107, Fiat 500 TwinAir	156~180	750	Renault Laguna Coupé 2.0 dCi, Citroën C4 Gd Picasso, BMW 320 dxDrive
106 이상	0	Renault Clio, Peugeot 207	181~190	1,300	-
하이브리드 차(전기+휘발유/디젤) 자연인 구매자에 한함.			191~230	2,300	-
0~110	4,000	Toyota Prius, Toyota Auris HSD, Lexus CT 200h, Peugeot 3008 Hybrid4, Honda Insight, Honda Jazz Hybrid	231 이상	3,600	Volkswagen Touareg, Porsche Panamera, Jaguar XJ, Mercedes GL, Audi Q7, Bentley Continental GTC

자료: French Car Taxes 웹사이트(2012).

는 조치로서 GATT 제III조 4항과 제I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그리고 고탄소 자동차 구매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상품에 부과되는 내국과징금으로서 제III조 2항과 제I조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한편 Bonus-Malus 제도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GATT 제XX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며, 이 경우 온실가스 가운데 이산화탄소 배출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Bonus-Malus 제도가 정당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Bonus-Malus 제도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탄소 자동차와 고탄소 자동차가 동종상품 또는 직접경쟁상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상품

의 동종성 또는 직접경쟁성은 사안별로 판단되며, 상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 기호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공통의 물리적 특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사용되는 공통의 최종용도, 대체성에 대한 소비자 기호가 공통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모든 자동차는 동종상품에 해당한다. 상품이 소비되는 가운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에 따른 구별은 TBT 협정하에서는 가능하지만, 배출량이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에 기인하지 않는 한 GATT 제III조의 내국민대우와 GATT 제I조의 최혜국대우가 국내조치에 적용되는 경우는 이러한 구별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동차가 동종상품인 경우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과징금 부과 또는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제공은 내국민대우에 위반된다. 고탄소 수입자동차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보조금 미제공은 저탄소 수입자동차에 대한 과징금 미징수 및 보조금 제공과 비교하여 최혜국대우의무에 위반된다.

한편 Bonus-Malus 제도가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되는 경우 GATT 제XX조 (g)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저탄소 자동차에 대한 특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대기를 청정 대기와 같이 유한천연자원으로 볼 수 있다면, Bonus-Malus 제도는 유한천연자원 보전과 관련된 조치에 해당할 것이다. 수입 자동차뿐만 아니라 국산 자동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국내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시행되므로 제XX조 (g)호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가 최종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제XX조 전문의 요건, 즉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Bonus-Malus 제도가 그 적용에 있어 차별이 없고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다.

4. 소결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규제,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총량 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에너지효율제도 등을 도입하였거나 도입 준비 중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도 앞서 언급한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배출규제,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총량 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 에너지효율제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 및 지원, 친환경인증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국내환경 또는 경제정책이지만, 국제무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WTO 협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WTO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GATT의 내국민대우의무, 최혜국대우의무는 상품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가장 기본적 의무로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므로 녹색성장 조치를 발동하는 데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경세조정 제도는 국내 규제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이므로 탄소세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WTO는 천연자원 보전조치를 정당화하는 GATT 제XX조 (g)호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녹색성장 조치가 이에 해당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제4장
녹색성장과 보조금

1. WTO 보조금협정 개관
2. 한국의 녹색성장 지원정책 현황
3. 녹색성장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4. 소결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정책 맥락에서 녹색산업 육성 지원, 녹색기술 개발연구, 친환경적 상품 생산 · 소비 촉진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무역을 왜곡하는 정부 보조금은 WTO의 규율대상이 된다. 본 장에서는 WTO 보조금 규범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녹색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WTO 분쟁사례, 외국의 상계관세 사례를 위주로 녹색성장 지원 관련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검토하도록 한다.

1. WTO 보조금협정 개관

녹색성장정책은 산업지원 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각종 인센티브 등 지원조치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환경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산업지원 정책의 상당 부분은 직 ·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 형태의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보조금은 수혜기업이 제작한 상품의 가격을 감소시켜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1947년 GATT하의 다자무역제도에서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보조금협정은 1986~94년에 걸쳐 이루어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것이다. 이 협정 제1부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보조금'이란 (1)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 또는 GATT 제XVI조상의 소득 혹은 가격 지지로서, (2) 수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며, (3)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조치가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만 WTO 규제를 받는 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보조금협정으로 규정되는 재정적 기여는 그 공여주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이여야 하며, 보조금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 재정적 기여의 공여주체로서의 정부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정부의 권한을 보유 · 행사하거나 또는 부여받는 주체를 의미한다.[121] 재정적 기여는 (1)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대출보증 등 예시를 포함한 자금의 직 · 간접적 이전, (2) 징수되어야 할 세금 및 각종 부과금의 감면, (3) 사회간접자본을 제외한 정부로부터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4) 위의 세 가지 행위를 정부가 민간주체에 위임 또는 지시하여 민간주체가 정부를 대신하여 다른 수혜자를 지원하는 행위와 같은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122] 재정적 기여 존재의 여부가 확인되면 이에 따른 혜택의 발생 여부에 대해도 검토해야 한다. 시장에서 확보가능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혜자에게 지원이 제공될 때 일반적으로 혜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123] 재정적 기여와 혜택은 보조금의 구성요소이나 이러한 보조금 중 특정성 있는 보조금만이 WTO 규율대상이 된다. 특정성 있는 보조금이란 보조금 제공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특정 기업(군), 특정 산업(군), 또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보조금을 의미한다.[124] 수출보조금이나 수입대체보조금과 같은 금지보조금은 그 자체로서 특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125]

---

121) WTO Appellate Body Report(2011), paras. 317-322.

122) WTO 보조금협정 제1.1(a)(1)조.

123) WTO Appellate Body Report(1999), paras. 149-161.

124) WTO 보조금협정, 제2조.

WTO 규제대상 보조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지급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되는 보조금으로서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수출보조금)과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수입대체보조금)이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을 통합하여 금지보조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26] 둘째, 조치가능 보조금은 (1) 타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2)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타 회원국의 양허혜택 무효화 혹은 침해, (3) 타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127] 셋째, 보조금협정 제4부는 원래 연구개발(R&D) 보조금, 낙후지역 개발보조금 및 환경보조금 등 허용보조금을 규율하고 있었지만, 2000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은 만료되었다. 따라서 녹색성장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보조금 중 특히 환경보조금이나 R&D 보조금은 원래 허용보조금으로 간주되었으나, 지금은 그 성격과 지급조건에 따라 금지보조금이나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분류된다.

WTO 회원국은 여타 회원국 정부가 공여한 보조금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러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WTO에 직접 제소하거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보조금에 대한 규제조치의 발동요건은 보조금협정에 의해 규정된다.

WTO 분쟁해결 양해에 따라 WTO 분쟁해결 절차는 크게 (1) 협의, (2) 패널 절차, (3) 상소 절차 및 (4) 이행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 즉 양측 당사국은 먼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협의 실패 시 관련 분쟁

125) WTO 보조금협정, 제2.3조.

126) WTO 보조금협정, 제3조.

127) WTO 보조금협정, 제5조.

사안을 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널 보고서의 법률적 쟁점이나 해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상소기관에 상소를 할 수도 있다. 패널 보고서와 상소기관 보고서는 WTO 전 회원국으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관에 의해 채택된다. 패소국은 합리적 이행기간 내에 본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불이행 시 패소국은 승소국과 협의를 거쳐 시장개방을 수반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고, 상호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승소국은 패소국에 대한 WTO상의 양허 · 여타 의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지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 · 유지에 대한 사실이 성립되면 피소국은 즉시

그림 4-1. WTO 보조금협정하의 대응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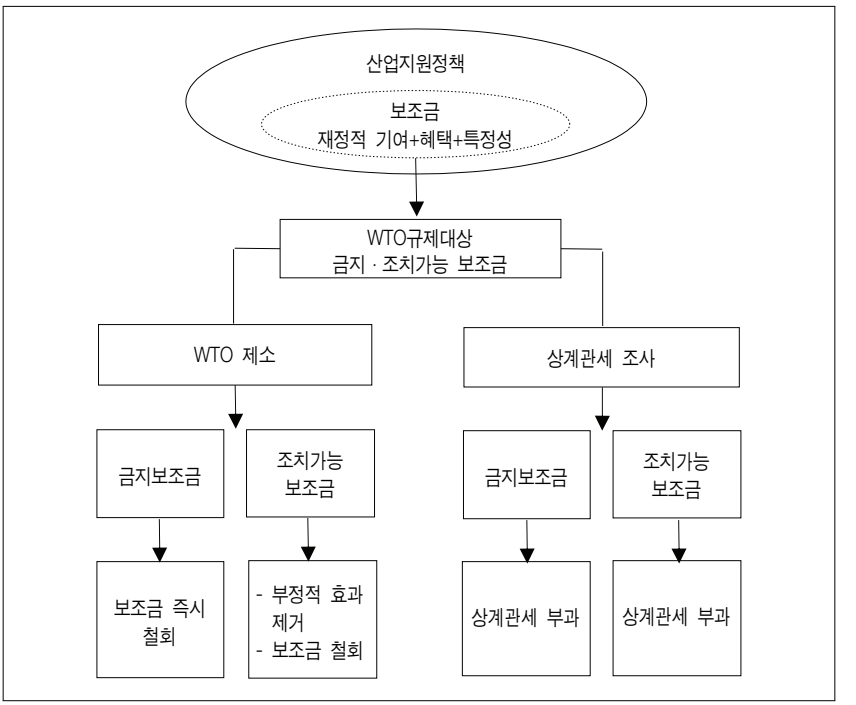

자료: 박월라, Sherzod Shadikhodjaev, 나수엽, 여지나, 마광(2011).

철회할 의무가 있다.[128] 조치가능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국이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거나 보조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129]

상계관세와 조사에 대한 발동요건은 보조금협정 제5부에 규정되어 있다.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자국 시장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국은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이러한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 액수에 상응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계관세 조사는 먼저 수입국 조사당국의 직권으로 또는 관련 국내산업의 조사개시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이때 상대국 정부의 보조금 존재 여부, 운용현황, 조사대상 기업의 일반영업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당국은 먼저 피조사국 정부와 기업에 대해 질문서를 송부한다. 피조사국 정부와 기업의 답변서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기타 접근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조사당국은 보조금과 피해 유무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고,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잠정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조사 종료 이후 최종판정이 보조금과 피해 각각의 존재 여부를 긍정적으로 결정할 경우 최종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부정적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예비판정 이후 기납부한 상계관세는 해당 수출기업에 환급된다. 상계관세 조사기간은 12~18개월이 소요된다. 상계관세는 최대 5년간 부과될 수 있으며, 상계관세 부과 이후 재심도 가능하다. 상계관세 조사나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관련 업체들은 상계관세 부과국의 국내법원에 사법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출국의 정부는 상계관세 조사 · 부과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설명된 보조금협정 이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서

128) WTO 보조금협정, 제4.7조.

129) WTO 보조금협정, 제7.8조.

비스 부문에서 활용되는 보조금에 적용된다. 이 협정 제XV조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보조금이 서비스무역을 왜곡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무역왜곡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간 규율을 발전시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녹색 서비스를 위한 보조금은 본 보고서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2. 한국의 녹색성장 지원정책 현황

우리 정부가 발표한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09~13년간 총 107.4조 원으로 UN Green Economy Initiative가 권고한 금액수준의 약 2배 이상이며, 연간 평균 GDP의 약 2% 수준의 재정투자에 해당된다.[130] 이러한 지원예산은 계획상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 및 국가위상 강화와 같은 3대 전략별로 [표 4-1]과 같이 집행된다.

표 4-1. 녹색성장 재정소요 현황

(단위: 조 원, %)

구 분	합 계	2009년	2010~11년	2012~13년	증가율
①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56.9	8.6	29.2	19.2	14.0%
② 신성장동력 창출	28.6	4.8	10.7	13.1	9.4%
③ 삶의 질 개선 및 국가위상 강화	27.9	5.2	10.5	12.2	3.6%
녹색성장 지원예산 합계	107.4	17.5	48.3	41.6	10.2%

자료: 녹색성장위원회(2009a).

130) 녹색성장위원회(2009a), p. 373.

녹색성장 3대 전략하의 각종 사업에 제공되는 정부지원 중에서 WTO 규범상 보조금으로 여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제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 수단이 (1) 정부 투자, (2) 규제 신설, (3) 유인책 또는 반(反)유인책, (4) 외부경제의 내재화, (5) 도덕적 설득으로 나누어져

표 4-2. 녹색성장 지원 관련 한국의 주요 법률조항 예시

구분	법률명	조항	주요 내용
환경 전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6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가능
		28조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 등을 위한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47조 4항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의 제작 · 보급을 위한 재정 · 세제 지원 가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7조의 5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 가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6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가능
		8조	연료생산자에 대한 자금 지원 가능
		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가능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5조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
		6조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가능
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8조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의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한 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가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12조의 5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 보급 촉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가능
		17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차액 지원 제공
기타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	지능형 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가능
		14조	등록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지능형 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 가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2조 3항	배출권의 할당은 무상으로도 가능
		35조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사업 등에 금융상 · 세제상의 지원 등 보조금 지급 가능

자료: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있는바,[131] 그중에서 특히 (1)~(4) 항목은 보조금 지급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보조금 관련 지급요건, 절차, 해당 부처의 권한 등의 사항은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보조금 공여와 관련해서 법률은 주로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부처의 내부지침 등에 담겨져 있다.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에 관한 주요 법률 중 보조금(특정성 여부와 무관함)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조항은 [표 4-2]와 같다. 이들 조항은 녹색기술 R&D 사업 지원, 그린카 등 환경친화적 상품 이용 촉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공간의 한계의 이유로 보조금 관련 모든 법령 조항을 검토하기가 어렵지만, 녹색성장 지원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지원조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검토하고자 하는 지원조치가 엄밀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저자의 개인적 입장으로 보조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조치일 뿐이며, WTO 규율을 받기 위한 그 특정성 여부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 녹색지원 정책의 현황에 대해 보여주고, 보조금협정상의 주요 쟁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제3절에서 하고자 한다.

가. 녹색산업 육성 지원

녹색산업 육성 문제가 녹색성장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131) 녹색성장위원회(2009a), p. 32.

우리 정부는 이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5에 의해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해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제13조의 3에 따라 환경시설의 개발 · 설계 및 시공, 환경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등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혹은 융자할 수 있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표 4-3]과 같이 금융수수료 지원, 금융 지원, 기술개발우선 지원 등 직접 지원과 인센티브 형식의 지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법률(제16조의 2)과 시행규칙(제33조의 8)에 의하면,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한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간의 공동 협력사업, 녹색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환경 관련 협력사업,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 녹색제품 ·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개발사업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녹색산업 육성과 관련 있는 또 다른 법령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해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률 제6조는 정부가 지정된 기관 · 단체 · 사업자 등에게 R&D 사업을 위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3.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원 내용				
직접 지원			인센티브 지원사업	
경영컨설팅 지원	기업진단 및 맞춤형 지원사업 설계 · 매칭	500만 원	금융 지원	• 정책자금 융자대상기업 심사 시 우선심사 - 재활용 자금(650억 원), 환경개선(400억 원), 육성자금(100억 원) • 민간금융 활용 금융지원 확대(녹색 패밀리론) - 0.5%까지 금리 감면, 최대 3억 원 추가대출 • 환경산업사업화지원사업(최대 3억 원) 가점 부여
전문인력 고용지원	환경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500만 원	해외진출 지원	• 환경시장 해외진출 및 수출사업화 지원 강화 - 국제공동현지사업화지원사업(최대 6억 원) 가점 부여 - 해외환경 프로젝트 타당성조사사업(최대 2억 원) 가점 부여 - 녹색수출협약사업(최대 1,700만 원) 가점 부여 - 글로벌 그린비지니스 파트너십 사업 우선참가 자격 부여 - 현지 해외협력센터 지원사업 및 비즈니스 라운지 우선지원
금융수수료 지원	금융기관 · 투자기관 자금유치 지원	500만 원	고용연계 · 연수 지원	• 환경전문인력 고용연계 과정 고용비 지원(업체당 300만 원)
해외마케팅 지원	기업 브로슈어 제작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500만 원	기술개발 우선지원	•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총 사업비 1조 5,530억 원
국내외 브랜드 홍보	정부 및 지자체, 해외 관련 기관 대상 홍보	-	마케팅 지원	• 환경기술개발 성과 전시회 우선참가 및 부스비 50% 감면 • 저탄소녹색성장박람회 우선참가 및 온 · 오프라인 홍보 지원 • 우수환경산업체 브랜드화를 위한 기획기사 및 광고 등 홍보 지원
* 업체당 2,000만 원, 지정기간 내 1회 지원가능			* 지정기간 내 상시 지원가능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2b).

나. 녹색 R&D 지원

우리나라는 2008년 1월에 발표한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에서 [표 4-4]에 명시된 27개의 중점 녹색기술을 연구개발, 상용화 등의 단계별로 단기집중투자(대상기술: 실리콘계 태양전지, 개량형 경수로 등), 중기집중투자

(고효율 저공해 차량, 그린 프로세스 등), 장기집중투자(기후변화 예측, 기후변화 영향평가적응 등), 장기점증투자(비실리콘계 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대상으로 분류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녹색기술 R&D 투자를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재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132)]

이러한 녹색기술 관련 대규모 투자계획에는 연구개발, 기술상용화 부문 또한 있다. 전체 투자 중 2조 8천억 원이 넘는 부분이 2013년까지 녹색기술 프로젝트의 기금으로 확보되었다. 녹색기술의 개발은 2012년까지 48만 1,000개, 2020년까지 11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1억 3천만 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133)] 우리나라의 녹색기술 관련 R&D 사업은 매우 다양하고 사업 성

표 4-4. 27대 중점기술

1.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 기술	15.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기술
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기술	16.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
3.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17. 환경부하 및 에너지 소비 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4.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 원천기술	18. 조명용 LED · 그린 IT 기술
5.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 기술 및 시스템 기술	19.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6.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기술	20. 고효율 2차 전지 기술
7.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 핵주기시스템 개발 기술	21. 이산화탄소(CO_2) 포집, 저장, 처리 기술
8.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기술	22. Non-CO_2 (이산화탄소 제외 온실가스) 처리 기술
9.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기술	23. 수계수질평가 및 관리 기술
10.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24. 대체수자원 확보 기술
11.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 기술	25.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12.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	26. 유해성 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 기술
13. 고효율 저공해 차량 기술	27. 가상현실 기술
14. 지능형 교통, 물류 기술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웹사이트(2012a).

132) 녹색성장위원회(2009a), pp. 133~134.

133) UNEP(2009), p. 14.

격과 내용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본 절에서 R&D 관련 두 가지 사업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대응전략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R&D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8개 정부부처와 12개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해 왔고, 매년 예산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2010년 신재생에너지 R&D 예산은 총 4,235억 원(전년 대비 19.5% 증가)을 기록하였고, 그중에서 지식경제부하의 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134)]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림 4-2. 2010년 신재생에너지 R&D 예산 기관별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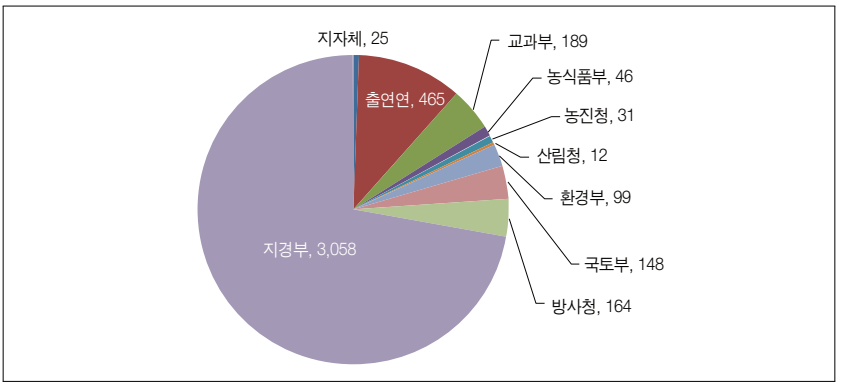

자료: 제4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0).

134) 제4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0).

친환경 에너지이자 미래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기후 변화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총괄기관은 지식경제부이며, 지원 대상자는 정부투자-산하기관, 국 · 공립 및 특정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될 수 있다.[135] R&D 지원은 [표 4-5]에서 보는 것처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 비율 이내의 정부출연금으로 이루어진다.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로 (1) 태양광, 풍력, 수소 · 연료전지가 수출산업화에 연계한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2) 보급효과가 큰 바이오, 지열, 태양열, 폐기물 분야 기술자립 및 산업화를 위한 열에너지 고도이용(高度利用) 기술기반 구축, (3) 보급확대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의 적극적인 추진, (4) 시장진입 가속화를 위한 실증연구 지원확대로 R&D 성과 확산에 주력 등과 관련된 과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총 지원규모는 2,400억 원(신규과제, 계속과제 모두 포함)에 달한다. 2007년, 2008년, 2009년 신규지원 과제의 1차연도 평균 정부출연금은 각각 3백 4,200만 원, 13억 4,800만 원, 8억 2,500만 원이었

표 4-5.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지원 내용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1개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주: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에 민간부담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자료: 지식경제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0).

135) 지식경제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0), p. 138.

표 4-6. 분야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 지원 실적(1988~2011년)

(단위: 백만 원)

구분	과제 수	총사업비			
		정부(~2011)	%	민간(~2011)	%
수소	47	55,449.00	3.84	30,002.10	3.10
연료전지	113	350,797	24.63	291,481	31.74
태양광	235	376,600	26.45	191,273	20.83
풍력	96	207,113	14.54	134.402	14.63
태양열	97	46,563	3.27	18,437	2.01
바이오	148	87,100	6.12	39,996	4.35
폐기물	90	68,764	4.83	62,808	6.84
석탄이용	54	85,269	4.62	154,786	11.34
지역	43	37,031	2.6	15,842	1.72
소수력	16	9,850	0.69	4,229	0.46
해양	30	29,132	2.05	14,355	1.56
기타	232	90,360	6.31	11,428	1.24
합계	1,201	1,444,026.70	100	969,040.57	100

주: 과제 수는 신규과제 수, 정부지원금은 신규 및 계속과제 지원금임, 2006~07년은 전력기금 포함.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웹사이트(2012).

으며, 3년간 신규지원 경쟁률이 높아진 추세를 보였다.[136)]

2) 중소기업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관화는 중소기업 R&D 사업인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녹색화를 위해 저탄소,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 친환경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녹색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투입 에너지 · 자원의 절감, 산출 온실가스 · 폐기물의 저감,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공정기술개발이 지원대상이며, 개발 결과물

136) 앞의 책, p. 139.

을 기업의 생산현장에 설치하여 가동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무이자 · 무보증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납부받으며,[137]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표 4-7]과 같다.

중소기업청의 2012년 공고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435억 원(신규: 257억 원, 계속: 178억 원)이다. 또한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현금 일시납 원칙으로 하되,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도 가능하다.[13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R&D 지원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출연금으로 제공된다. 우리나라 R&D의 특징은 기술료가 있다는 것인데, 즉 관련 사업 성공 시 정부가 지급한 출연금 중 일부를 다시 정부에 환불해야 한다. 따라서 R&D 출연금은 두 가지 형태의 재정적 기여를 합산한 것으로, 출연금 중 기술료를 제외한 부분은 무상지원

표 4-7.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내용

과제 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기술료
산연협력 과제 & 출연연전용 과제		2년 이내	6억 원 이내	75% 이내	기업이 사용한 정부 출연금의 20% 부담
기업제안 과제	일반과제	1년 이내	2.5억 원 이내	75% 이내	정부출연금의 20% 납부
	첫걸음 R&D	1년 이내	2억 원 이내	75% 이내	
보급 · 확산 과제		1년 이내	1억 원 이내	50% 이내	정부출연금의 20% 납부

주: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 중에서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자료: 중소기업청(2012).

137) 중소기업청(2010).

138) 중소기업청(2012).

(grant)이며, 기술료에 해당하는 부분(즉 환불금액)은 무이자 대출이다. R&D 출연금으로 발생하는 혜택 역시 무상지원과 무이자 대출 각각의 혜택으로 구성된다.[139]

다. 녹색상품 소비촉진 지원

보조금은 정부가 상품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생산자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보조금협정에는 이러한 형태의 간접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WTO 분쟁사례에서는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WTO 규제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브라질 항공기 사건에서 브라질 정부는 국산 항공기 구매업체들에 대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환불이 안 되는 자금(non-refundable payments)을 부여하였다. 패널은 이와 같은 재정적 기여(자금제공)가 상품구매자(항공사)에게 보다 유리한 금융조건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비자를 위한 이러한 혜택은 궁극적으로 관련 상품의 매력도를 높여 항공기 생산업체에도 전파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140]

우리나라 법도 정부가 친환경적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며, 이 법률 시

139) 이와 관련된 미국 상무부의 관행은 USDOC(2011a), section A 참고.

140) WTO Panel Report(2001), para. 5.28 및 각주 42 참고. 보조금의 전파 문제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Shadikhodjaev(2012) 참고.

행령 제18조는 이러한 지원조치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켰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 알선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지식경제부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2009년 발표된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은 한국이 2015년까지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2020년까지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보급함으로써 세계 4대 전기자동차 강국 지위를 선점하는 데 비전을 두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과제로서 위 법률 조항과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즉 정부는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2011년 하반기부터 3년간 동급 가솔린 차와 가격차의 50% 수준의 보조금(대당 2,000만 원 이내)을 지원하고, 일반 소비자 대상 구매 인센티브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였다.[141)]

한편 우리 정부는 2004~08년간 국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2,458대를 보급한 적이 있고, 일반 소비자의 경우 2009년 7월부터 구매보조금을 없애고 개별소비세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142)]

---

141) 제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2009).

142) 제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2009).

또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녹색 자동차 외에 인증받은 녹색제품을 원칙적으로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약 3만 개의 공공기관이 이러한 녹색구매제도에 포함되어 있으며, 녹색제품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6년 12월 기준으로 12조 원에 달한다.[143] 녹색제품 시장규모가 크면 클수록 녹색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산 비녹색제품 생산자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의무구매제가 녹색제품 생산자에게 간접적으로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더라도 공공기관에 의한 구매거래는 정부조달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대한 비판을 반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144] 이러한 녹색제품 의무구매제가 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더라도 GATT 제XX조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달협정 제XXIII조상의 일반 예외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다.

표 4-8. 공공기관 대상 하이브리드 차 보조금 연도별 현황

(단위: 대, 억 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누계
모델명	클릭	50					50
	베르나		191	223	305	711	1,430
	프라이드		121	145	351	361	978
계		50	312	368	656	1,072	2,458
정부지원금*		14억 원	87억 원	103억 원	83억 원	145억 원	432억 원

주: 보조금은 2004~06년 대당 2,800만 원, 2007~08년 대당 1,400만 원.
자료: 제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2009).

143) OECD(2009), p. 77.

144) 다음(3절 나. 1)에서 살펴볼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관련 WTO 사건에서도 캐나다가 유사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

친환경적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에 대한 다른 국가의 불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소비자를 위한 보조금을 대상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구 GATT 제도에서 다루어진 사례에서도 함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1952년 법에 따라 이탈리아 농부들에게 국산 농업기계 구입 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었는데, 패널은 이러한 특혜대출이 외국산 농업기계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므로 GATT 제III조 4항(내국민대우)에 위배된 것으로 판정한 바 있다.[145)]

라. 배출권거래제와 보조금의 관계

제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단위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되, 1차(2015~17년)와 2차(2018~20년) 계획기간에는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으로 한다.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인증한다. 또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사업 등에 금융상 · 세제상의 지원 등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46)]

---

145) GATT Panel Report(1958), paras. 5-16 참고.

14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장 및 부칙 참고.

배출권거래제와 보조금의 관계는 지금까지 주로 학계에서 거론되었으며,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배출권거래제가 없는 국가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이 제도에 따른 추가비용을 피할 수 있는 국내업체들에 일종의 경제적 혜택을 주어 암시적(implicit)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주장이 있다.[147] 둘째, 배출권거래제가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 제도 중 배출권의 무상할당이 WTO법상의 조치가능한 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148] 우리나라는 이 둘째 주장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논의되는 무상할당은 보조금협정이 나열하고 있는 재정적 기여 중 특히 정부로부터의 상품 제공에 해당될 수 있다.

배출권은 진정한 의미의 '상품'이 아니지만, WTO 연질목재 사건의 경우처럼 정부가 업체들에 부여하는 나무수확 권리(right to harvest trees)도 '상품'으로 여길 수 있다는 광의의 해석[149]은 배출권의 부여 역시 상품의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배출권 무상할당이 재정적 기여에 해당되더라도 WTO의 규제를 받기 위해 배출권에 따른 혜택의 여부, 특정성의 여부, 무상할당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의 발생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배출권 무상할당 외에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중 앞서 언급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사업 등에 필요한 금융상 · 세제상의 지원의 지급도 보조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147) 이러한 접근의 논리는 특히 Stiglitz(2006)에서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반박 연구로는 Bhagwati and Mavroidis(2007); Cottier, Nartova and Bigdeli(eds)(2009), pp. 73-76 참고.

148) 이 논의에 대한 내용은 Lodefalk and Storey(2005), pp. 41-44 참고.

149) WTO Panel Report(2002), paras. 7.11-7.30 참고.

3. 녹색성장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가. WTO 통보문상 한국의 녹색성장 보조금 현황

보조금협정 제25조에 따라 각 WTO 회원국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매년 WTO에 통보해야 하지만, 보조금 통보문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통보문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여전히 많다.[150] 따라서 기후변화, 환경오염 대응을 위한 각 회원국의 보조금 현황은 [그림 4-3]과 같지만, 실제로 WTO 회원국들이 공여하는 보조금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1997~2008년간 제출된 보조금 통보문 중 환경 관련 통보문 비중은 평균 25%에 달하며, 여기에 녹색성장과 관련된 보조금도 포함된다. 통보된 보조금은 주로 자연자원 보존,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생산촉

그림 4-3. 환경 관련 보조금 통보문[151] 제출 현황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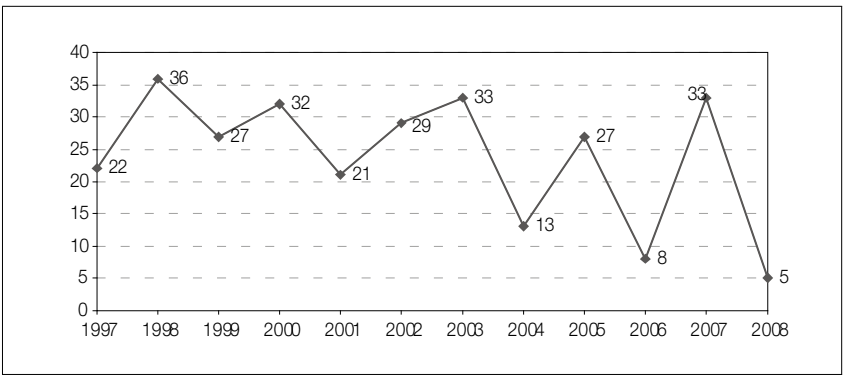

자료: WTO(2010a).

150) WTO 웹사이트(2011) 참고.

151) 환경 관련 통보문은 해당 조치의 내용이 환경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모든 통보문을 의미한다.

진, 재활용 · 오염 관리산업 지원, 농업 · 임업 · 어업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목적으로 하며, 무상지원, 대출, 세금 · 관세감면 등 형태로 지급되어 왔다.

한국의 녹색성장 보조금 역시 한국이 제출한 통보문에 언급되어 있으며, 본 절에서의 녹색성장 보조금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2008년 전후의 모든 기후변화대응 보조금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통보한 보조금 중 9건이 녹색성장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표 4-9]와 같다.

WTO의 각종 회의록[152]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표 4-9]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보조금에 대해서 WTO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 무역정책검토기관 회의에서 타 회원국들이 큰 문제로 삼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환경 R&D 사업, 석탄산업 안전성 · 생산시설 지원, 자동차 · 디젤차량 저배기 기술개발지원 등 보조금의 지급 요건 · 현황 · 규모, 수혜자의 자격, 관련 용어의 뜻 등에 대한 질의 · 응답이 수시로 있어 왔다.[153]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보호기금과 같은 일부 보조금이 아예 통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은 문제의 보조금은 특정성이 없어 통보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제시한 바 있다.[154]

152) 특히 WTO(n.d.1.) 참고하여 검색하였다.

153) WTO(n.d.2.) 참고.

154) WTO(1999) 참고.

표 4-9. 한국의 녹색성장 보조금 통보 현황				
구분	통보연도	지원사업명	형태	목적
환경 전반	2011 2010 2009 2006 2004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오염방지장치를 설치한 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환경시설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2011 2010 2009 2006 2004 2002 2001 1998 1997	환경 R&D 지원/환경 공학 · 기술개발	해당 정부출연 연구원, 대학교, 민간 연구기관, 민간기업에 대한 무상지원	첨단기술개발을 통한 환경 향상
온실 가스 감축	2011	텔레미터링 시스템 설치 · 운영비 지원	• 대기오염물질 수준 측정장비를 설치한 중소기업에 대한 무상지원 • 설치 · 운영비 지원(중앙정부 40%, 지방정부 20%)	공기의 질 개선
	2011	저녹스 버너 설치보조금	일반 버너 교체를 위한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상업건물, 아파트 주인 등에 대한 무상지원	공기의 질 개선
	2010 2009 2006	DPF, DOC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청정엔진 장착을 위한 보조금	디젤차량에 배출감축 장치를 설치하거나 청정엔진을 새로이 장착한 자를 위한 무상지원	대도시권 디젤차량 배기가스 감축
	2010 2009 2006 2004	천연가스 버스 구입 · 연료비 보조금	천연가스 버스 구매자 또는 천연가스 차량에 대한 연료공급자를 위한 무상지원	대도시권 배기가스 감축
	2004 2002 2001 1998	자동차 · 디젤차량 저배기 기술개발지원	R&D 보조금	디젤차량용 저배기 기술 개발을 통한 대기오염 감축
기타	2010 2009 2006 2004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재활용산업 수행자를 위한 융자금 제공	재활용 장비 ·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재활용산업 촉진
	2001 1996	석탄산업 안전성 · 생산시설 지원	오염관리에 대한 무상지원 등	탄광 오염관리 촉진 등

자료: WTO(n.d.3), 각종 보조금 통보문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나. WTO 분쟁사례

1995년 WTO 출범부터 2012년 8월 1일 현재까지 제소된 442건의 사건 중 92건이 보조금협정과 관련된 것으로, 그중에서 상대국의 보조금 지급 조치와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사건은 각각 56건, 36건이었다. 보조금, 상계관세 분쟁의 연도별 현황은 [그림 4-4]와 같다.

보조금 제소사건 중 녹색성장 보조금이 제소당한 사건은 지금까지 단 3건에 불과하며, [표 4-10]과 같이 중국과 캐나다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녹색성장 보조금 관련 분쟁 중 한국이 제소하거나 제소당한 사례는 없으나,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건에는 제3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의 보조금(DS412, 426)에 대해서는 일본과 EU가 별도로 제소하였으나, 사실상 동일한 조치에 대해 제소하였기 때문에 단일 사건으로 간주하고 중국의 풍력장비 사건을 같이 검토하여 이들 사건이 우리

그림 4-4. WTO 보조금협정 분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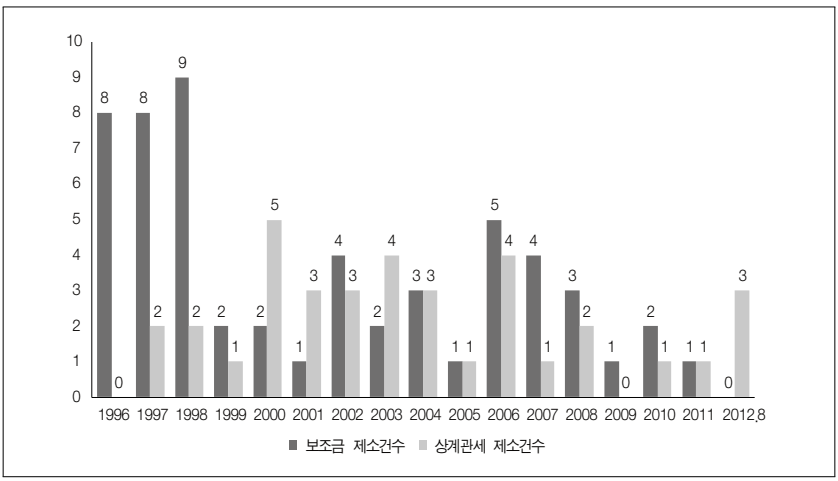

자료: WTO 웹사이트(2012e)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표 4-10. 녹색성장 보조금의 WTO 분쟁 현황

DS No.	사건	제소국	제3참여국	제소일자[157]
426	Canada - Measures Relating to the Feed-in Tariff Program	EU	미국, 일본, 호주, 중국, 대만,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터키, 엘살바도르	2011.8.11
419	China - Measures Concerning Wind Power Equipment	미국	-	2010.12.22
412	Canada -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ector	일본	호주, 브라질, 중국, 엘살바도르, EU, 온두라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대만, 미국	2010.9.13

자료: WTO 웹사이트(2012e)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나라 녹색성장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155]

1)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사건[156]

일본과 EU는 2009년에 발효된 캐나다의 녹색에너지 · 경제 법률(Green Energy and Green Economy Act)에 의거해 온타리오 주에서 실행 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가 비차별 원칙을 위반한다고 각각 2010년, 2011년 WTO에 제소하였다. 캐나다의 FIT 프로그램에 따라 2014년까지 온타리오 주에서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공공 전기공급자들은 일반전기보다 비싸더라도 태양 ·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관련 생산업체들로부터 정부가 지정한 보증가격으로 장기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예컨대 2010년 기준으로 일반전기는 평균 1kWh당 3.79캐

155) 본 보고서 집필 당시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사건은 아직 패널 절차를 밟는 중이고, 중국의 풍력장비 사건은 협의 단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들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에 대해 분석하는 데 있어 다소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156) Canada -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ector (DS412), Canada - Measures Relating to the Feed-in Tariff Program (DS426).

157) 제소일자는 협의요청일 시점으로 정한다.

나다 센트이었으나, 풍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 보증가격은 각각 13.5~19 센트, 44.3~80.2센트였다.[158]

WTO 협의요청서와 관련 언론자료 등에 따르면,[159] 일본과 EU가 FIT 프로그램에 대해 주로 비판하고 있는 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판매를 보증하는 형태의 '보조금' 자체보다 이 '보조금'이 온타리오 주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공여된다는 사실이었다. 즉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표 4-11]에 표기된 수준만큼 캐나다 국산장비 등을 이용할 경우에만 FIT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소국들은 캐나다의 이러한 국산화 조건이 차별적이며 수입대체적 효과를 야기하므로 내국민대우(GATT 제III조), 보조금협정(제3조), TRIMs 협정(제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국산화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로 인해 제소국들의 재생에너지 기술 수출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EU는 2007~09년간 캐나다에 대한 풍력장비 수출액이 3~6억 유로였으나, 캐나다의 국산장비 구입조건이 없었다면 이보다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60]

표 4-11. 캐나다 온타리오 주 FIT 프로그램상의 국산화 조건

풍력사업		태양사업			
10kW 이상		10kW 초과		10kW 이하	
최소 국산화 수준	상업거래 이행연도	최소 국산화 수준	상업거래 이행연도	최소 국산화 수준	상업거래 이행연도
25%	2009~11년	50%	2009~10년	40%	2009~10년
50%	2012년 이후	60%	2011년 이후	60%	2011년 이후

자료: Wilke(2011)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158) BNA International Trade Daily(2012).

159) WTO(2010e), WTO(2011h), BNA International Trade Daily(2012) 참고.

160) ICTSD 웹사이트(2011b).

반면 캐나다는 FIT가 보조금이 아니며 정부조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캐나다 입장에서 FIT는 정부조달 사업으로 GATT 제III조상의 내국민대우와 TRIMS 협정으로부터 면제되며, FIT 담당기관인 온타리오 전력당국(Ontario Power Authority)이 WTO 정부조달협정상의 캐나다 양허표에서 배제된 관계로 정부조달협정 범위에서 역시 제외된다. 또한 캐나다는 FIT가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로 간주되더라도 그로 인한 혜택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혜택 판정에 근거가 되는 비교가능한 시장 가격기준(benchmark)이 재생에너지 가격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에너지 가격은 이러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제소국의 입장이 틀렸다고 반박하였다.[161)]

이 사건은 협의 단계를 넘어 현재 패널 절차가 진행 중이며, 본 보고서 작성 당시 최종 판결문이 회람되지 않은 상태이다.

2) 중국의 풍력장비 사건[162)]

미국은 2010년 12월 중국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제소 근거는 중국정부가 2008년부터 운영해 온 특별기금을 통해 풍력장비 생산업체들에 대해 국내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에서 미국은 보조금의 투명성 결여 또한 지적하였다. 즉 중국이 보조금을 규정한 법령을 WTO 공용어로 번역하지 않고 WTO에 통보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중국이 가입의정서상의 약속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주장

161) 이 단락의 내용은 BNA International Trade Daily(2012), ICTSD 웹사이트(2012)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62) China - Measures Concerning Wind Power Equipment (DS419). 이 사건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상당한 부분은 박월라, Sherzod Shadikhodjaev, 나수엽, 여지나, 마광(2011), pp. 137~139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하였다. 미국은 풍력장비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중국의 풍력발전용 터빈 생산자가 670만~2,250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 금액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정확한 액수를 추후 WTO 통보자료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163)]

이 분쟁은 패널 단계까지 가기 전에 중국이 풍력보조금 프로그램의 폐지를 약속함에 따라 양자 합의로 완결되었다.[164)] 한편 미국의 요구에 따라 풍력보조금 프로그램이 폐지되었으나, 중국의 풍력산업이 그동안 상당히 성장하여 경쟁력을 키워 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폐지가 중국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04년에는 중국 내 설치된 풍력장비 중 82%가 수입되었으나, 2010년에는 새로이 설치된 풍력장비 중 약 90%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중국의 풍력장비 제조업자들의 생산능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165)]

3) WTO 분쟁사례 평가 및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사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지금까지 WTO에서 피소된 녹색성장 보조금은 보조금 제소사건 중 5%에 불과하며, 가장 최근에 피소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각국의 산업지원이 본격화되는 반면, 재생에너지 기술, 장비 등을 개발하는 타국의 이해관계가 손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캐나다 FIT 사건에 미국, 호주, 중국, 인도, 한국, 영국, 터기

163) BNA International Trade Daily(2011).

164) USTR 웹사이트(2011).

165) ICTSD 웹사이트(2011a).

등 여러 국가들이 제3국으로 참여한 것도 본 분쟁 사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녹색성장 보조금이 피소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각국의 산업지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에 대한 WTO 제소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문제의 조치가 WTO에서 금지되고 있는 수입대체보조금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풍력산업 지원은 수입대체보조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이지만, 캐나다의 프로그램은 수입대체의 요소가 존재하나 FIT가 과연 보조금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특히 FIT가 보조금협정상의 정부 관행을 통한 재정적 기여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 혜택 판정에 근거가 되는 비교가능한 시장가격 기준이 제소국의 주장대로 재생에너지 가격이 아닌 일반에너지 가격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보조금과 정부조달 간의 관계 등의 문제가 캐나다 재생에너지 사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166]

셋째, 중국의 풍력장비 사건에서 보조금의 투명성 결여 문제가 제소근거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모든 WTO 회원국은 보조금협정 제25조에 따라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WTO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의 미통보는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 무역정책검토기관 등 WTO의 다자포럼에서만 비판을 받아 왔으나,[167] 이 사건은 WTO 제소가 이러한 미통보 행위와 같은 투명성 결여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며 보조금협정상의 투명성 원칙 역시 다

166) FIT가 보조금인지의 여부에 대한 상세한 법률적 분석은 Wilke(2011) 참고.

167) 예컨대 WTO 웹사이트(2012a), 박월라, Sherzod Shadikhodjaev, 나수엽, 여지나, 마광(2011), pp. 122~127 참고.

른 규정과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168)]

따라서 우리나라도 녹색성장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우선 WTO가 금지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이나 수입대체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WTO 제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은 그 자체로 금지되어 있어 지급된다면 바로 WTO에 제소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외의 보조금은 공여되더라도 제소국이 보조금의 특정성 여부와 자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사건에 대해 향후 채택 예정인 WTO 판결은 FIT와 보조금 관계를 명료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판결은 캐나다 FIT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169)]를 WTO법과 합치도록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170)]

한편 중국의 풍력장비 사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녹색성장 지원정책을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68) WTO(2001a), para. 334에 따라 중국이 WTO 가입 당시 보조금을 포함한 무역관련 모든 국내규범의 WTO 공용어 번역본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한국 등 대부분 회원국들에 해당되지 않는다.

169) 한국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된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지원한다.

170) 이 사건은 FIT가 WTO에서 최초로 제소를 당한 사례인 반면, 과거에는 독일 FIT 프로그램이 유럽재판소에서 보조금 관련 EU법에 따른 '국가 원조(State aid)'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었다. 2001년 유럽재판소 판결 대상이었던 독일 FIT가 캐나다 FIT와 다르게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국산화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Wilke(2011), p. 6, p. 15 참고.

다. 상계관세 사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다른 국가의 보조금에 대해 WTO 제소 이외 상계관세 부과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WTO 분쟁해결 절차는 상계관세 조사에 비해 더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체들은 자국 정부에 WTO제소 대신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171] 그러므로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한 대응사례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 상계관세 사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95~2011년 동안 WTO 회원국들이 개시한 상계관세 조사사례와 실제로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각각 279건과 167건이었다. 미국, EU,

그림 4-5. WTO 회원국 상계관세 조사 · 부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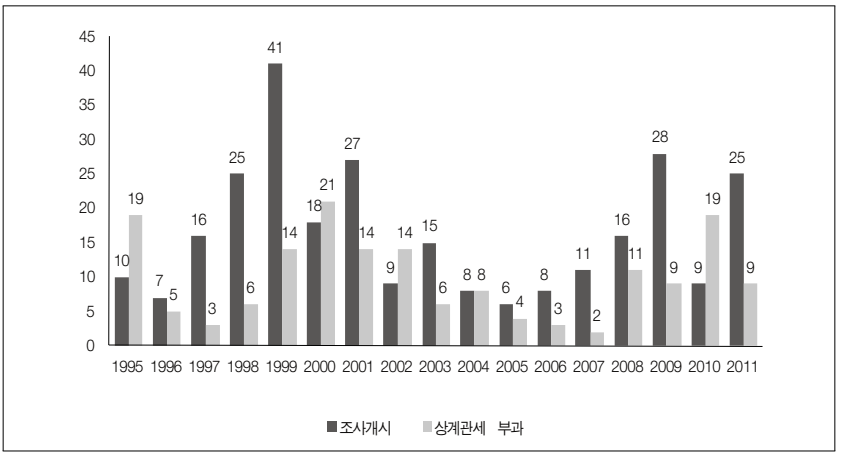

자료: WTO 웹사이트(2012c)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171) Peterson 국제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Gary Clyde Hufbauer와의 면담(2012년 10월 16일, 워싱턴 DC) 내용 발췌.

캐나다 등 선진국의 상계관세 조사 · 조치 활용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조사 · 조치 대상국가에는 인도, 중국 등 개도국뿐만 아니라 EU, 이탈리아, 미국 등 선진국도 포함되어 있었다.[172]

한국은 지금까지 상계관세 조치를 발동한 적이 없는 반면, 다른 국가의 수입규제 조치에 빈번히 당한 편이다. WTO 통계자료[173]에 의하면,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미국, EU, 일본 등은 한국에 대해 총 18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8건의 조치를 부과하였다.[174] 이 중 미국에 의한 조사 및 조치가 각각 9건, 5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국내 상계관세 법령이 WTO 규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미국의 대한국 상계관세 조사사례를 대표적 사례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절과 마찬가지로 본 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녹색성장 보조금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이 발표된 2008년 전후의 기후변화대응 보조금을 의미한다.

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프로그램

미국 월풀(Whirlpool) 사는 2011년 3월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하단냉동고형 냉장고 수입에 대해 대우전자, LG전자, 삼성전자 등 한국업체를 상대로 상계관세 조사개시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상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조사를 하여 최종판정을 내렸는데, 최종 상계관세율을 12.9%(대

172) 구체적으로 WTO 웹사이트(2012c) 참고.

173) WTO 웹사이트(2012c) 참고.

174) 이러한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3위, 조치 건수는 7위에 해당한다.

우전자), 0.3%(LG전자), 2.46%(삼성전자), 2.79%(기타)로 산정하였다.[175] 그러나 보조금 지급 유무를 판정하는 미 상무부와는 별도로, 피해조사를 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문제의 보조금이 미국 산업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176] 이에 따라 미국은 위의 한국업체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한국정부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41개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조사되었다. 이 중 녹색성장 지원과 관련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프로그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에너지소비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를 한 기업체는 해당 투자금액의 10%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177] 미 상무부는 이러한 세액공제를 보조금으로 분류하였으며, 실제로 세금공제를 누린 업체의 수가 제한적이었기에 사실상 특정성(de facto specific)이 있는 보조금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한국업체 중 삼성전자가 세금공제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상계가능한 보조금율을 0.005%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보조금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미 상무부의 관행에 따라 총 보조

175) USDOC(2012).

176) USITC(2012).

177)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금 합계에 상응하는 상계관세율에 포함되지는 않았다.[178)]

2) 녹색기술 R&D 프로그램

위 하단냉동고형 냉장고 사건에서는 한국정부가 지원한 녹색기술 R&D 사업도 고려되었다. 미 상무부는 녹색기술 개발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요소로 간주되며, 특히 2009년부터 실행 중인 5개년계획에 따라 27대 중점기술이 선정되고 이 중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녹색기술 R&D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판정문에 기술하였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무상지원(grant)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리 미 상무부가 문제의 무상지원을 법률상의 특정성 있는 보조금으로 분류하였다는 사실이다. 상계관세 조사 시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주장을 밝혔다. 첫째, 녹색기술 R&D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이 10개 정부기관의 노력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일반적 사회간접자본(new general infrastructure)'을 설립하는 데 있으므로 WTO 보조금협정상 재정적 기여의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27대 중점기술이 녹색성장, 온실가스 배출감축, 재생에너지 활용과 관련된 상상가능한 대부분의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보조금으로 분류될지라도 법률상의 특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첫째 주장에 대해 문제의 프로그램이 고속도로, 학교, 의료시설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적 사회

178) USDOC(2012).

간접자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둘째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법이 보조금 대상을 27대 '녹색기술'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법률상의 특정적 보조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상계관세율의 산정과 관련해서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받은 R&D 보조금 중 냉장고와 관련성이 있는 보조금 금액을 각각 0.005% 미만, 0.13%로 판정하였다.[179]

3) 신재생에너지 R&D 프로그램

신생에너지 R&D 프로그램은 한국산 철강제품(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상계관세 행정재심 때 검토대상이었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거해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관리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 조사,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 · 개발, (3)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4)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 · 홍보 등을 위한 R&D 지원을 제공한다. R&D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연구기관)과 정부가 공유하며, 참여기업의 성격에 따라 정부의 비용부담률이 달라진다. 예컨대 수혜자가 대기업일 경우 정부는 사업비의 1/2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일 경우 3/4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하의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40%를 환급해야 하며, 비성공적 사업일 경우에는 환급 의무가 없다.[180]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조사대상인 한국의 HYSCO 사가 받은 R&D

179) *Ibid.*

180) USDOC(2010).

출연금이 한국 국내법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만 국한되어 있어 법률상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으로 판단하고, HYSCO에 해당되는 보조금율을 0.01%로 산정하였다.[181] 그러나 최종판정에서 다시 계산한 결과, 보조금율이 0.005%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문제의 프로그램이 조사대상기간 이내에 HYSCO 사에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182]

4) 에너지절약펀드 프로그램

에너지절약펀드(ESF: Energy Savings Fund) 프로그램은 에너지관리공단(KEMCO: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시키는 데도 있다. 관련 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가 단독으로 혹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제안서를 KEMCO에 제출하면, KEMCO는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출지급 은행은 제안자의 신용도(creditworthness)를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과거에 미 상무부는 ESF를 정부의 지시로 특정한 기업 · 산업에 주어진 융자금(directed credit)으로 간주하였다.[183] 그러나 2003년 6월 한국의 디램 수입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판정 이후부터 ESF를 아예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ESF가 실제로 대부분의 산업에 속한 많은 기업에 공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실상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184]

---

181) *Ibid.*

182) USDOC(2011b).

183) USDOC(1999b).

5) 각종 전기요금 할인제

일반적으로 전기소비량이 많은 하절기에 전기절약을 목적으로 도입한 자율적 에너지절약조정(VEPSA: Voluntary Electric Power Savings Adjustment)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계약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기소비를 줄이면 전기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이와 같은 VEPSA상의 혜택이 특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185] 또한 전기요금 할인을 제공한 기타 프로그램(Power Factor Adjustment Program 및 Repair Adjustment Program) 역시 마찬가지로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한 바 있다.[186]

한편 각종 전기요금 할인을 제공한 요청전기부하조정 프로그램(RLA: Requested Load Adjustment Program)은 1996년에 232개의 회사에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의 공급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1998년 수혜자의 수가 33개로 감소하였다. 이에 미 상무부는 RLA를 사실상 특정성 있는 보조금으로 보았지만, 조사대상인 POSCO 등 기업이 누렸던 보조금율이 미미한 수준(0.005% 이하)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187]

6) 상계관세 사례 평가 및 시사점

이와 같은 미국의 대한국 상계관세 사례를 통해 녹색성장 보조금을 5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미국의 상계관세 법령 및 관행은 WTO

184) USDOC(2003), USDOC(2012) 참고.

185) USDOC(2004).

186) USDOC(1999a).

187) *Ibid.*

보조금 · 상계관세 규정을 준비하고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모델 중 하나로 고려되었으며, 동시에 보조금 · 상계관세에 대한 WTO 차원의 협상 · 논의 및 분쟁해결 사례 역시 미국의 입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상계관세 관련법은 많은 측면에서 WTO 규범과 유사하다. 또한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 사례 중 대부분이 미국의 사례이다. 따라서 미국의 상계관세 관행은 상대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녹색성장 지원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앞에서 검토한 한국의 녹색성장 지원조치가 모두 보조금으로 간주되었으나, 법률상 혹은 사실상 특정성의 여부 판정에 따라 일부 조치만 상계가능한 보조금으로 판단되었다. 우선 보조금 존재의 판단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중요한 부분인 녹색기술 R&D 지원 자체가 '일반적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판정이다. 즉 보조금협정에서 재정적 기여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적 사회간접자본'은 주로 일반인이 접근가능한 도로, 철도, 학교, 병원 등 사회복지 인프라를 의미하는데,[188]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소위 신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보조금의 상계가능성을 결정하는 특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기업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할인제가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 내려진 만큼, 향후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위한 할인제를 추진해도 통상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RLA 관련 사건에서 초기 232개의 회사에 혜택을 주었다가 나중에 불과 33개의 회사에만 혜택을

188) Wolfrum *et al.* eds.(2008), p. 439 참고.

부여하였던 것은 사실상의 특정성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따라서 보조금은 많은 기업이 누리면 누릴수록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으로 판단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수혜기업들이 하나의 특정 산업 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27대 중점기술에 대한 R&D 보조금이 법률상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R&D 사업이 '녹색기술'이라는 좁은 범위 안에 27대 기술에만 국한된 점에서 기인한다.[189] 따라서 향후 이러한 특정성 관련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등 법적인 문서에서 지원대상 기술의 나열방식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앞으로 녹색기술 개발사업 범위를 지금보다 더욱 확대시키고, 다른 유사한 기술도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기업이 수혜대상이 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앞에서 언급한 신재생에너지 R&D 프로그램과 같이 결국 '친환경에너지'라는 한 산업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190]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추진 시 관련 보조금이 다른 국가에서 특정적이라고 판단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녹색지원 조치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으로 간주되더라도 수혜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경우 상계관세를 피할 수 있다. 혜택의 수준은 보통 보조금 금액이 관련 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규모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큰 규모의 보조금을 매출액이 작은 기업에 지급

189) USDOC(2012), pp. 71-73 참고.

190) Rubini(2012), pp. 548-549 참고.

하면 상계가능한 보조금율도 높아질 것이므로, 보조금 액수나 수혜자를 결정할 때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계관세 조치가 단순히 상계가능한 보조금 존재만으로 부과될 수는 없고, 이 보조금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보조금 지급 당시 해당 보조금이 향후 어떤 국가의 어떤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을지를 사전에 검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향후 녹색지원 조치가 특정적인 보조금이라는 판단을 받지 않도록 산업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보조금을 특정한 기업(군), 산업(군)에 집중적으로 공여하지 말고 특정성 여부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무역중립적인 기준에 의해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소결

산업지원 수단으로 흔히 활용되는 보조금은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가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국내 기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은 아직까지 WTO에 제소된 바가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캐나다, 중국의 보조금이 WTO에 제소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포

함한 모든 WTO 회원국의 녹색성장 보조금도 제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미국이 녹색성장 관련 지원을 받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여러 차례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녹색성장 보조금이 WTO 제소와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의 규제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각종 녹색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WTO 사례와 상계관세 사례를 염두에 두고 WTO 보조금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5장
녹색성장과 기술규제

1. WTO TBT 협정의 개관
2.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
3.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의 주요 쟁점 사항
4. 소결

무역기술장벽은 무역 상대국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준비, 채택 및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조치들을 말한다. 최근 들어 수입관세와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 대신 비관세 장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따라 대표적 비관세 장벽인 무역기술장벽이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비롯하여 EU, 중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이 환경보호를 각 국가의 주요 정책목표로 채택하고 있어 환경보호 관련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91]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TBT 협정의 주요 내용과 녹색성장 관련 국내 기술규제[192]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되어 TBT 위원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정무역현안 및 WTO 분쟁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WTO TBT 협정의 개관

GATT 체제하에서는 기술규정 및 표준에 대해 GATT 1947의 제III조, 제XI조, 제XX조에서 일반적인 내용만이 언급되었으며, 1979년 도쿄 라운드 협상에서 기술무역장벽에 대한 복수간 협정이 채택되었다.[193] 이 협정은 기술규제,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191) 장용준, 서정민, 김민성, 양주영(2011), p. 151.

192) 본 장에서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는 발전 및 산업 부문,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정책 및 조치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193) WTO 웹사이트(2012d).

조약으로 채택 당시 가입국은 32개국에 불과하였다.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라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WTO 협정의 부속서 중의 하나로 TBT 협정이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WTO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효력을 가지는 강제적 협정으로 (1) 중앙, 지방 및 비정부기관에서도 협정의 의무를 강화하고, 임의규정인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2) 기술규정 및 표준의 개념을 제품의 성능에서 생산 및 공정방법으로 확대하며, (3)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종전의 권고수준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선명령 조치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체제로 전환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194)]

TBT 협정문은 총 15개의 조항과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조달 물품과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정의 주요 원칙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술규정은 적용가능한 행정 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문서로 그 준수가 의무적이다. 기술규정은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표준은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규칙, 지침, 상품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특성을 규정한 문서로, 인증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않다. 표준은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

194) 지식경제부 TBT 중앙사무국(2011), pp. 2~3.

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적합성 평가절차는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따른 관련 요구조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를 말한다.

TBT 협정은 불필요한 무역장벽의 방지,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기술규정의 조화 및 동등성, 적합성 평가절차의 상호인정, 투명성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WTO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술규정은 비준수 시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어서는 안 된다.[195] TBT 협정에서는 이러한 정당한 목적으로 국가안보상의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동 ·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등을 제시하며, 위험평가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이용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 관련 처리기술 또는 상품의 의도된 최종용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196] 또한 회원국은 기술규정의 채택을 야기한 상황이나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덜 무역제한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경우 관련 기술규정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197]

적합성 평가절차 역시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어서 안 되며, 부적합이 야기할 위험을 고려하여 수입국에 상품이 적용가능한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일치한다는 적절한 확신을 주기 위해 필요한 이상으로 엄격해서는 안 된다.[198]

---

195) TBT 협정 제2.2조.

196) TBT 협정 제2.2조.

197) TBT 협정 제2.3조.

198) TBT 협정 제5.1.2조.

TBT 협정은 다른 WTO 협정과 유사하게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있어서 회원국은 어떠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자국 원산지의 동종상품 및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상품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199]

한편 각국의 기술규정의 조화를 위해 회원국은 관련 국제표준이 근본적인 기후나 지역적 요소, 근본적인 기술문제 등으로 인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국제 표준을 각국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해야 한다.[200] 적합성 평가절차에 있어서도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이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발간되는 국제지침이나 권고사항을 사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201] 단, 국가안보요건, 기만적 행위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식물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환경보호, 근본적인 기후나 기타 지리적 요소, 근본적인 기술 또는 인프라 문제와 같은 사유로 인해 관련 국제지침이나 권고사항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제외된다.[202]

그러나 국제표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나 각 국가가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이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술조화에 대한 상호보완적 방법으로 동등성(equival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TBT 협정은 다른 회원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회원국간의 기술규정이

199) TBT 협정 제2.1조 및 제5.1.1조.
200) TBT 협정 제2.4조.
201) TBT 협정 제5.4조.
202) TBT 협정 제5.4조.

서로 상이하더라도 다른 회원국의 기술규정을 동등한 것으로 수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3]

또한 협정에서는 다수의 검사 및 인증을 축소시켜 수출자의 비용 및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합성 평가절차의 상호인증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다른 회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자국의 절차와 다를지라도 이러한 절차가 동등한 기술규정이나 표준과의 적합성을 보증할 경우,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른 회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204] 더불어 회원국에게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여타 회원국과 협상을 개시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205]

또 다른 주요 원칙인 투명성과 관련하여 TBT 협정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통보의 의무, 질의처 설립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통보의무와 관련해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가 (1)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기술적 내용이 관련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고, (2)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회원국은 이러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206] 회원국은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절차의 도입 사실을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초기 단계에서 간행물로 공표하고, 도입목적과 사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영향을 받

203) TBT 협정 제2.7조.
204) TBT 협정 제6.1조.
205) TBT 협정 제6.3조.
206) TBT 협정 제2.9조 및 제5.6조.

는 상품을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207] 또한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통보된 규제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고 서면의견 및 논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208] 그러나 안전, 건강, 환경보호, 국가안보와 같은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존재할 경우 관련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사후통보가 가능하다.[209]

이 협정의 부속서 3인 표준의 준비, 채택, 적용에 관한 모범관행규약은 회원국과 표준화기구의 자발적인 표준개발에 관한 원칙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 규약은 WTO 회원국의 영토 내에 있는 표준화 기관의 수락을 위해 개방되어 있으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불필요한 무역의 방지, 관련 국제표준의 활용, 국제표준 준비과정의 참여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2.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한국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2008~12년)을 발표하고 여러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를 도입하였다.[210] 전 부분에 걸쳐 화석연료 기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211]를 추진하였

207) TBT 협정 제2.9.1조 및 제2.9.2조, 제5.6.1조 및 제5.6.2조.

208) TBT 협정 제2.9.4조 및 제5.6.4조.

209) TBT 협정 제2.10조 및 제5.7조.

210) 부록 [부표 2] 참고.

21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표 5-1. 녹색성장 관련 한국의 주요 기술규제 사례			
구분	관련 법	조항	세부 내용
환경 전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이 가능
		제18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가능
에너지 절약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지정된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기자재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제17조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의 지정 등	-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지정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측정 결과 해당 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기전력경고표지를 의무화
		제20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 대기전력 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대기전력 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표시가 가능
		제22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인증	-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해진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기자재가 인증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자재에 인증표시가 가능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 · 소비 문화의 확산	- 녹색제품 사용 · 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해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가 해당 재화의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기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의 시책 수립 · 시행이 가능
		제47조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되,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업체로 하여금 어느 한 기준을 택하여 준수하도록 의무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13조~14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및 표시	-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자나 수입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을 경우 해당 설비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홍보가 가능
	대기환경보존법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 자동차 제작자 및 수입자에게 제작차의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충족하도록 제작할 것을 의무화
		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 선박 소유자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 5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게 하도록 의무화

자료: 관련법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 목표를 부과해 관리하는 제도로, 향후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의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2011), p. 51.

다. 발전 및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공급의 비중과 고효율 기자재 보급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한편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를 위해 저탄소형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녹색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기차 보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고효율 승용차의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 에너지 기준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 및 조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간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대기환경보존법 등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규제로는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환경라벨링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상품 또는 상품의 공정 및 생산 과정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상품의 사용기간 또는 상품의 공정 및 생산 과정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우리나라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기기 · 설비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등의 에너지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보급량이 많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소비량에 따라 소비효율을 1~5등급

으로 분류하고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의 대해서는 생산 ·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의무제도이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제품의 보급을 위해 대상제품이 대기전력 저감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기전력경고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표지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표 5-2. 에너지효율관리제도의 종류 및 인증마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 의무적 신고제도 -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16조,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 2012년 9월 현재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등 35개 제품이 지정 -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경우 자체 측정이 가능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 의무적 신고제도(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표지는 자발적 제도) -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지식경제부 고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 2012년 9월 현재 대기전력저감대상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등 22개 제품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은 19개 제품이 지정 -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측정을 받아야 하나 자체 측정 승인업자는 자체 측정으로 대체 가능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 자발적 인증신청제도 -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및 제22조,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2012년 9월 현재 조도자동차조절조명기구,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LED교통신호등 등 41개 제품이 지정 - 시험설비와 전문인력을 갖추어 지정된 고효율에너지시험기관이 인증을 하고, 인증 절차는 기자재별 제품심사와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로 구성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자료: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인증을 부여해 주는 자발적 제도이다.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13조~16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은 자발적인 신청제도로 인증대상 설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지만,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상황,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나 수입자는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에 설비인증심사를 신청하면 되는데, 인증심사는 일반심사와 설비심사로 이루어진다. 일반심사는 신청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제조 및 생산 능력, 품질유지관리 능력, 사후관리 능력 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설비인증기관에서 실시한다. 일반심사에서 합격한 설비에 한하여 성능검사기관은 설비심사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능검사 결과서를 발행한다. 신청자가 성능검사 결과서를 설비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설비인증기관은 결과서를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요건에 충족한 설비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설비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시 우선적용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표 5-3.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	규제 내용
인증대상	- 태양열설비, 태양광설비, 풍력설비, 지열설비, 연료전지설비, 바이오설비, 기타 설비 중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
인증 절차	① 인증심사 신청: 제조자 및 수입자는 설비인증심사를 신청 ② 일반심사: 설비인증기관은 제조 및 생산, 품질유지 관리,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확인(공장확인) ③ 설비심사: 성능검사기관은 설비심사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하고 성능검사 결과서를 발행 ④ 설비인증서 발급: 설비인증기관은 성능검사 결과서를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비인증을 실시
인증 유효기간	- 3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인증혜택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시 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우선 적용

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고시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3)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우리나라는 2010년 9월 30일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평균 연비)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과 관련된 고시안을 입안 예고하였다. 규제대상은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차이며,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한 가지 기준을 매년 선택할 수 있다.

이 규제는 2015년 국가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목표를 각각 17km/L, 140g/km를 정하고, 자동차 제작업체별 공차중량(차량중량)을 반영한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식을 설정하여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된다. 공차중량 방식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로 (1)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차량점유면적(footprint) 방식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상관성이 우수하여 온실가스 대응 측면이 유리하고, (2)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차량점유면적

이 다양하지 못하며, (3) 차량점유면적 변경 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하여 채택되었다.[212]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은 미국, EU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시내 주행모드와 고속도로 주행모드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모드(combined mode)를 도입하였다.[213]

한편, 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의 그린카, 온실가스 저감 및 연비개선에 효과가 있는 기술 등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

표 5-4.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주요 내용

구분	규제 내용
적용대상	-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총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단, 특수목적을 위한 자동차는 제외)
적용기준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선택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Σ대상자동차 종류별(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기준)]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기준=28.45777-0.007813xm (m: 해당 연도의 차종별 공차중량)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g/km)=140+ax(M-1423.2) * M: 해당 연도의 제작사별 평균 공차중량 a: 소규모 제작업체 0.0484, 그 외 제작업체 0.0588
적용시기	- 제작업체별 판매량을 기준으로 2012년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부터는 100% 적용
측정방법	- CVS-75(도심주행) 모드 측정방법과 고속도로(highway) 모드 측정방법으로 구성된 복합보드(combined mode)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 - CVS-75 모드 및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측정하여 모드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출
초과달성분 및 미달성분	- 초과달성분은 3년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 제작업체간 거래 가능 - 미달성분에 대해서는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 이내 자사의 초과달성분을 이용하거나 다른 제작업체의 초과달성분을 매수하여 상환 가능

자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12) 환경부(2010), p. 2.

213) 환경부(2010), p. 2.

여된다. 또한 제작사별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초과달성분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제작업체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미달성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 상환을 허용하는 신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4) 환경라벨링제도

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ling)은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단계 등 전 과정(life cycle)에 대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품에 부착되는 도안이나 표시를 의미한다.[214] 국내 환경라벨링제도에는 환경표지제도, 환경성적표지제도,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있으며, 모두 자발적인 인증제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215]

환경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서비스 포함)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

214) 김종선(2010), p. 2.

215) 국제표준화기구(ISO)는 환경라벨링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환경라벨링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14020 시리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의 환경표지제도는 Type I, 환경성적표지제도와 탄소성적표지제도는 Type III에 해당된다.

[ISO에 의한 환경라벨링의 명칭 및 해당 규격]

해당 ISO 규격	명칭	특징	내용	국내 제도명
ISO 14024 (Type I)	에코라벨링	제품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 환경성 우수제품 인증	- 제3자 기관에 의한 인증 -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제3자 기관이 심의 후 인증	환경표지 제도
ISO 14021 (Type II)	환경성 자기주장제도	생산자 스스로 제품의 환경성 주장	- 제품의 환경성을 기업 스스로 주장하기 위해 로고 사용	-
ISO 14025 (Type III)	환경정량정보 선언	제품 환경성 정보를 정량화하여 표시	- 환경성 기준, 부적합 판단이 없음. - 제품의 전 과정 환경성을 정량적으로 표시	환경성적 표지제도

자료: 김용국(2010).

그림 5-1. 환경라벨링 인증마크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웹사이트(2013a, 2013b, 2013c).

도는 1992년 4월부터 실행되고 있으며, 환경부에 의해 환경표지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 및 서비스에 한하여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8,789개의 품목이 환경표지인증을 받았다. 인증 신청자는 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 관련 자료,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과 함께 인증을 신청한다.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류검증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신청인은 시험기관에 시험성적서를 의뢰하여 시험 결과에 대한 성적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인증기관은 서류검증, 현장심사 결과, 시험 성적서 등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환경표지를 인증받은 제품은 조달청 입찰심사 시 가산점 적용, 정부포상제도에 추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216]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 인증제품 사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217]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전과정평가[218]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 정보[219]를

21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호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2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웹사이트(2012c).

218)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선정과 작성지침 개발 등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전 과정 평가를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 및 잠재적 환경영향을 평가하

정량화하여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8조에 근거하여 2001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2년 10월 현재 27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220] 인증 신청자는 환경부에서 고시된 해당 제품에 대한 작성지침에 따라 전과정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221] 인증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검사를 하여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심의위원회[222]를 개최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한 후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환경성적표지와 유사하게 전 과정 평가를 통해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하여 제품에 표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 4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8조에 따라 2009년 2월부터 운영 중이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1단계 탄소배출량 인증과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구성되며, 인증 대상 및 절차, 인증 혜택은 [표 5-5]와 같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탄소배출량 인증제품은 603개, 저탄소제품 인증제품은 63개, 인증만료 상품은 38개이다.

는 기법으로 정의한다.

219) 환경성 정보는 자원소모, 지구온난화, 오존층 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및 광화학적 산화물 생성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2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웹사이트(2012a).

221) 기업이나 소비자가 인증을 희망하는 제품에 대해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제안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인증기관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제품별 작성지침을 개발하고 환경부가 이를 고시한다. 작성지침은 모든 대상제품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기준과 대상제품별 특성에 따라 개발된 개별기준으로 이루어진다.

222) 인증심의의원회는 전과정평가 전문가, 환경라벨링 전문가, 제품 전문가로 구성된다.

표 5-5.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	규제 내용
인증대상	-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해당
인증종류	- 탄소배출량 인증: 인증신청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인증 부여 - 저탄소제품 인증: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탄소배출량이 동종제품의 평균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에 인증 부여
인증절차	① 인증신청 -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일반제품에 대한 작성지침(작성지침 1)'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탄소성적표지 인증 신청 - 에너지 사용 제품은 '에너지사용 제품에 대한 작성지침(작성지침 2)과 해당 제품별 '에너지사용 제품에 대한 사용 시나리오 작성지침(작성지침 3)'을 토대로 탄소성적표지 결과를 산출하여 신청 ※ 해당 제품에 대한 '작성지침 3'이 개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인증기관에 '대상제품 선정'을 신청 인증기관은 신청된 제품에 대해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품목에 대해 작업반을 구성하여 작성지침(안)을 개발하여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음. ② 인증기관은 업무규정과 인증지침에 따라 인증심사 및 인증심의 진행 ③ 인증심사 및 인증심의 결과 탄소배출량 인증 또는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사후관리
인증유효기간	3년(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인증혜택	- 인증제품의 홍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관련 포상 추천 - 정부주도 구매활성화 대상 제품에 '저탄소제품 인증'제품 포함(예정)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웹사이트(2012b)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환경라벨링제도 중 2012년에 도입 2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의 환경표지는 2011년에 국제환경라벨링 네트워크총회(GEN: Global Ecolabelling Network)[223]에서 국제통합환경라벨링시스템(GENICES: GEN-International Coordinated Ecolabelling System)[224] 인증서를 획득하면서 국제적으로 그 신뢰성을

223) 비영리를 목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환경마크 개발, 개선 및 보급을 위해 1994년에 설립된 GEN은 에코 라벨링(Type I)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나 조직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2012년 10월 현재 회원 수는 27개이다.

224) GENICES는 GEN 회원기관 중 국제기준(ISO 14024)에 부합된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에 대하여 심사 및 인증하는 제도로 GEN 총회에서 2004년부터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인증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국가간 공통기준 개발을 통해 무역장벽 요인을 해소

인정받았다. GENICES 인증서 획득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증기관간에 상호 동등 수준 이상의 인증시스템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고,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국제공조와 함께 공통기준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225]

또한 일본, 중국, 캐나다, 미국 등 9개 국가의 환경마크와 우리나라의 환경표지 간에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또는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MRA는 상대국가에서 실시한 규제품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결과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간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226] MRA 협정 체결에 따

그림 5-2. 환경표지의 MRA 체결 현황

주: ( ) 안의 연도는 MRA 체결 연도를 뜻함.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2a).

하고, 회원국간 에코라벨링제도의 공유 및 협력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2011), p. 3.

225) 환경부(2011), p. 2.

226) 일반적으로 MRA 추진 단계는 1단계 양국 제도에 대한 상호인정, 2단계 시험방법 및 시험기관의 상호인정, 3단계 공통기준에 의한 상호인정, 4단계 국가간 환경라벨링 통합제도로 구별되며, 환경표지에 관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MRA는 2단계에 해당된다.

라 수출자는 해외 환경표지마크 부착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국내 시험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중복적인 시험 방지, 불필요한 규제비용 절감, 교역을 위한 시장접근의 용이성, 소비자 마케팅 효과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3.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의 주요 쟁점 사항

가. 한국의 WTO 기술규제 통보 현황

앞서 언급하였듯이 WTO 회원국은 TBT 협정 제2.9조 및 제5.6조에 따라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1)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기술적 내용이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고, (2)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림 5-3. 환경 관련 기술규제 통보문 제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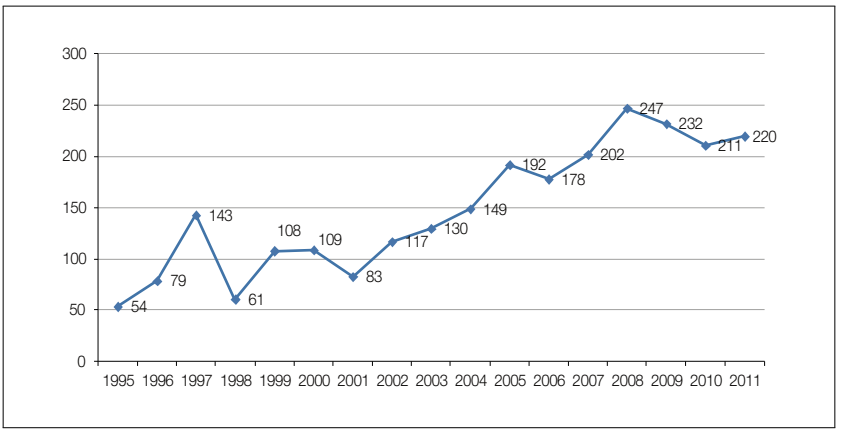

자료: WTO TBT-IMS.

1995~2011년 동안[227] 환경 관련 통보문[228]은 2,515건으로 전체 기술규제 통보문의 17.1%를 차지한다. 그러나 국제표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무역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므로, 실제 통보되지 않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고려한다면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5~2011년 동안 미국이 279건으로 환경 관련 통보문을 가장 많이 제출하였으며, EU가 243건, 중국이 234건으로 각각 뒤를 잇고 있다. 미국, EU 및 중국의 통보문 건수 비중은 전체 환경 관련 통보문의 30.8%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 관련 통보된 기술규제로는 특정 물질의 사용량 제한 및 금지, 제품의 재활용품 비율, 배기가스 배출량, 에너지 효율성, 재활용 가능성 및 분해가능성, 라벨링 및 포장 요건, 제품 규격 및 기술 명세, 검사, 인증 및 기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있다.[229]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통보문은 24건으로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교역국가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2006년 이후 통보된 건수가 18건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가 비전의 축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한 만큼, 이러한 환경 관련 통보문 건수는 향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관

---

227) 1998년 통보문은 WTO TB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IMS)에서 집계되지 않아 WTO TBT 위원회의 Fourth Annual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Agreement에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보문 건수로 대체되었다.

228) WTO의 TBT-IMS를 이용하여 통보문 중 추가통보(addendum), 수정통보(corrigendum), 부록(supplement)을 제외한 통보문 중 환경 관련 통보문을 집계하기 위해 notification keyword에서 ‘biofuels’, ‘climate change’, ‘emission’, ‘energy efficiency’, ‘environmental protection’, ‘hazardous substances’, ‘pesticides’, ‘toxic substances’, ‘waste’를 지정하여 조사하였다.

229) WTO(2010a), p. 9.

련 통보문 중 녹색성장과 관련된 통보문은 10건으로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자동차의 배출기준 및 에너지 효율, 전기 · 전자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표 5-6.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통보문 제출 현황

구분	통보 연도	기술규제	해당제품	주요 내용
에너지 절약	2011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 표시 등에 관한 규정안	자동차용 타이어	-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적용대상, 시험절차 및 측정방법, 소비효율 등급 및 기준, 시험기관 지정 및 의무 등
	2010	에너지효율 표시기준 규정	일부 가전제품	- 1992년 이후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에너지효율 표시기준 규정에 따라 각 모델별로 에너지 효율 등급표시를 의무화하고 13개 전기제품의 모든 신규모델에 대한 에너지효율 요건 규정
	2008	e-Stanby 프로그램 적용 규제	텔레비전, 컴퓨터 등	- 제품의 Stanby power 사용에 대한 보고서 및 의무 표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적용범위 확대
	2008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기준에 대한 규정	외부전원 어댑터, 배터리 충전기	- 에너지효율 라벨링 및 기준에 대한 규정에 따라 최소 에너지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범위를 21개 품목에서 외부전원 어댑터와 배터리 충전기로 확대
	2005	승용차의 에너지 효율성 및 분류 라벨링과 관련한 규제 개정안	승용차	- 주어진 역년(曆年) 동안 승용차 1,000단위 이상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규제로 평균연료효율성이 1,500cc 자동차의 경우 12.4km/l를, 1,5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9.6km/l를 충족하도록 의무화
온실가스 감축	20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자동차	- 디젤 자동차, 대형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기준 강화
	2010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자동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발효하게 될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규정
	2007	대기오염방지법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 자동차 배출량 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기술규정 제공 및 자동차 인증시스템 개선
	200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 대기관리권역 안의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하는 등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관리제도 강화
	2001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자동차	- 가솔린 차량, 디젤 트럭, LPG 차량 등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규정

자료: WTO TBT-IMS.

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특정무역현안 사례

WTO 회원국은 TBT 위원회에 통보된 기술규제와 통보되지 않았으나 현재 시행 중인 기술규제 중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회원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TBT 위원회 정례회의의 의제로 상정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를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이라고 한다. TBT 협정에 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제기된 STC를 활용할 수 있다.

1995~2011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에 대해 STC로 제기된 건수는 26건이다.[230] 이 중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에 대해 STC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자동차와 관련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평균연료효율기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과 관련된 박막태양전지 모듈시험 및 인증기준 4건이다. 이 중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과 평균연료효율기준은 각각 2002년과 2004년에 제기되어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박막태양전지 모듈시험 및 인증기준에 관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게 제기된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최근 해외 다수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탄소라벨링에 대한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30) WTO TBT-IMS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1995~2011년 동안 WTO TBT 위원회에 문제가 제기된 STC 건수는 총 330건으로 EU가 66건으로 가장 높으며, 중국 41건, 미국 37건에 이어 우리나라는 네 번째로 높다.

1) 한국의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국과 EU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우리나라의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2010년 제3차 WTO TBT 위원회의 STC 의제로 상정하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우려사항을 전달하였다.[231)]

미국은 이 제도가 차량무게를 반영한 기준식을 설정하여 국내 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량무게가 무거운 해외 대형차 제조업체에 불리하게 설계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2010년 10월 제도를 공표한 이후 1년 만에 규제를 실행할 경우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제도 이행을 위해 준비할 기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도 유사한 제도를 2012년부터 실행할 예정이지만, 3년 전에 규제 공표를 하였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부연 설명하였다.[232)]

EU는 이 제도의 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이 제도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해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에 2배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EU의 추정 결과를 언급하며 제작사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233)] 또한 EU가 자동차 온

---

231) 이 사례는 WTO(2011a), pp. 12-14를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하였다.

232) WTO(2011a), p. 13.

233) EU가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EU Comments on TBT Notification G/TBT/NIKOR/296)에서 이 규제안이 채택될 경우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비현실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또는 에너지 효율 개선)이 부과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 동 규제안을 따를 경우 EU 자동차 제조업체는 2009~15년 동안 평균 22.5%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을 적용받는데, 이 수치는 EU 자동차 제조업체가 한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수를 감축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EU 자동차 제조업체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평균 온

실가스 배출량 제도를 개발하였을 당시 국내 및 해외 자동차 제작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새로운 규제의 이행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EU가 개별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예외를 허용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소규모 제작자에 대한 예외사항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234)]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 규제가 미국과 EU의 제도를 참조하여 만들어졌으며, EU나 미국에 비해 훨씬 덜 제한적이라고 반박하였다. 예를 들면 이 규제의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기준은 140g/km로, 2006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70g/km인 자동차 제작업체는 2012~15년 동안 140g/km로 감소시키면 된다. 그러나 EU는 2006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기준을 150g/km으로 설정하고 2015년까지 130g/km로 감축시키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EU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한국의 규제를 충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하였다.[235)]

제작사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있어 해외 자동차 제작업체에 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규제 도입 당시 종합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영향평가 결과 해외 제작사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특정 자동차 제작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기업 기밀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규제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과 관련해서는 2009년 7월에 국내 및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 규제안에

실가스 배출량 감축률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이는 TBT 협정 제2.1조의 내국민대우에 위배됨을 설명하였다.

234) WTO(2011a), pp. 12-13.

235) *Ibid.*, p. 13.

대해 공지하였다고 답변하였다.[236]

이후 한국은 EU와 미국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소규모 제작업체의 인정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며 이 사안에 대해 회원국간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09년 국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제작업체별 기준을 설정하고, 501~4,500대 이하인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19%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237]

본 사례의 핵심 쟁점 사항은 국내 자동차업체와 해외 자동차업체 간 차별적인 대우와 규제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준비기간의 부여였다. 현재 이 조치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향후 논쟁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국의 클로브 담배(clove cigarettes)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238]

미국의 클로브 담배 사례에서 상소기관은 TBT 협정 제2.1조에 의한 내국민대우원칙의 위반은 관련 조치가 (1) 기술규정에 해당되며, (2)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이 동종상품이어야 하고, (3) 동종의 국내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한 경우에 성립된다고 보았다.[239] 상소기관은 동종상품과 불리한 대우에 대한 해석에 있어 TBT 협정의 서문, 기술

236) WTO(2011a), p. 14.

237)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참고.

238) 미국은 청소년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클로버 담배를 포함하여 향이 첨가된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였는데, 판매 금지된 향담배 중 미국에서 생산되는 멘솔 담배(menthol cigarettes)가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클로브 담배 최대 생산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이 조치가 GATT 제I조 1항 및 제III조 4항, TBT 협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위배됨을 주장하며 2010년 6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239) WTO Appellate Body Report(2012a), paras. 86-87.

규정의 정의, GATT 제III조 4항과의 관련성, TBT 협정에서는 GATT 제XX조와 유사한 예외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다.[240)]

특히 불리한 대우에 대해서 상소기관은 기술규제가 수입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이 아닌 경우 동종의 국내 상품그룹에 비해 수입 상품그룹의 경쟁기회에 대한 유해한 영향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TBT 협정 제2.1조의 위반이 될 수 없으며, 패널은 추가적으로 이러한 유해한 영향이 정당한 규제적 구분에 의해 초래된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다.[241)] 또한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 패널은 문제된 기술규정의 양태, 설계, 외형상 구조, 운영 및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특히 그 기술규정이 동등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242)]

한편 TBT 협정 제2.12조는 수출국이 수입국의 요건에 적응하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기술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 명시하지는 않는다. TBT 위원회는 이러한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해석에서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비효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normally) 6개월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2001년 도하각료 결정을 권고하였다.[243)] 미국의 클로브 담배 사건에 상소기관은 이러한 도하각료 결정의 제5.2항이 TBT 협정 제2.12조의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결정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240) *Ibid.*, para. 88.

241) 김호철, 권순철(2012), p. 131.

242) 김호철, 권순철(2012), p. 131.

243) WTO(2002a), p. 30.

협약 제31(3)(a)조에 의해 협정국간 후속합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244] 즉 상소기관은 이 사건에서 TBT 협정 제2.12조가 일반적으로 수출국의 생산자가 수입국의 기술규제 요건에 상품이나 생산방법을 적응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국이 규제 공표 3개월 후에 제도를 이행한 것은 TBT 협정 제2.12조의 위반이라고 평결하였다.[245]

미국의 클로브 담배 사건은 TBT 협정 제2.1조에 의한 내국민대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기존의 GATT 제III조 4항에 의한 판례와 달리 TBT 협정 서문에 언급되고 있는 목적들을 고려하여 동종상품과 불리한 대우의 개념이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BT 협정 제2.1조의 불리한 대우 분석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상소기관 판정은 사실상의 차별에 대해 어떠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였다.[246] 또한 수입에 의한 유해한 영향, 정당한 규제적 구분, 동등성 요건 등 다소 생소한 용어들을 핵심개념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차별의 효과뿐만 아니라 차별의 의도도 법적 기준으로 일정 부분 포함시켰다.[247] 한편 TBT 협정 제2.12조와 관련하여 상소기관의 판결은 합리적인 시간 간격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 평가에 있어, 수입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이 아니라면 동종의 국내 자동차그룹에 비해 수입 자동차그룹의 경쟁기회에 대해 유해한 영향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고, 유해한

244) WTO Appellate Body Report(2012a), para. 268.

245) *Ibid.*, paras. 270-275, 297.

246) 김호철, 권순철(2012), p. 132.

247) 김호철, 권순철(2012), p. 132.

영향이 존재하더라도 정당한 규제적 구분에 의해 초래된 것인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시간 간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1년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논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 한국의 박막태양전지 모듈 시험 및 인증기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설비 중 하나인 박막태양전지 모듈에 대해 박막태양전지에 관한 국제표준인 IEC 61646을 기반으로 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 세부기준 박막태양광 모듈 NR PV 102:2011'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며, 현재 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 모듈에 한해서만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248)]

미국과 EU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의 박막태양전지 모듈 시험 및 인증기준에 대해 STC로 제기하고, 인증대상이 아닌 비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인증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249)]

미국은 한국의 박막태양전지 표준인 KS 61646이 IEC 61646을 따르고 있다고는 하나, IEC 61646 중 기타 종류를 제외한 실리콘계(s-Si: amorphous Silicon)에서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상업적으로 인정받으며 부상하고 있는 CdTe(Cadmium Telluride), CIGS(Copper Indium Gallium Selenide)와 같은 기타 선도적인 비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가 한국에서 인증받지 못하게 되어 한국시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248)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12b), pp. 48~49.

249) 이 사례와 관련하여 WTO(2010b), pp. 9-10; WTO(2011a), pp. 60-61; WTO(2011b), pp. 48-49; WTO(2011c), pp. 47-49; WTO(2012a), pp. 23-24; WTO(2012b), p. 23; WTO(2012c), pp. 26-28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또한 미국은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비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 사용의 위험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태양전지의 카드뮴 잔유량은 규제수준과 한국시장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배터리의 카드뮴 양보다 낮은 수준임을 설명하였다.[250] 즉 정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카드뮴을 보유하고 있는 박막태양전지를 환경보호와 안전성을 이유로 KS 61646 기준에서 제외한 현 제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EU는 한국정부가 CIGS 태양전지 분야에 투자 및 R&D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한국정부의 주장과 달리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 제조업체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해외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금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51] 또한 이 규제가 자발적 인증제도라 하지만, a-Si 박막태양전지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태양전지에 대한 시험 및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비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 제조자는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얻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경쟁기술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 규제가 의무가 아닌 자발적 인증제도로 인증 없이도 한국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증에서 제외된 태양전지 모듈은 상품생산 과정이나 상품 자체에 카드뮴과 같은 독성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인바, 현재 진행 중인 환경 및 안정성 평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라 관련 제품 인증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한국정부의 CIGS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투자 및 연구는 카드

250) WTO(2011a), pp. 61-62; WTO(2011b), p. 48; WTO(2012a), p. 23.
251) WTO(2011c), p. 47.

뮴 물질이 없는 CIGS 개발로 현재의 CIGS 태양전지 모듈과는 다른 제품임을 설명하였다.[252)]

2012년 5월 논의의 핵심 사항이었던 박막태양전지 모듈의 환경유해성에 관한 연구가 종료됨에 따라, 이 사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연구결과 CdTe 모듈에서 국내 환경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환경유해성이 입증되었다.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과 미국 EPA Method 1311과 EU의 EN 12457 방법이 모두 사용되었으며, 일본 분석기관인 SIMAZU에 의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253)]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환경유해성이 나타난 CdTe의 경우 국내 인증이 불가함을 전달하고, 카드뮴 함유량이 낮은 CIGS 모듈의 경우 향후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인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였다.[254)]

이 사안의 쟁점 사항은 불필요한 무역장벽, 국제표준과의 부조화, 합법성 및 근거 요구 등이었다. 박막태양전지 모듈 시험 및 인증기준의 TBT 협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에 앞서, 이 규제가 기술규정에 해당되는지 표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규제가 기술규정일 경우 TBT 협정 제2조의 적용을 받으며, 표준일 경우 TBT 협정 부속서 3의 표준에 관한 모범관행규약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박막태양전지 모듈의 시험 및 인증기준이 자발적인 인증제도로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시장판매가 가능하므로 표준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252) WTO(2011c), p. 47.

253) WTO(2012c), pp. 26-27.

254) WTO(2011c), p. 27.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미국의 참치 및 참치제품 II 사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255] 미국의 참치 및 참치제품 II 사례에서 패널은 돌고래 안전(dolphin safe) 라벨링 요건이 TBT 협정 부록 1.1에 의해 기술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를 판단할 때 (1) 관련 조치가 식별가능한(identifiable) 상품 또는 상품군에 적용되며, (2) 관련 조치가 상품 또는 PPMs에 적용되는 라벨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3) 라벨링 요건의 준수가 강제적인가를 고려하여 미국의 이 조치가 기술규정에 해당된다고 평결하였다.[256] 그러나 미국은 패널이 앞서 기술한 세 가지 요소 중 강제성에 대한 평결에 대해 상소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였다.[257] 미국은 돌고래 안전 라벨링 요건이 생산자가 라벨부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돌고래 안전 라벨이 없어도 시장에서 제품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 이러한 라벨링 요건의 준수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기술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258] 그러나 상소기관은 특정한 라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는 사실 그 자체가 TBT 협정 부속서 1.1의 맥락에서 해당 조치가 기술규정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았다.[259] 따라서 박막태양전지 모듈 시험 및 인증 관련 규제가

255) 미국은 돌고래보호 소비자정보법(Dolphin Protection Consumer Information Act) 및 돌고래 안전 라벨링 기준(dolphin-safe labeling standards)을 도입하여 참치 어획과 관련된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서 돌고래 안전(dolphin safe)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멕시코는 이러한 미국의 돌고래 안전 라벨링 요건이 멕시코 어선들이 주로 조업하는 동태평양(ETP) 수역에서 어획되는 참치 제품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이 조치가 GATT 제I조 및 제III조, TBT 협정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위배됨을 주장하며 2009년 3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256) WTO Appellate Body Report(2012b), para. 179.

257) *Ibid.*, para. 179.

258) *Ibid.*, para. 196.

259) *Ibid.*, para. 198.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표준에 해당된다는 해석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한편 박막태양전지 모듈 및 인증기준 관련 규제가 기술규정에 해당된다면 TBT 협정의 제2.2조에 의한 불필요한 무역장벽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미국의 참치 및 참치제품 II 사례에서 상소기관은 TBT 협정 제2.2조의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에 대한 해석에 있어 (1) 합리적인 목적에 대한 해당 규제의 기여 정도, (2) 해당 조치의 무역제한 여부, (3) 규제를 통해 추구되는 목적의 비준수 시 발생하는 결과의 중요성과 위험의 성격 등의 요소를 평가하였다. 또한 상소기관은 제안된 대안이 덜 무역제한적이고, 비준수 시 야기되는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 달성에 동일한 기여를 하고,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 조치와 가능한 대안의 비교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260)]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상소기관은 제소국은 당면 조치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제소국은 미준수 시 야기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가 정당한 목적 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와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제소국은 덜 무역제한적인 가능한 대안이 정당한 목적의 수행에 동등한 기여를 하고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피소국은 해당 조치가 정당한 목적의 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 및 논거를 제시하거나, 제소국이 제시한 합리적인 대안 조치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덜 무역제한적이거나, 정당

260) *Ibid.*, para. 322.

한 목적의 수행에 동등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261)]

미국의 참치 및 참치제품 II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박막태양전지 모듈 시험 및 인증기준에 대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조치가 기술규정에 해당되는지 표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박막태양전지 모듈 시험 및 인증제도가 기술규정에 해당될 경우 TBT 협정 제2.2조의 위반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 조치가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미국과 EU가 제시한 대안인 비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 모듈이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덜 무역제한적이거나, 정당한 목적의 수행에 동등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최근 종료된 박막태양전지 모듈의 환경유해성에 관한 연구에서 CdTe 태양전지 모듈의 환경유해성을 입증한 바 있다.

3) 프랑스의 환경보존기본법에 의한 탄소라벨링제도

프랑스는 2010년 6월 탄소라벨링을 포함한 '2010-788, the National Commitment for the Environment(Grenelle II)' 환경법령을 채택하였다. Grenelle II은 프랑스 환경보전 기본법으로 프랑스의 환경관리체제 전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288조에 의하면 제품 및 그 포장재에 대한 탄소배출량 정보(탄소라벨링), 제품 전 과정에 대한 자원소비 및 제품 환경영향 정보(환경라벨링),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정보(에너지라벨링)를 주요 내용으로 라벨링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262)] 이 법은 2011년

261) *Ibid.*, para. 323.

262)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12a), p. 41.

7월 1일부터 최소 1년간의 시범평가기간 적용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와 우리나라는 2011년에 프랑스의 Grenelle II에 근거한 탄소라벨링제도를 STC 의제로 상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였다.[263]

아르헨티나는 프랑스 정부가 이 규제안을 WTO TBT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아 공포 전에 회원국에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는 TBT 협정의 투명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규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유사한 제품간 경쟁조건을 달리하여 프랑스 국내제품에 비해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수입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시범평가 이후 이행계획, 계산방법, 이 제도가 공산품 및 농산품 모두에 적용되는지 여부, 현재 개발단계 중인 EU 차원의 탄소라벨링제도와의 양립성, TBT 협정 제12조에 따른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특별대우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264] 인도, 남아공화국, 우루과이, 쿠바 역시 아르헨티나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프랑스의 이러한 탄소라베링제도가 특히 개도국의 대EU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EU의 규제영향평가 실시 여부, 개도국 특혜대우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265]

우리나라도 탄소라벨링을 의무화할 경우 수출자와 제조자 모두에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므로 EU 측에 의무화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전과정평가가 운송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방출량도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운송거리가 먼 수출국가에는 불리하게 적용될

263) WTO(2011c), pp. 13-14; WTO(2012a), pp. 55-56; WTO(2012b), pp. 56-57; WTO (2012c), pp. 36-37.

264) WTO(2011c), pp. 13-14; WTO(2012a), p. 55; WTO(2012b), p. 56; WTO(2012c), p. 36.

265) WTO(2012c), p. 37.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장거리 운송으로 인해 프랑스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수입제품에 비해 덜 친환경적인 프랑스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266]

EU는 통보의무에 대해서 상품과 관련된 Grenelle II 조항에서 아직 구체적인 실행 조치가 정해지지 않아 이 규제가 무역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향후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포함한 이행 조치가 구체화되면 통보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Grenelle II 초안에서는 향후 강제적인 탄소라벨링제도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본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어 당분간 프랑스에서도 탄소라벨링제도는 자발적인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267]

EU는 Grenelle II 228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방법론과 관련하여 아직 어떠한 사안도 정해진 바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회사의 국적, 규모, 생산방식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168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2013년 초로 예상되는바, 시범사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였다.[268]

이 사례의 핵심 쟁점 사항은 전과정평가에 있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

266) *Ibid.*, p. 13.

267) WTO(2011c), p. 14; WTO(2012a), pp. 55-56; WTO(2012b), pp. 56-57; WTO (2012c), p. 37.

268) WTO(2011c), p. 14; WTO(2012a), pp. 55-56; WTO(2012b), pp. 56-57; WTO (2012c), p. 37.

수입상품과 국내상품 간의 차별적인 대우, 개도국에 대한 차별 및 특별대우, 투명성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에 앞서 상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NPR PPMs에 근거한 탄소라벨링제도가 TBT 협정의 규율대상인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BT 협정은 기술규정의 정의에 대한 첫 번째 문장에서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product characteristics or their related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에 대한 문서로....'라고 정의하여 상품의 특성과 관련된 PPMs만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에서는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as they apply to a product, process or production method) 용어, 기호, 포장 또는 상표부착 요건...'으로 '관련된(related)'이라는 용어가 생략되어 있다.[269] 표준에 대한 정의 역시 첫 번째 문장에서 상품의 특성과 '관련된 PPMs'이라고 표기하였으나, 두 번째 문장에서는 '관련된'이 생략되어 있다.[270] 이로 인해 NPR PPMs의 TBT 협정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었으나, TBT 협정상의 정의에 대한 다수의 해석을 따르면 제품과 관련된 PPMs만이 TBT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WTO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견해라 보고 있다.[271] 그러

269) Document which lays down product characteristics or their related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including the applicable administrative provisions, with which compliance is mandatory. It may also include or deal exclusively with terminology, symbols, packaging,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 as they apply to a product, process or production method. TBT 협정 부속서 1.

270) Document approved by a recognized body, that provides, for common and repeated use, rules, guidelines or characteristics for products or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with which compliance is not mandatory. It may also include or deal exclusively with terminology, symbols, packaging,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 as they apply to a product, process or production method. TBT 협정 부속서 1.

나 WTO 회원국들이 채택하는 기후변화 조치의 상당 부분이 NPR PPMs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향후 TBT 협정의 개정에 대한 과제로서 이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272] 실제로 NPR PPMs이 TBT 협정의 규율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5~2011년 동안 NPR PPMs과 관련되어 제기된 STC는 총 42건으로 전체 STC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2008년 이후 제기된 건수가 19건이었다. 이는 최근 들어 WTO TBT 내에서 NPR PPMs에 대한 논의가 증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273]

NPR PPMs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라벨링제도는 TBT 협정의 규율 대상은 아니지만, WTO 회원국이 각국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탄소라벨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GATT 제I조 1항의 최혜국대우 및 제III조 4항의 내국민대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에 의한 규제조치는 GATT의 적용 대상이며, 규제를 의무화할 경우 탄소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수입제품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라벨링제도가 정부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정부가 라벨을 부착한 상품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거나 라벨을 부착한 동종상품과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동종상품과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GATT 제I조 1항 및 제III조 4항에 위배될 수 있다.[274] 따라서 탄소라벨링제도는 민간기관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71) 이소영(2011), p. 190; 이로리(2011), pp. 80~81; Chang(1997), p. 147.

272) 이로리(2011), p. 81.

273) WTO TBT-IMS 이용.

274) Chang(1997), pp. 151-154.

그러나 탄소라벨링제도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실행되더라도 정부의 개입이 있을 경우 GATT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민간에 의해 운용이 되지만, 정부가 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방식으로 혜택을 부여하거나 탄소라벨링을 이행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경우 이는 GATT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이행에 따른 정부의 혜택 부여에 대한 판단은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275)]

따라서 NPR PPMs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라벨링 규제가 GATT의 제I조 1항 및 제III조 4항의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자발적인 형태로 유지하고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최소화하여 비정부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녹색성장 관련 WTO TBT 분쟁사례

2012년 8월 기준으로 TBT 관련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총 45건으로 이중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례는 미국의 가솔린 규정에 대해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이 제소한 2건[276)]이다.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미국의 가솔린 규정이 GATT 제I조 최혜국대우 및 제III조 내국민대우에 위배되고, 제XX조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TBT 협정 제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TBT 협정 제2조와 관련해서 제소국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가솔린 규정이 (1) 기술규정에 해당

275) *Ibid.*, p. 155.

276) United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베네수엘라 제소사건(DS2, 1995. 1. 24) 및 브라질 제소사건(DS4, 1995. 4. 10).

되는지, (2) 제2.1조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에 위배되는지, (3) 제2.2조를 위반하여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였다.

앞서 제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패널은 이 규제의 기준치 설정 방식이 GATT 협정상의 내국민대우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예외조항인 제XX조의 (b), (d) 및 (g)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평결하였다.[277] 그러나 상소기관은 패널의 평결과 달리 이 규제의 차별적 측면이 GATT 제XX조 (g)에는 부합되지만, GATT 제XX조 전문의 부당한 차별에 해당되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즉 미국이 (1) 제소국 정부와의 협력방안 등을 포함하여 대안을 충분히 모색하지 않았으며, (2) 가솔린 기준 설정방법의 차별적 요소로 인해 외국기업이 부담해야 할 할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상소기관은 기준 설정방법의 차별적 요소가 GATT 제III조의 위배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며 우연이거나 회피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GATT 제XX조 전문상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및 '국제무역에서의 위장된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다.[278]

이 사건에서 패널은 내국민대우의 위반 여부에 대해 GATT 제III조에 따라 평결하였기 때문에 제소국이 제기한 TBT 협정 제2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는 TBT 협정 제2조가 GATT 제III조와 같이 내국민대우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각종 기술규제에 대해 적용가능한 WTO 법이 TBT 협정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기술규제와 관련된 GATT 등 여타 WTO 규정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명백

277) 제3장 2절 (다) 참고.

278) 이호생(1997), p. 49.

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외국 업체들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규정은 미국의 가솔린 사례와 같이 TBT 협정 이외에 GATT 제III조의 내국민대우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특정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외국산 상품의 수입 · 판매 금지는 수출입 거래에 대한 수량제한을 일반적으로 금하고 있는 GATT 제XI조와도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TBT 협정은 물론 GATT 등의 관련 규정마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TBT 협정의 주요 원칙과 녹색성장 관련 국내 주요 기술규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녹색성장 관련 국내 기술규제 중 TBT 협정에 반하여 운영되는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제기된 STC 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또한 STC로 제기된 우리나라의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태양박막전지 모듈 시험 및 인증에 대한 사례를 통해 TBT 협정과의 조화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한편 우리나라에 제기된 사안은 아니지만 NPR PPMs에 근거한 탄소라벨링에 관한 STC 사례에서는 NPR PPMs에 근거한 기술규제의 TBT 협정 및 GATT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녹색성장 관련 우리나라의 기술규제가 WTO에 피소된 사

례는 없으나, 미국의 가솔린 사건은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TBT 협정은 물론 GATT 등의 관련 WTO 규정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6장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체제간의 조화

1. 다자무역체제의 녹색화 방안
2. 기후변화체제에서 다자무역규범 준수 강화
3. 소결

제3~5장에서는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 간의 관계를 국내차원의 시장개방, 산업지원, 기술규제 등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 간의 조화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양 다자체계간에는 엄밀한 법률적 의미에서의 '충돌'이 존재하지 않아 보이지만,[279] 앞에서 보았듯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각종 국내조치가 무역을 왜곡하여 WTO 규범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양 체제간 일종의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국내조치의 WTO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5장에서 접근한 방식대로 한국을 비롯한 각 국가가 국내차원에서 각종 조치를 WTO 규범과 양립시키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다른 접근방식은 상호간에 분명한 '충돌'이 없더라도 WTO 체제와 기후변화체제가 보다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들의 공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양 체제가 더욱 가까워지면 기후변화조약을 이행하는 국내조치에 의한 WTO 규범 위반의 여지가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WTO와 UNFCCC/교토의정서 간의 조화를 위해 다자무역체제를 녹색화하는 방안 및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각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WTO 녹색화 방안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한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과 환경 관련 협상과 논의를 중심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다자무역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두 번째 접근으로는 우리나라의

279) 예컨대 Vranes(2009), p. 374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떠한 특정 국내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도 명백히 허용하지도 않으므로 교토의정서와 WTO 규범 간에 충돌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WTO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를 녹색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체계에서 다자무역규범이 더욱 잘 지켜지기 위한 다자간 논의를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1. 다자무역체제의 녹색화 방안

가. 무역과 환경 협상을 통한 녹색화

1) WTO에서의 논의 동향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2001년 출범된 DDA 다자무역협상에서 환경 분야는 (1) WTO 규범과 MEA상의 특정무역의무와의 관계, (2) MEA 사무국들과 WTO 관련 위원회 간 정기적 정보교환 절차 및 옵서버 자격부여, (3) 환경 관련 상품 ·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의 세 가지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협상의제와 관련해서 현재 발효 중인 250개 이상의 MEA 중 약 20개는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특정 동·식물에 대한 무역거래 금지, 각종 수입제한 등)을 두고 있다.[280] EU, 스위스 등의 회원국은 다자무역규범과 MEA 간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 법체계간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과 호주, 개도국들은 현재까지 양 규범간 충돌사례가 없었으므로 특별한 규율이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WTO-MEA 관계에 있어 MEA상의 '특정무역

280) WTO 웹사이트(2012b).

의무(specific trade obligation)' 정의와 범위에 대한 제안을 제출한 바 있다.[281] 이 제안에서 우리나라는 조약상의 의무는 구속력이 있고 불이행 시 일정의 불이익(coercion and punishment)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국에 이행재량권을 주는 MEA 규정은 특정무역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이슈로 제기된 MEA 사무국과 WTO 위원회 간의 협력강화 문제는 DDA 선언 외에도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하네스부르크 장상회의에서도 인정되었다. 이러한 협력은 무역체제와 환경체제가 밀착하여(coherently)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 양측간 교류는 WTO 무역환경위원회와 몇몇 MEA 사무국 간의 정보세션 개최, 개도국을 위한 무역과 환경 기술지원 공동제공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국제연합환경계획, UNFCCC 등 일부 국제환경기구들이 WTO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옵서버 지위를 부여받았다.[282] DDA 협상은 기존 WTO-MEA 간의 협력방식을 개선하고 체계화하며, 향후 이러한 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2011년 4월 무역과 환경 협상의 의장은 위에서 기술한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반영한 각료결정문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 의장문[283]은 무역과 환경의 상호지지성(mutual supportiveness)을 인정하고, 특정무역의무가 MEA 체약국에 특정한 무역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조치를 삼가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의미한다는 회원국들의 일반적

281) WTO(2002b).

282) 구체적으로 WTO(2007); Cottier, Nartova and Bigdeli eds.(2009), pp. 374-376 참고.

283) WTO(2011e).

인식을 반영하였다. 또한 WTO 규범과 MEA 협상 · 이행 시 각국의 정부 부처간의 조정(coordin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의장문은 WTO와 MEA 간의 정보교환 · 문서공유 · 기술지원 강화, MEA 사무국에 대한 옵서버 지위 부여, 개도국을 위한 기술지원 · 역량강화, WTO-MEA 관계에 대한 분쟁 발생 시 MEA에 대한 전문가 조언 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DDA 환경의제 중 셋째 이슈인 환경 상품 · 서비스 자유화 문제의 경우 구체적인 양허협상은 비농산물 시장접근 및 서비스 협상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역과 환경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주로 환경상품의 개념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상품 정의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대립이 계속되므로 환경상품 정의보다 환경상품 품목을 확인(identification)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상품 목록 선정 방식은 [표 6-1]과 같이 List 방식, Project 방식, Request & Offer 방식, Hybrid Approach 및 Combined Approach 등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환경상품과 관련된 최근 협상 동향은 다음과 같다. 2011년 1월 무역과 환경 협상 의장은 총 424개 상품을 공기오염통제, 재생에너지, 폐기물 관리 및 하수처리, 환경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범주별로 각 품목의 환경적 · 경제적 편익, 이행관세율 · 실행관세율 · 수출입현황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였다. 같은 해 3월 싱가포르, 홍콩, 노르웨이, 호주가 총 26개 핵심 환경상품을 제안했으나, 환경상품목록의 확대를 주장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이 환경상품목록의 환경적 편익을 의심하는 개도국들의 반대로 협의된 진전 상항은 없었다. 2011년 7월 미

표 6-1. DDA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방식		
접근방식	제안국	주요 내용
List 방식	'환경프랜즈 그룹' (한국 포함)	o 각국이 제출한 환경상품 리스트를 바탕으로 합의된 리스트를 도출하여 관세감축을 추진하는 방식 o 선진국의 무역이익에만 초점을 둔다고 비판을 받음.
Project 방식	인도 아르헨티나	o 환경 프로젝트 수요에 따라 환경상품을 일시적으로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다수 개도국의 지지 획득 o 관세감축은 프로젝트 기간 중에만 이루어지므로 관세 양허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비판
Request & Offer 방식	브라질	o 국가들이 자국의 지속가능 발전 수요에 따른 환경상품을 선정하여 R/O 방식에 따라 협상
Hybrid Approach	싱가포르 노르웨이 홍콩 콜롬비아 호주	o 공통 핵심 리스트, 보완적 자기선택 리스트, R/O 방식, 환경 프로젝트를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 - 공통 핵심 리스트(Common Core List): 회원국간 합의로 핵심 품목 결정 - 보완적 자기선택 리스트(Complementary Self-Selected List): 선진국의 경우 각국 수입액의 일정 비율 이상 또는 특정 관세선(tariff line)에 해당하는 환경상품에 대해 관세 감축, 개도국의 경우 참여의무 및 상기 환경상품 선정 규율을 부여하지 않음. - R/O 방식: 관세 감축폭, S&D 대우는 양자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양자협의 결과는 MFN 원칙에 의해 다자화 - 환경 프로젝트: 핵심 환경상품 리스트, 보완적 리스트, R/O 방식에 의해 선정되지 않은 환경 프로젝트 관련 환경상품은 회원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유화 가능 o 주요국 반응: 미국 · 일본 · EU들은 공통 핵심 리스트의 규모가 적어도 100개 품목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들은 리스트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함.
Combined Approach	멕시코 칠레	o 일부 핵심 상품을 선정하여 선진국은 무세화, 개도국은 스위스 공식의 50% 수준으로 감축 o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R/O 방식으로 환경상품 자유화 추진

자료: WTO(2011e) 등 각종 WTO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국, 캐나다 등이 2012년까지 153개 '환경프랜즈 그룹'의 제안 환경상품을 대상으로 최대 5%까지 관세율 감축, 환경상품에 대한 현지부품 사용요건 부과 금지, 환경서비스에 대한 현 국내법 개방수준에 따른 양허(standstill) 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환경상품의 수출기회 확대를 감안하여 대체적으로 이 제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왔다.[284] 반면 개도국

284) 153개 환경상품목록에 대한 우리나라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5.98%이다. 이중 실행관세율이 5%를 초과하는 품목은 105개(전체의 68.6%)이며, 실행관세율이 1~5%인 품목은

들은 환경프렌즈 상품목록의 대부분이 환경적 타당성이 부족한 범용상품이며(인도, 브라질), 선진국의 대(對) 개도국 기술이전 보장 여부(중국), 선진국의 경우 환경상품에 대한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멕시코)을 근거로 이러한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무역과 환경의제와 별도로 DDA 규범협상에서 녹색성장정책과 관련이 있는 허용보조금 조항의 복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연구개발 · 지역개발 · 환경 보조금과 같은 허용보조금 규정은 2000년 1월부터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쿠바, 베네수엘라 등 개도국은 정당한 개발목적을 위해 이 규정을 복원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규범협상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이다.[285] 따라서 녹색성장정책과 연계되는 연구개발 · 환경 보조금을 WTO 규제로부터 면제시킬 수 있는 허용보조금 조항의 재도입 논의는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 APEC에서의 논의 동향

무역과 환경 이슈는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차원에서도 논의되어 왔다. 2007년 시드니 정상회의에서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고 환경 상품 · 서비스 무역을 촉진시키는 작업의제(action agenda)를 설정하였고, 2009년에 환경 상품 · 서비스 작업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2010년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균형성장,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적 성장, 안전한 성장 등을 포함한 APEC 성장전략을 발표한

14개, 무관세 품목은 34개이다.

285) ICTSD and IISD(2003) 참고.

바 있으며, 이 중 녹색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6개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약속하였다.

2011년 호놀룰루 정상회의에서 APEC 지도자들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성장 · 고용을 제고하는 녹색성장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환경상품과 서비스 관련 무역 및 투자를 위해 관련 선언문[286]에 반영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다. 첫째,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APEC 환경상품목록을 2012년에 개발하고, 2015년 말까지 회원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실행관세를 5% 이하로 낮추기로 하였다. 둘째, WTO 의무에 따라 환경 상품 · 서비스 무역을 왜곡하는 현지부품 사용조건을 2012년 말까지 철폐하고,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이러한 조건을 새로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셋째, 환

표 6-2. APEC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개요

목적	이행조치
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성, 저탄소정책 강화	• 모범관행 공유, 자발적 peer review 시행,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등 • 2030년까지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 25% 감소 목표치 상승가능성 평가
저탄소 에너지부문 개발	• 각국별 저탄소 전력원 도입계획 독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사용, 원자력발전소, 저공해석탄연소기술 등의 사용 고려
환경 상품 · 서비스 접근 개선, 동 부문 개발	비관세장벽, 에너지효율성표준 조화, 무역과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한 APEC 환경 상품 · 서비스 작업 프로그램 이행
녹색고용, 교육, 연수 촉진	모범관행 공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 지원, 생태관광 확대
녹색 산업 · 생산 · 공정 관련 민간투자 촉진	시장지향적 자금조달 등을 통한 녹색 민간투자 촉진
농업과 자연자원 보존, 지속적 관리 촉진	삼림관리, 토양보존, 해양자원 보존, 유역관리, 지속가능한 농업 등에 집중

자료: APEC(2010).

286) 2011 APEC Leaders' Declaration 및 Annex C, 제19차 APEC 정상회의(2011년 11월 12~13일 호놀룰루)에서 채택.

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부지원과 인센티브가 투명하고 회원국들의 WTO 의무와 일치하도록 약속하였다. 넷째, 환경 상품 · 서비스 관련 정부조달 정책은 투명하고 APEC의 비구속적 정부조달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환경상품에 대한 기술규제 분야에서의 일관성과 협력을 제고하고, 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서 환경 상품 ·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2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는 50개 이상의 환경상품을 포함한 목록이 발표되었다. 또한 APEC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지하나 녹색성장 지원 자체가 보호주의적 조치를 부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며, 환경보호 조치의 무역제한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국제통상법과 합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87)]

위에서 기술한 APEC의 논의는 대체로 WTO 제도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특히 환경 상품 · 서비스 자유화 논의가 DDA 협상의 교착 상황에 따라 미국의 제안으로 APEC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에 나타난다. 그러나 APEC는 그 성격상 WTO와 달리 회원국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을 도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3) 평가 및 대응방안

앞서 살펴본 DDA 협상은 WTO 체제를 녹색화하는 데 있어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선 온실가스 방출, 환경오염 등을 줄일 수

287) 2012 APEC Leaders' Declaration 및 Annex C, 제20차 APEC 정상회의(2012년 9월 8~9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채택.

있는 환경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고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촉진시켜 환경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DDA를 통해 MEA 사무국과 WTO 간의 교류활성화는 WTO가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만들 것이다.

반면 APEC는 환경적 측면의 무역자유화에 대해 WTO와 같이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나, 시장개방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일부 WTO 회원국간 의견차이를 좁힐 수 있는 일종의 조정 포럼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장개방 문제에 대한 APEC 회원국간의 복수간 합의는 WTO에서도 하나의 협상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더욱 친환경적인 WTO 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WTO와 APEC에서의 무역과 환경 관련 논의는 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다음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WTO 규정과 MEA인 기후변화조약의 관계에 대한 명료화 작업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할 때 기후변화와 무역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환경 상품 · 서비스 시장 개방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에 필요한 주요 기술, 장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셋째, WTO와 MEA 사무국들의 협력도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양 체계의 참여국에 간접적으로 정보, 전문지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무역과 환경에 대한 국내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DDA 협상의 진행사항을 평가해 보면, DDA 협상

은 회원국간 의견차이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WTO-MEA 관계와 관련해서 회원국들이 도하선언에 이미 기술된 양 법체계의 상호지지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어, 이들 규정간의 충돌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한 다자적인 방안이 계속 도출되지 못한다면, 양 법체계간의 관계 문제는 회원국들이 직접 주도하는 규범제정 절차가 아닌 패널 · 상소기관 주도하의 WTO 사법절차를 통해 명료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288] 다시 말해 아직까지 WTO-MEA에 대한 분쟁사례가 없었으나, 향후 기후변화조약 등 MEA 이행 시 WTO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패널과 상소기관이 WTO-MEA 관계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상품 · 서비스 협상은 교착상태에 봉착하였는데, 앞으로도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면 지금의 협상방식 대안으로는 과거는 정부조달협정과 정보기술협정이 체결된 방식이나 지금 DDA 서비스 부문에서 거론되는 협상방식과 같은 복수국간 협상을 추진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복수국간 협상은 현재의 다자간 협상보다 원칙적으로 타결가능성이 높고, 협상 타결 후에도 참여국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복수국간 협상에 한국의 환경 상품 · 서비스의 주요 시장인 개도국 등 회원국이 최대한 많이 포함되어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 상품 · 서비스 관련 무역자유화 논의가 WTO보다 APEC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APEC 차원의 논의를 복수국간 협상의 기반으로 삼고 WTO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288) 물론 WTO 각료회의 · 일반이사회도 공식적인 해석을 발표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해석 도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있다. 특히 APEC이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을 포함하는 기구이므로 APEC에 기초한 WTO 복수국간도 협상은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수국간 협상 추진 시 무역자유화 혜택을 누릴 국가의 범위를 협상 참여국으로만 제한해야 할지(정부조달협정상의 조건부 시장개방 방식) 또는 모든 WTO 회원국으로 확대해야 할지(정보기술협정상의 무조건 시장개방 방식)를 결정해야 될 것이다. 정부조달협정 방식은 무임승차 효과(free-riding effect)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WTO 회원국 전체의 컨센서스를 얻어야 시행가능하다.[289] 반면 정보기술협정의 방식은 WTO 회원국 중 일부 그룹만이 시장개방을 하지만 이에 따른 혜택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의해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되므로, 이러한 방식 자체에 대해 WTO 내부승인을 받기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정부조달협정 방식의 협상은 컨센서스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우면 정보기술협정상의 무조건 개방방식에 따른 복수국간 협상을 추진해볼 만하다. 다만 이럴 경우에 무임승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시장개방 의무국 전체가 전 세계의 환경 상품 · 서비스 교역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허용보조금 관련 명시적인 예외조항의 도입 여부는 WTO 규범협상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녹색성장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면 같은 입장인 회원국들과 함

289) WTO 창립협정 제X조 8항에 의하면, “각료회의는 특정 무역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전적으로 컨센서스에 의해서만 이 협정을 부속서 4[복수국간 무역협정]에 추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께 '허용보조금 프랜즈' 그룹을 만들고 이러한 그룹의 공동제안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존 허용보조금 규정의 복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허용보조금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적어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모든 혹은 일부 정부지원을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2020년 이후 모든 국가에 적용될 신기후변화체제가 출범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WTO 녹색화 개혁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지금 DDA에서 현실적으로 논의하기 어렵지만, 향후 새로운 다자무역협상 라운드에서 보다 본격적인 WTO 녹색화 방안으로는 환경친화적 WTO 규범의 제정 · 개정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을 위한 특정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새로이 채택하거나, GATT 제XX조와 같은 기존 조항을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신축성 있게 적용하도록 재해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의 모범국가로서 이러한 논의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WTO 녹색화 개혁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나. 통상조약 체결을 통한 녹색화

WTO를 직접적으로 녹색화할 수 있는 무역과 환경 협상을 다룬 앞 절과 다르게 본 절에서는 통상조약 체결의 국내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WTO

를 간접적으로 녹색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한국에만 국한된 개선조치에 불과하지만 궁극적으로 WTO녹색화에 기여하여 대외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통상조약 체결 절차를 소개하고, 이러한 절차에 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1) 통상조약 체결 절차 개요

2012년 1월 우리나라에서 새로이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 중인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90] 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통상조약'이라는 용어는 WTO 협정,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 그 밖의 시장개방을 규율하는 조약을 의미한다.[291] 즉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다자적 · 지역적 · 양자적 차원의 모든 정부간 협정은 이 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

이 법률은 정보의 공개, 통상조약 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공청회 개최, 국민의 의견 제출, 조약 체결의 타당성 검토, 영향평가, 협상 결과의 보고, 비준, 설명회의 개최, 조약이행 평가 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제6~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주요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상 개시 전에 관련 조약 체결에 관한 계획을

290)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조.

291) 위의 법률 제2조.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한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협상 진행 시에는 필요에 따라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협상이 타결되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조약이 서명되면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상 결과, 주요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서명된 조약은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며, 발효되기 전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거친다. 발효된 조약은 10년 이내 이행상황 평가를 받는다. 이 법률 제21조는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 환경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

앞서 설명된 절차 중 특히 영향평가(제11조) 및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와 보고(제15조)에 관한 내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1조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해 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때 관련 조약이 (1) 국내경제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 (2) 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네 가지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제15조에 의하면 외교통상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통상조약에 대해서 다음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발효된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
2.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3.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4.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같은 단계에서 관련 조약의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조약이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즉 제11조는 영향평가 대상을 환경을 제외한 4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고, 제15조 4항은 환경은 고려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반면 기후변화 완화 문제를 국내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온 EU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EU는 WTO의 DDA 협상을 대비하여 1999년에 지속가능성 영향평가제(SIA: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를 도입한 이래 이 제도를 다자 · 지역 · 양자 통상조약에 적용해 왔다. SIA 제도는 무역협상에 따른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영향에 대한 사전적 평가를 의무화한 정책수단으로서 평가대상 조약에 따른 무역자유화가 소득, 고용, 투자, 보건과 교육, 양성평등, 대기 · 물 · 토지의 환경적 질, 생물다양성, 자연자원의 보유량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제도하의 개별평가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부터 실시되며, 선정된 전문가 그룹이 SIA 보고서를 제출하면 유럽 집행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통상조약 협상 때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지에 대한 설명서(position paper)를 작성하고 공개한다.[292] SIA는 주로 협상 당시에만 실

292) SIA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European Commission 웹사이트(2012b), European Commission

시되었지만, 최근 들어 조약이행 단계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EU · 칠레 FTA에서는 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이하여 SIA가 사후적으로 실시된 바 있다.[293]

한편 캐나다와 미국에도 EU의 SIA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294] 캐나다는 19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사후적 환경평가를 실시하였고, 1999년 향후 개시될 수 있는 새로운 협상 라운드에 대한 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평가의 목적은 캐나다의 환경보호 권한의 실행에 대한 다자무역협상의 영향을 확인하고, 캐나다의 대표단이 무역협정 교섭 시 환경적 쟁점과 우려사항을 제대로 고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루과이 라운드, 도하 라운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러한 무역규범 맥락에서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히 한 국가 내에서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며,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DDA를 개시한 도하 각료선언문(2001), 요하네스버그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실행계획(2002) 등 다자간에 채택된 문서는 국내 환경평가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는 사실로 인해 주목을 받는다.[295] 이것은 무엇보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더 이상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편화되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06) 참고.

293) 유럽집행위원회 DG Environment의 선임행정원 Patrick Ravillard와의 면담(2012년 5월 8일, 브뤼셀) 내용 발췌.

294) 구체적인 설명은 WTO(2000) 참고.

295)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WTO(2001b), 제6항, 제33항 참고; 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2002, Johannesburg) 제19(e)항, 제97(d)항, 제135항 참고.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정책을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 수립하고,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닌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통상조약 협상과 이행 시 환경적 요소를 보다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5조에서 환경평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법률은 다자무역규범은 물론 FTA 등 지역 · 양자 통상조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제안된 환경평가 요건은 지역 · 양자 통상조약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표 6-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선진국, 개도국과 체결한 모든 FTA에 환경 관련 조항이 이미 존재하며, 일부 FTA는 환경평가에 대한 조항[296]을 두고 있는 만큼, 환경요소는 FTA 맥락에서도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 양자 통상조약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WTO 녹색화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실행이 가능하나, 이는 우선 개별 회원국으로부터 제안되어 여타 회원국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 예컨대 SIA 제도의 경우 EU는 처음으로 양자 · 지역 무역협상이 아닌 WTO에서 새로이 출범될 잠재적 다자협상 라운드에 대한 영향평가를 1999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EU가 추후 출범된 도하 라운드에서 환경의제를 강력히 지지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본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통상조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가

296) 한 · EU FTA 제13.10조, 한 · 페루 FTA 제19.13조 참고.

표 6-3. 한국이 체결한 FTA의 환경 조항

구분	발효							
	칠레 (2004)	싱가포르 (2006)	EFTA (2006)	ASEAN (2007)	인도 (2010)	EU (2011)	페루 (2011)	미국[2] (2012)
전문의 환경 또는 SD 언급	○	X	○	X	○	○	○	○
본 협정 또는 환경부속협정	본 협정	본 협정	X	본 협정	X	본 협정의 환경 장/ 부속서	본 협정의 환경 장/ 부속서	본 협정의 환경 장/ 부속서(한)
환경법 이행의무	X	X	X	△[1]	X	○	X	○
환경기준	X	X	X	X	X	○	X	○
환경협력	○	○	X	○	○	○	○	○
자문 및 정보교환	X	X	X	○	X	○	○	○
MEA와의 관계	X	X	X	X	X	○	○	○
환경 관련 예외조항	○	○	○	○	○	○	○	○
분쟁해결 절차	X	X	X	X	X	○	X	○
민간참여	X	X	X	X	X	○	X	○
민간제출권	X	X	X	X	X	○	X	○
환경상품/ 서비스	X	X	X	X	X	○	○	X

주: 1) ASEAN의 환경법 이행의무를 △로 표기한 것은 이 협정에서 환경법 자체에 대한 이행의무는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경제협력의 범위에 환경산업을 포함시키고 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이행위원회에 감독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2) 한·미 FTA 발효 연도는 저자 추가.
자료: 김정곤, 금혜윤(2011).

도입되면 우리나라도 EU,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처럼 간접적이더라도 WTO의 녹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환경영향평가제는 우리나라가 WTO 녹색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WTO에서 무역과 환경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발견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기체결 WTO 협정문에 특정 환경적 고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녹색성장정책을 다자무역규범과 조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관련 통상조약이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친환경적 통상조약이 체결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상조약은 우리에게 기후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며, 더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조약 당사국 사이에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물론 현재 DDA의 교착상태가 단기적으로 다자무역규범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다소 폄하할 수 있으나, 앞으로 DDA뿐만 아니라 post-DDA 협상 시에도 이러한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몇몇 국가들과 FTA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고, 현행 FTA에 대한 사후적 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고려하면, FTA 차원의 환경평가의 내용, 기준, 요건, 형식 등은 향후 다자무역협정에도 중요한 모델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후변화체제에서 다자무역규범 준수 강화

가. 국제 기후변화규범 개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UNFCCC가 채택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그러나 내용면에서

차별화된 책임을 지며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천명한 UNFCCC는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2011년 5월 현재 194개국이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하였다.

UNFCCC 당사국들은 1995년부터 매년 1회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며, 당사국 총회를 지원하기 위한 부속기관으로 이행보조기관(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과 과학기술자문보조기관(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을 두고 있다. 사무국은 독일 본에 위치하며, 2010년 5월부터 코스타리카 출신 Christiana Figueres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UNFCCC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차별화된 공동책임 원칙에 따라 부속서 I에 포함된 42개국(부속서 I 국가)은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개도국(비부속서 I 국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 등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부속서II에 포함된 24개 선진국(부속서 II 국가)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하는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297)]

1997년에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UNFCCC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서, 기후변화의 주범인 여섯 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정의하는 한편, 부속서 I 국가들이 제1차 공약기간(2008~12년) 동안 온실가스

297) 부속서 1 국가는 UNFCCC 채택 당시 OECD, 동구권, 유럽경제공동체 국가들이며, 부속서 2는 이 중 OECD와 유럽경제공동체 국가들만을 포함한다. 한국을 포함한 비부속서 1 국가들은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을 포함한 비부속서 I 국가에 대해서는 UNFCCC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 등의 일반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기능에 기반을 둔 신축성 메커니즘, 즉 [그림 6-1]과 같은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다.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이후 한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을 2012년에 개시하여 2015년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신기후변화체제를 규율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아직 없으므로, 본 장에서는 UNFCCC와 교토의정서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6-1. 교토의정서 신축성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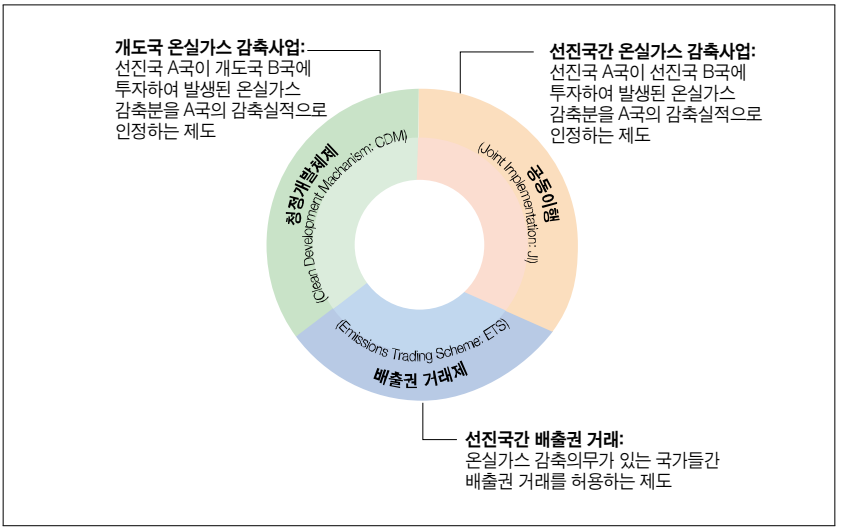

자료: 외교통상부(2008).

나. 기후변화조약상의 무역 관련 조치 조항

기후변화체제의 핵심 조약인 UNFCCC와 그 시행문서인 교토의정서는 명시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들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조치는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98] 특히 [표 6-4]에 서술된 UNFCCC 제3.5조와 제4.2조는 무역과 관령성이 깊다. 구체적으로 제3.5조에 규정된 원칙은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이나 위장된 제한수단'으로 취해지는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금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원칙이 'shall'이라는 용어 대신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should'라는 용어(measures taken to combat climate change... *should* not constitute...)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WTO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 조치가 WTO 예외조항인 GATT 제XX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바, 만약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해 부과된 무역제한 조치가 UNFCCC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다면 GATT 제XX조와 상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UNFCCC 제3.5조상의 원칙은 대체로 GATT 제XX조 전문과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제XX조 전문과 달리 제3.5조에는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라는 조건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조건이 '차별수단'의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제3.5조에 이 조건의 부재는 오히려 무역제한 금지를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

298) Cottier, Nartova and Bigdeli eds.(2009), pp. 13-17 참고.

표 6-4. UNFCCC 무역 관련 조치 조항	
조항	주요 내용
제3조 (“원칙”)	5. 당사자는 모든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자가 지속적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고 그럼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지적이며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일방적 조치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는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 (“공약”)	2. 부속서 1에 포함된, 선진국인 당사자와 그 밖의 당사자는 특히 다음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할 것에 합의한다. 가. 당사자는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제한하고 온실가스의 흡수원과 저장소를 보호 ·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완화에 관한 국가정책을 채택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정책과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진국은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위적 배출의 장기적 추세를 수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을 증명한다. 선진국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이산화탄소와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는 그 밖의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1990년대 말까지 종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러한 수정에 기여함을 인식하고, 각 당사자의 출발점 및 접근방법, 경제구조 그리고 자원기반의 차이,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할 필요성, 가용기술 그리고 여타 개별적 상황, 아울러 이 목적에 대한 세계적 노력에 각 당사자가 공평하고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선진국인 당사자는 그 밖의 당사자와 이러한 정책과 조치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밖의 당사자가 협약의 목적, 특히 본 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자료: UNFCCC 중 무역 관련 조치에 대한 조항은 WTO(2011f)를 참고하여 저자 표기.

UNFCCC 제4.2조는 부속서 1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기후변화의 완화를 위한 국가정책을 채택하고 필요조치를 취하는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정책과 조치를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교토의정서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이 의정서 제2.1조는 부속서 I 당사국이 에너지의 효율성 향상, 수원 및 저장소 보호, 에너지 기술 개발 촉진,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 조치 등을 이행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제6조, 제12조, 제17조는 각각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배출감축 메커니즘을 규정하였다.

표 6-5. 교토의정서 무역 관련 조치 조항

조항	주요 내용
제2조	1. 부속서 1의 당사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적 배출량의 제한 · 감축을 위한 공약을 달성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수행한다. 가. 자국의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 · 조치를 이행하고/이행하거나 더욱 발전시킨다. (1) 자국 경제의 관련 부문에서 에너지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 (2) 관련 국제환경협정상 자국의 공약을 고려하면서 온실가스(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흡수원 및 저장소를 보호 ·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작업과 신규조림 및 재조림을 촉진할 것 (3)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형태의 농업을 촉진할 것 (4) 신규 및 재생가능한 형태의 에너지와 이산화탄소의 격리기술 및 선진적 · 혁신적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 대한 연구 · 촉진 · 개발 및 그 이용을 증진할 것 (5)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부문에 있어서 협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시장의 불완전성, 재정적 유인, 세금 · 관세의 면제 및 보조금 등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시장적 기제를 적용할 것 (6) 온실가스(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배출량을 제한 · 감축하는 정책 및 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문의 적절한 개선을 장려할 것 (7)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배출량을 제한 및/또는 감축하는 조치를 취할 것 (8) 폐기물의 관리와 에너지의 생산 · 수송 · 분배 과정에서의 회수 및 사용을 통하여 메탄의 배출량을 제한 및/또는 감축할 것 나. 이 조에서 채택되는 정책 및 조치의 개별적 · 복합적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협약 제4조 제2항 마목 (1)에 따라 다른 부속서 1의 당사자들과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이들 당사자는 이러한 정책 및 조치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되, 이에는 정책 및 조치의 비교가능성 · 투명성 및 그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개발이 포함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기 또는 그 이후에 가능한 한 신속히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이러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2. 부속서 1의 당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국제해사기구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항공기용 및 선박용 연료로부터 각각 발생하는 온실가스(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배출량의 제한 · 감축을 추구한다. 3. 부속서 1의 당사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협약 제3조를 고려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 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 다른 당사자들,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들과 그중에서도 협약 제4조 제8항 및 제9항에 규정된 당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 환경적 · 경제적 영향 등을 포함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는 이 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총회는 각국의 상이한 여건과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제1항 가목의 정책 및 조치를 조정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 및 조치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 및 수단을 검토한다.
제6조 (공동이행 제도)	1. 부속서 1의 당사자는 제3조상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경제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의 감축이나 흡수원에 의한 인위적 제거량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량의 감축단위를 다른 부속서 1의 당사자에게 이전하거나 그들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제12조 (청정개발 체제)	2. 청정개발체제는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아니한 당사자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협약의 궁극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속서 1의 당사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적 배출량의 제한 · 감축을 위한 공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배출권거래제)	당사자총회는 특히 검증 · 보고 · 책임 등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배출량거래에 관한 원칙 · 방식 · 규칙 · 지침을 규정한다. 부속서 나의 당사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출량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거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적 배출량의 제한 · 감축을 위한 공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자료: 교토의정서 중 무역관련 조치에 대한 조항은 WTO(2011f)를 참고하여 저자 표기.

한편 UNFCCC가 체결된 1992년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개최 20주년 기념으로 2012년 6월 20~22일에 개최된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서는 여러 이슈 중 녹색경제로의 전환 관련 안건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의 선언문은 녹색경제 정책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며,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299] 이 선언은 기후변화 조약이 아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근거로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 보호주의를 규탄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 기후변화 대응조치 관련 논의

교토의정서 제2.3조는 부속서 I 국가 등 주요 선진국이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수행하거나 조치를 취할 때 개도국을 포함한 여타 당사국에 대한 사회적 · 환경적 · 경제적 영향,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UNFCCC 담당기관에 선진국의 정책이나 조치가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다.[300]

한편 UNFCCC 당사국들은 제13차 발리 당사국 총회에서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조치(response measure)의 이행에 따른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301] 이후 제16차 칸쿤 당사국 총회에서 무역제한 조치를 금지하는 UNFCCC 제3.5조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선진국

299)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2012), para. 58.

300) WTO(2011g).

301) UNFCCC(2007), para. 1(b)(vi).

들의 대응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에 대한 포럼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응조치의 영향 관련 작업 프로그램에 대해 UNFCCC 과학기술자문보조기관과 이행보조기관의 제34차, 제35차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합의하였다.[302] 제17차 더반 당사국 총회에서 UNFCCC 부속기관에 대응조치영향 포럼이 설립되었고, 대응조치의 영향에 대한 정보 · 경험 공유, 대응전략 협력, 영향평가, 경제다양화에 대한 경험 공유, 경제적 모형 등의 분야를 포함한 작업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303]

지금까지 대응조치 영향에 대해 논의된 바를 정리해 보면, 특히 무역 관련 영향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인도, 아르헨티나, 중국, Group of Seventy-Seven 국가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국경세 조정 등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응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검토할 때 무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몇몇 개도국 그룹의 대표로서 인도는 선진국이 기후변화를 근거로 개도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관세, 비관세조치, 기타 (비)재정적 국경무역조치 등 일방적 조치를 완전히 금지하는 UNFCCC의 결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304] 이에 대해 EU, 호

302) UNFCCC(2011b), Chapter III.E, paras. 90, 93.

303) UNFCCC(2011a), paras. 1-3.

304) UNFCCC(2011d):
Decision in order to implement paragraph 90 of 1.CP/16
[...]
Decides that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shall not resort to any form of unilateral measures, including tariff, non-tariff, and other fiscal and non-fiscal border trade measures, against goods and services from developing country Parties on any grounds related to climate change, including protection and stabilization of climate, emissions leakage and/or cost of environment compliance; recalling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Article 3, paragraphs 1, 4 and 5,

주 등의 선진국과 싱가포르는 무역 관련 이슈는 UNFCCC 제3.5조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UNFCCC 외의 포럼 즉 WTO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와 콩고 민주공화국 등 개도국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WTO가 기후변화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UNFCCC 협상 결과를 주시하고 있으며, 또한 DDA 협상이 현재 진전이 없으므로 WTO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305)]

라. 평가 및 대응방안

앞에서 보았듯이 기후변화체제에서는 UNFCCC 제3.5조 원칙을 통해 무역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만으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모든 대응조치를 현실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다. 즉 선진국은 기후변화체제에서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추가적 억제 메커니즘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개도국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논의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대응조치영향 포럼이 설치된 만큼, 향후 보다 적극적인

Article 4, paragraphs 3, 5 and 7, and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s of equity,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and the obligations of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to provide financial resource, transfer technology and provide capacity building support to the developing country Parties.

305) 이 단락은 다음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Third World Network 웹사이트(2009); Third World Network 웹사이트(2010); Third World Network 웹사이트(2011b); Third World Network 웹사이트(2011a); UNFCCC(2011c); Third World Network 웹사이트(2012).

태도로 포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먼저 포럼 논의 범위에 무역 관련 이슈를 포함시킬지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무역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무역을 대응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부분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같은 무역 관련 사안(예컨대 수산보조금, 무역원활화 등)은 WTO뿐만 아니라 OECD, APEC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바, 기후변화조약 틀에서 무역 관련 이슈를 논의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향후 포스트교토 체제하에서 체결될 조약에 무역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도입할 것인지를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대응조치영향 포럼에서 무역 관련 쟁점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반면 일부 개도국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일방적 무역 관련 조치를 완전히 금지하는 조항의 도입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금지는 환경보호를 위한 일방적 조치 부과에 대한 국가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GATT 제XX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도국들이 제안하고 있는 조항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다자무역규범과 기후변화규범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으로 취하였거나 취할 수 있는 각종 조치는 결국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상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들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조치영향 포럼에서 무역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지지하는 한편, 일방적 무역 관련 조치의 완전금지에

반대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중간자적 입장은 기후변화체제에서 다자무역규범의 준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대응조치영향포럼을 통해 관련 무역제한 조치를 확인하고 이를 WTO 규범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다자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방적 무역 관련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하지 않으면 WTO 규정인 GATT 제XX조의 적용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WTO하의 다자무역제도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고려의 제고방안과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이 유래한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의 준수 강화방안을 통해 양 체제간의 조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WTO 녹색화 및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을 강화하는 접근방식은 여러 국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한국도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수준에서 합의된 내용이나 논의된 사항은 국내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한국이 국제 협상 · 논의 등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내정책에 맞는 국제 규정 · 정책 등이 채택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제7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국내적 접근
2. 대외적 접근
3. 종합평가 및 대응방향

경제성장과 환경이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모색은 모든 인류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앞둔 국가들에는 더 높은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 녹색성장의 통상적 맥락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 특히 조심스럽게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국제교역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으나, 동시에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1.5%가 국제무역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환경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무역규범과의 조화라는 원칙이 가지는 그 중요성을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 녹색성장과 시장개방 규정, 보조금협정, TBT 협정과 같은 WTO 주요 규범의 관계, 대외적 차원의 WTO와 UNFCCC 간의 조화 문제를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본론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방안 및 정책시사점을 국내적 · 대외적 접근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즉 국내적 접근으로는 시장개방, 산업지원, 기술규제 등 국내정책별로 제시되는 조화방안이 있고, 대외적 접근으로는 WTO를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의 준수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국내적 접근

가. 시장개방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제2장과 제3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시장개방 규제조치는 환경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통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기후변화 완화 및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과 대응조치는 각국의 환경정책에 기초하지만, 대응조치의 상당부분은 무역 및 투자 관련 법규 및 정책과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등 기후변화 완화조치들은 일반적으로 자국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킨다. 그 결과 기후변화 완화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된다. 그리고 상품 생산가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국 또는 해외 투자자들은 기후변화 완화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또는 낮은 수준으로 시행하는 국가로 투자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의 이전은 결국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에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지 못하는 탄소누출을 초래한다.[306)]

이와 같은 경쟁력 상실과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이 수입상품에 대한 배출권 구매 요구 또는 탄소세와 동등한 금액을 부과하는 국경세조정 등 수입에 대한 규제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그 성격 및 적용방법에 따라 상품무역을 위한 시장개방을

306) Cosbey ed.(2008), p. 44.

규율하는 GATT상의 최혜국대우의무, 내국민대우의무,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관세부과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3장에서 상세히 보았듯이, 상품의 생산이나 소비 중에 발생한 탄소량의 차이 등 환경적 고려요소를 바탕으로 비교대상 상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GATT 제III조의 내국민대우의무나 제I조의 최혜국대우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특정 녹색성장 조치의 GATT 시장개방 규정과의 합치성에 대한 특별한 지적이나 분쟁사례가 없었으나, 제3장에서는 GATT 위반의 소지가 있고 우리나라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해외조치 중 탄소세, 자동차의 연비기준에 따른 가솔린 과소비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의 보조금 · 부과금 제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수입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조치들과 관련해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규정의 위반 여부 판정은 비교대상 상품이 동종상품인지의 여부와 불리한 대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크게 달려 있는데, 그중 특히 동종상품 여부는 논란의 소재가 있다. 예컨대 탄소세를 부과할 때 포함하고 있는 탄소량이 상이한 두 상품이 탄소의 양을 제외한 그 밖의 물리적 특성, 소비자 기호, 최종용도 등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두 상품을 동종상품으로 여겨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만약 동종상품으로 간주된다면 두 상품에 적용되는 상이한 탄소세는 비차별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한편 EC 석면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건강에 대한 유해가능성이 상품의 물리적 특성 또는 소비자 기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경쟁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품을 구별하여 차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해석은

환경친화적 상품과 비친화적 상품의 차별대우가 GATT 비차별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동종성 판단이 구체적 시장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품이 특정 국가에서는 동종상품이라도 다른 국가에서는 동종상품이 아닐 수 있으므로 동종상품 여부는 결국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한 녹색성장 조치가 이와 같이 GATT의 시장개방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을 비추어 봤을 때, 우선 녹색성장 관련 법규와 구체적인 발동조치를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특히 상품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산지에 기초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소세의 국경 조정은 양허관세에 관한 GATT 제II조 2항 등 규정이 그 합법성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용이하게 발동이 가능하지만, 탄소량의 정확한 측정과 과세액의 정확한 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부과된 무역제한 조치는 비차별 원칙 등 GATT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GATT 제XX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로 정당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미국 가솔린 사건에서 WTO 패널과 상소기관이 제XX조 (g)호상의 '유한천연자원'의 개념을 확대하여 청정한 대기를 유한천연자원으로 인정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성장 조치를 유한천연자원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 간주할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GATT 규정을 위반하는 녹색성장 조치는 제XX조 (b)호에 언급되어 있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각종 녹색성장 조치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 GATT상의 의무에 위반

될지라도 제XX조의 (g)호 또는 (b)호에 해당되고, 제XX조 전문이 금지하는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으면, 이 조치는 WTO 규범상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행하고자 하는 녹색성장 법제 등 구체적인 조치가 GATT를 위반할 수밖에 없으나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등 정당한 정책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러한 조치를 최소한 GATT 제XX조상의 정당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히 국가간 자의적 차별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산업지원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제4장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WTO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 무역정책검토기관 등 다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해 지적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무엇보다 한국이 녹색지원에 대해 보조금협정상의 투명성 원칙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불투명한 보조금 정책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며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과 같이 심지어 제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보조금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307] 다만 정부가 투명성 · 홍보 차원에서 녹색지원에 대해 발간하는 자료는 WTO 제소 및 상계관세 조사 추진 시 상대국으로부터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의 전반적 내용은 물론 각 단어, 표현, 문장까지

307)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조한 선행연구가 많은바, 예컨대 Rubini(2012), pp. 571-572; OECD(2011), para. 13; Lodefalk and Storey(2005), p. 32 참고.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이 아직 피소된 적은 없으나, 다른 회원국의 녹색성장 보조금의 경우에는 총 3건의 WTO 분쟁사례가 있었다. 이들 사건에서 녹색성장 지원이 국산화를 조건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지금까지 제소된 분쟁이 겨우 3건에 불과한 것은 우선 모든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응조치로 활용되는 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묵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녹색 상품 · 기술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국가들간 녹색성장 분야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러한 묵계가 깨져 통상마찰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308] 예컨대 일부 전문가들은 풍력발전용 터빈시장 규모가 원래 그리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민간항공기 시장과 같은 거대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바, 지금 풍력발전용 터빈 생산에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향후 많은 WTO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309]

반면 전 세계적으로 상계관세의 활용빈도가 가장 높은 미국의 관행을 확인한 결과, R&D, 에너지 등 관련 우리나라의 각종 녹색지원 조치가 피소되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상의 구제와 달리 상계관세는 보조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철폐하게 하지 못하지만 보조금의 혜택을 받은 상품의 수입을 사실상 막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녹색지원을 받은 상품에 대한 해외시장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거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

308) Rubini(2012), pp. 555-556, p. 578 참고.

309) OECD의 무역정책분석가 Ronald Steenblik와의 면담(2012년 5월 10일, 파리) 내용 발췌.

리나라 수출이 대폭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국의 상계관세에 대한 예방 · 상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방대책으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정부의 녹색지원을 받은 이유로 외국 상계관세 조사에 피소될 경우 우리 정부는 상대국 조사당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보조금 존재에 대해 부정적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정되어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그 판정에 대한 WTO 제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소를 통해 상계관세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한 상대국의 제소나 상계관세 등 대응조치 적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WTO에서 명백히 금지되어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수출촉진 · 수입대체 보조금의 제공을 삼가야 한다. 특히 법률 등 공식 문서상 보조금이 대상기업의 수출실적 또는 국산물품 사용요건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러한 요건하에 지급되면 금지된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동일한 보조금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느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미 상무부는 한국정부가 27대 중점 녹색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상계가능한 보조금으로 간주한 바 있으므로,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가급적이면 여러 분야의 다수의 기술을 동일한 큰 틀하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조금의 특정성이 법령 등 문서에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관련 법의 목적을 상술하거나 지원대상 분야, 기술 등을 나열할 때 무역에 대해 중립적인 표현을 쓰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셋째, 상품 소비자를 위한 보조금은 보통 생산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보다 제소 · 상계관세조사 발동요건이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구매상품에 대한 보조금을 대상상품의 원산지 차별 없이 공여하면 상대국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넷째, 현재까지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은 WTO에서 특별히 규제받지 않고 이에 대해 다자협상에서 아직 가시화될 만한 결과가 없으므로, 지금 이 보조금을 통해 녹색 서비스 부문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 볼 수 있다.

다. 기술규제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제5장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와 WTO TBT 협정 간의 조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에 제기된 STC를 조사해 본 결과, 녹색성장과 관련되어 STC로 제기된 기술규제는 총 4건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제소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녹색성장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술규제 도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통상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서 기술한 STC 사례와 미국의 WTO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WTO 규범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녹색성장 관련 조치가 TBT 협정의 규율대상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조치가 TBT 협정의 규율대상일 경우 기술규정에 해당되는지 또는 표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적용가능한 WTO 규범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녹색성장 관련 조

치가 TBT 협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경우 GATT 등 기타 WTO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TBT 협정의 규율대상이더라도 대상조치가 기술규정이면 TBT 협정 제2조, 표준이면 TBT 협정 부속서 3의 표준에 관한 모범관행규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녹색성장 관련 조치가 기술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할 때 (1) 해당 조치가 식별가능한 상품 또는 상품군에 적용되며, (2) 해당 조치가 상품 또는 PPMs에 적용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3) 요건의 준수가 강제적인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특히 요건 준수의 강제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녹색성장 관련 조치가 단순히 생산자에게 라벨, 기호 등의 사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라벨이나 기호의 사용 없이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서 기술규정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차별 원칙으로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비, 적용 및 채택하는 데 있어 동종의 국내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TBT 협정 제2.1조에 의해 녹색성장 관련 조치의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 해당 조치가 기술규정에 해당하며, (2)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이 동종상품이어야 하고, (3) 동종의 국내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였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에 있어 관련 조치가 수입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이 아닌 경우, 동종의 국내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의 경쟁기회에 대한 유해한 영향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TBT 협정 제2.1조에 의한 내국민대우 위반이 아니며, 추가적으로 그러한 유해한 영향이 정당한 규제적 구분에 의해 초래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NPR PPMs에 근거한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는 TBT 협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GATT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TBT 협정은 물론 GATT 등 관련 규정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NPR PPMs 관련 기술규제의 GATT 제I조 및 제III조의 위반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의 준비, 채택 및 적용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이러한 기술규제를 가능한 한 자발적인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비준수 시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어서도 안 된다. 정당한 목적으로 국가안보상의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동 ·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위험평가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이용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 관련 처리기술 또는 상품의 의도된 최종용도 등이 있다. 녹색성장 관련 조치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인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 (1) 합리적인 목적에 대한 해당 규제의 기여 정도, (2) 해당 조치의 무역제한 여부, (3) 규제를 통해 추구되는 목적의 비준수 시 발생하는 결과의 중요성과 위험의 성격 등의 평가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내 기술규제와 다른 회원국의 해당 기술규제 간에 MRA를 적극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으며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9개 주요 국가와 MRA를 체결한 환경표지제도가 그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다른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MRA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표준을 국내 기술규제의 기초로 활용하는 한편,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다른 회원국의 기술규제 요건을 사전에 반영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TBT 협정의 의무사항 중 하나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통보의무 준수와 더불어, 국내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고, 제시된 의견과 이에 대한 답변사항, 논의된 의견의 규제 반영 여부 등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기술규정에 대해 기타 회원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은 TBT 위원회가 최소 60일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향후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정을 도입할 경우 60일 이상 의견제기 시간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310]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EU는 유럽집행위원회 사이트[311]의 기업과 산업 부문 내에 TBT 섹션을 별도로 마련하여 EU 및 제3 국가의 통보문과 이에 대한 EU 및 다른 WTO 회원국의 의견과 답변,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표준원이 TBT 통합정보 사이트[312]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보문 게재와 해외 기술규제 사례 등 제도 관련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TBT 통합정보 사이트 내에 EU와 유사하게 국내규제에 대한 다른 회원국의 의견 및 이에 대한

310) WTO(2009), p. 11.

311) European Commission 웹사이트(2012a).

312)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웹사이트(2012).

우리나라의 답변, 해외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과 이에 대한 해당 국가의 답변, 제시된 의견의 규제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WTO 조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니지만, 이러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STC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STC 제도는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뿐만 아니라, 통보되지 않았으나 현재 시행 중인 기술규제를 포괄하여 TBT 협정에 반하여 준비, 채택 및 적용 중인 기술규제에 대해 다른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회원국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다. 따라서 다른 WTO 회원국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에 대해 STC로 제기된 사안을 바탕으로 국내제도와 WTO 협정 간의 합치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규제의 취지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STC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회원국간 양자회의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 가솔린 사건에서 미국의 차별적 조치가 예외조항에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소국 정부와의 협력방안 등을 포함하여 대안을 충분히 모색하지 않고 차별적 요소로 외국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에 해당되어 패소한 사례를 볼 때, STC를 통한 이러한 협의 과정은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대외적 접근

가. 더욱 '친환경적' WTO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제6장에서 본 것처럼 무역과 환경 부분에 대한 DDA 협상은 (1) UNFCCC/교토의정서 등 MEA와 WTO 간의 관계 명료화, (2) MEA 사무국과 WTO 간의 교류 활성화, (3)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에 대한 관세장벽의 감축과 같은 세 가지 의제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무역이 활성화되어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며, 환경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다자무역제도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지금보다 더욱 '친환경적' WTO 체제를 만들 것이다. 또한 WTO 규정과 기후변화 조약의 관계에 대한 명료화 작업은 각국이 앞으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할 때 기후변화와 무역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 언급된 DDA 논의 안건 중 (1)과 (2)에 대해서는 이미 2011년 각료결정문 초안에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이 있지만, 환경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여전히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정부조달협정과 정보기술협정이 교섭된 방식과 같은 복수국간 협상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복수간 협상은 다자간 협상보다 상대적으로 타결이 용이하나, 우리나라가 환경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개도국 등 주요국의 복수간 협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APEC에서의 환경 관련 무역자유화 논의를 앞서 제

안한 DDA 복수간 협상으로 옮기는 방법을 검토해볼 만하다. 이는 APEC 차원의 논의가 WTO보다 상당히 진척되고 있고, APEC이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WTO 복수간 협상이 최근에 APEC에서 발표된 환경상품을 위주로 진행되면 복수국간 합의를 상대적으로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 APEC의 시장개방 관련 약속사항을 WTO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당초 DDA 규범협상에서 환경, R&D 등에 대한 허용보조금 조항의 복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해 녹색성장을 위한 일부 보조금이 허용보조금과 같은 예외조치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필요 시 '허용보조금 프랜즈' 그룹을 만들어 이런 그룹을 통해 적어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지원을 허용보조금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WTO 협상을 추진해볼 만하다.

더 나아가 현재 DDA에서 논의하기가 어렵지만 차기 협상 라운드에서 규범 제정, 해석 등 WTO 기능을 통해 보다 본격적인 다자무역규범과 체제의 녹색화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WTO 내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녹색성장 모범국가로서 이러한 WTO 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더욱 친환경적인 WTO 제도로의 전환은 위 다자협상뿐만 아니라 WTO 규범 개발 등 국제규범화와 관련된 국내절차의 녹색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WTO 협정, FTA 등 통상조약의 체결 · 이행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이 법률 중 영향평가 및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규정에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이 법률에 의해 조약협상 타결 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영향평가가 실시되고 기체결 조약에 대한 이행상황평가가 이루어지나, 관련 통상조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EU,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이미 WTO, FTA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필수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통상조약 관련 절차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가 도입될 경우 위 법률에 따라 다자무역규범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WTO를 녹색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즉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관한 이슈를 발견하여 WTO에 제시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된 다자무역협정에 특정 환경적 고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논의를 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는 다자간 통상조약이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대하는 친환경적 WTO 규범이 채택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 더욱 'WTO 친화적' 기후변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현재 기후변화체제는 UNFCCC와 교토의정서에 입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조약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비부속서 I 국가)로 가입하였으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UNFCCC와 교토의정서에는 무역을 제한하는 명시적

내용이 없지만, 무역과 관련성이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즉 UNFCCC 제3.5조는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이나 위장된 제한수단을 금지하고 있고, 제4.2조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기후변화의 완화를 위한 국가정책을 채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제2.1조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분류되는 부속서 I 당사국이 에너지의 효율성 향상, 수원 및 저장소 보호, 에너지 기술개발 촉진,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의 신축성 메커니즘인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와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제2.3조는 부속서 I 국가가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수행하거나 조치를 취할 때, 개도국을 포함한 여타 당사국에 대한 사회적 · 환경적 · 경제적 영향,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본 보고서 제6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듯이, 부속서 I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여타 당사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UNFCCC 부속기관에 대응조치영향 포럼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 포럼에서 대응조치의 무역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논의의 가능성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한국은 이러한 무역영향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이미 설치된 대응조치영향 포럼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무역이 한국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포럼 논의에 무역 관련 이슈를 포함시키자는 몇몇 국가의 입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방적 무역조치를 완

전히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인도 등 개도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금지는 무역제한 중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GATT 제XX조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역영향 논의를 지지하고 일방적 대응조치의 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기후변화체제에서의 다자무역규범 지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무역제한 조치를 WTO 규범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다자적 압력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정 대응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GATT 제XX조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3. 종합평가 및 대응방향

2011년 12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UNFCCC 당사국 총회는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2015년에 종료하기로 합의한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새로운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앞으로 녹색성장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WTO 규범 역시 매우 중요하므로 녹색성장정책 추진 시 기후변화, 환경에 초점을 맞추되, 다자무역규범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즉 녹색성장과 WTO 간의 조화가 필수적인데,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조화방안 개념은 [그림 7-1]과 같이 개관할 수 있다.

그림 7-1.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방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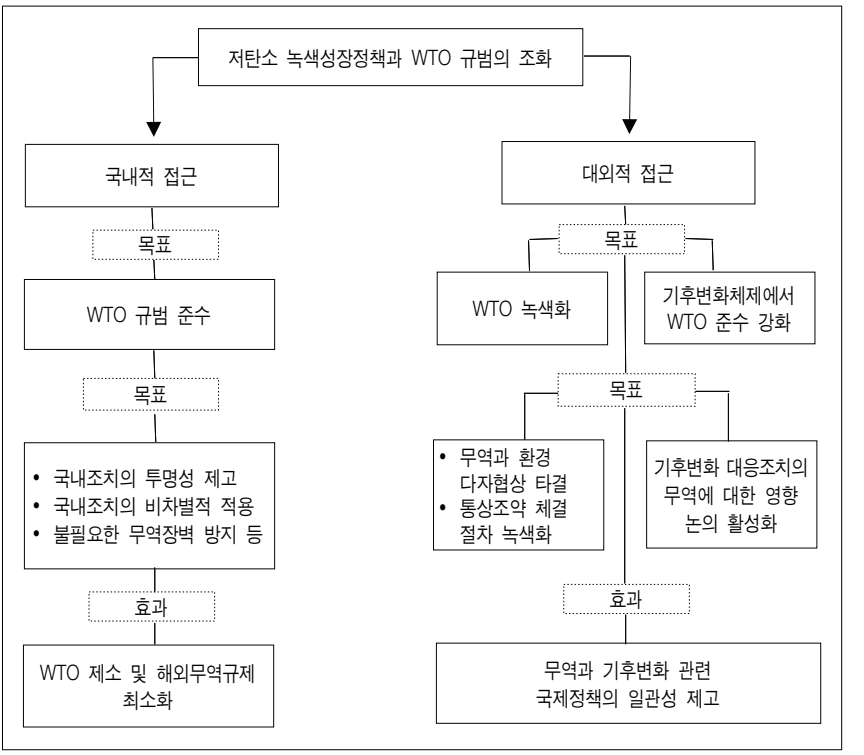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국내정책별 조화라는 것은 녹색성장 조치가 WTO 규범과 합치도록 하는 방안으로 WTO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녹색성장정책 추진 시 특정한 법령, 사업 등의 조치는 다자무역규범 준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실행되어야 한다. WTO 규범 준수 방식은 규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불리할 수 있는 해외 수입규제나 WTO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관련 녹색성장 조치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아니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각종 녹색사업 추진 시 통상법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담당기관에 통상법 전문가를 따로 두거나 외부전문가 풀을 만들어 자문을 요청하는 방식의 절차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녹색성장 조치에 대한 외국업계나 정부의 반응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 시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이해당사자로부터의 의견 수렴, 각종 WTO 회의에서 제기되는 지적사항의 검토, 주요국에서 출판되는 해외 무역장벽 현황에 관한 발간물 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의 숙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국가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지적된 사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반박하거나 추가설명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로부터 부당한 규제가 부과될 경우 관련 국가 정부와의 협상, WTO 제소 등을 통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대한국 무역규제 · 분쟁사례가 아니더라도 주요국의 녹색성장 조치에 대한 해외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중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녹색성장정책 추진 시 다자무역규범의 준수를 강조하는 국내적 접근과 달리 대외적 접근은 WTO의 녹색화 및 UNFCCC 체제에서의 WTO 규범 지위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국제논의, 협상, 무역협정 체결 절차의 녹색화를 통해 더욱 친환경적 WTO 체제와 더욱 WTO 친화적 기후변화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양 체제간의 조화를 제고하는 대외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국제차원의 통상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수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화방식이 많은 국가의

공동노력에 달려 있는 만큼, 무역자유화와 기후변화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조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의 조화에 대한 국내외적 접근방식은 모두 우리나라의 효과적 역량강화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 앞에서 기술한 조화 문제는 국내 인력과 기관의 전문성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력배양 측면에서는 녹색성장 · 환경 전문가와 통상법 전문가를 분리하여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양 분야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무역과 환경, 통상법과 환경법 등 관련 학문간 교육, 연구,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 정부의 정책 홍보차원에서 일반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환경과 무역의 중요성 및 상호관계에 대해 대중매체 등을 통해 보다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6장에서 언급한 WTO 무역과 환경의장문 초안(2011)에서 다자무역규범과 MEA 협상 · 이행 시 각국의 정부부처간 업무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녹색성장 ·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을 수행하는 여러 정부부처간 원활한 협력과 조정도 우리나라의 효과적 역량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김대원. 2009. 「환경마크(Eco-labels)와 WTO법: 제품무관련 생산방법(NPR-PPM)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3호.

김용국. 2010. 「환경표지제도의 활성화 방안」. *Global Green Growth Policy*, 13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정곤 · 금혜윤. 2011.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KIEP 연구자료 11-19.

김종선. 2010. 「환경라벨링제도의 국제표준화」. *Global Green Growth Policy*, 12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호철 · 권순철. 2012. 6. 「WTO 분쟁해결동향: 2012년 상반기」. 『통상법률』. 법무부.

녹색성장위원회. 2009a.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_____. 2009b. 7. 『녹색성장 국가전략』.

대한민국정부. 2011.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Low Carbon, Green Growth』. 정부간행물번호 11-1480000-001191-01.

박덕영(편저). 2012. 『세계 주요국의 기후변화법제』. 이담북스.

박월라 · Sherzod Shadikhodjaev · 나수엽 · 여지나 · 마광. 2011.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KIEP 연구보고서 11-20.

박지현. 2012. 「보조금협정으로 분석한 이산화탄소배출권」.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1호.

법제처. 2012. 「한국,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 보도자료. (5. 11)

외교통상부. 2008. 7. 「기후변화협상 바로알기」.

이로리. 2011. 8. 「탄소라벨링에 대한 통상법적 검토」. 『통상법률』.

이병국. 2012.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2012 국가 기후변화정책보고서』. 국회 기후변화포럼 부설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이소영. 2011.「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라벨링과 WTO규범에 의한 규율가능성」.『국제법학회론총』, 제56권 제4호(통권 제123호).
이재형 외. 2012.『신국제경제법』. 박영사.
이호생. 1997.『WTO 분쟁해결절차사례 연구: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KIEP 조사분석 97-11.
장용준 · 서정민 · 김민성 · 양주영. 2011.『무역상 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KIEP 연구보고서 11-14.
장철원. 2012.「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소고」.『2012년 녹색성장 법제 연구논문집』. 법제처.
제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2009. 10. 8. 지식경제부 · 환경부 · 국토해양부 보도참고자료.
제4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0. 9. 1.「국가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마련」. 심의자료
중소기업청. 2010.「2010년도 하반기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10-104호.
_____. 2012.「2012년도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12-17호.
지식경제부. 2012. 9.5.「녹색기술-첨단융합 분야 발전방향」. 보도자료.
지식경제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0.「2010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안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12a.「2012년 제1차 WTO-TBT 위원회 대응회의 자료집」.
_____. 2012b.「2012년 제2차 WTO-TBT 위원회 자료집」.
지식경제부 TBT 중앙사무국. 2011.「WTO TBT 업무 매뉴얼: WTO TBT협정에 대한 이해 및 동보절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a. 7. 17.「세계로 뻗어가는 환경표지 미국, 캐나다와 상호인정」. 보도자료.
_____. 2012b.「우수환경산업체 지정 · 지원제도 참여기업 모집공고」. 제

2012-46호.
환경부. 2010. 10. 1.「자동차 평균에너비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련 고시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_____. 2011. 11. 11.「환경표지[마크] 인증 제품 수출여건 좋아졌다」. 보도자료.

[영문자료]

APEC. 2010. "APEC Growth Strategy." Yokohama(Japan), 14 November 2010.
Baldwin, E. 2000. "Regulatory Protectionism, Developing Nations and a Two-Tier World Trade System." CEPR Discussion Paper Series, No. 2574.
Barrett, Scott. 1994. "Self-Enforc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Oxford Economic Papers, Vol. 46.
Bernasconi-Osterwalder, Nathalie *et al*. 2006. *Environment and Trade: A Guide to WTO Jurisprudence.* London/Sterling VA: Earthscan.
Bhagwati, Jagdish and Petros C. Mavroidis. 2007. "Is Action against US Exports for Failure to Sign Kyoto Protocol WTO-legal?" *World Trade Review*, Vol. 6, No. 2.
BNA International Trade Daily. 2011. 6. 9. "China to Submit New Subsidy Notification, Says U.S. Claims Exaggerated on Wind Power."
_____. 2012. 3. 30. "Japan Says WTO Dispute with Canada is about Discrimination, not Environment."
Böhringer, C., C. Fischer and K. E. Rosendahl. 2010. "The Global Effects of Subglobal Climate Policies." *The B. 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10 (2)(Symposium), Article 13.
Chang, Seung Wha. 1997. "GATTing a Green Trade Barrier: Eco-Labelling and the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 *Journal of World Trade*, Vol. 31, No. 1.

Choi, Won-Mog. 2003. *Like Products' in International Trade Law: Towards a Consistent GATT/WTO Jurisprud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ondon, Bradly J. 2009. "Climate Change and Unresolved Issues in WTO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2, No. 4.

Copeland, B. R. and M. S. Taylor. 2003. *Trade and the Environment.* Princeton/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Cosbey, A. ed. 2008. "Trade and Climate Change: Issues in Perspectiv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June 2008)

Cottier, Thomas, Olga Nartova and Sadeq Z. Bigdeli eds. 2009.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and the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uropean Commission. 2006. *Handbook for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GATT. 1970.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Border Tax Adjustments, BISD 18S/97 (adopted on 2 December 1970).

GATT Analytical Index. 1995. *Guide to GATT Law and Practice*, Vol. 1.

GATT Panel Report. 1958. "Italian Discrimination against Imported Agricultural Machinery." L/833 - 7S/60 (15 July 1958).

_____. 1981. "United States - Prohibition of Imports of Tuna and Tuna Products from Canada." L/5198 - 29S/91 (22 December 1981).

_____. 1982. "United States - Imports of Certain Automotive Spring Assemblies." L/5333 - 30S/107 (11 June 1982).

_____. 1987a. "Canada - Measures Affecting Exports of Unprocessed Herring and Salmon." L/6268 - 35S/98 (20 November 1987).

_____. 1987b. "Panel Report on Japan - Customs Duties, Taxes and Labelling Practices on Imported Wines and Alcoholic Beverages." L/6216 - 34S/83 (13 October 1987).

_____. 1987c. “United States - Taxes on Petroleum and Certain Imported Substances.” L/6175 − 34S/136 (5 June 1987).

_____. 1989. “United States -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L/6439 - 36S/345 (16 January 1989).

_____. 1990. “Thailand-Restrictions on Importation of and Internal Taxes on Cigarettes.” DS10/R-37S/200 (5 October 1990).

_____. 1991a. “Canada-Import, Distribution and Sale of Certain Alcoholic Drinks by Provincial Marketing Agencies.” DS17/R-39S/27 (16 October 1991).

_____. 1991b.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DS21/R - 39S/155 (3 September 1991).

_____. 1994a.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DS29/R (16 June 1994).

_____. 1994b. “US−Taxes on Automobiles.” DS31/R (11 October 1994).

Gros, Daniel. 2009. “Global Welfare Implications of Carbon Border Taxes.” CESIFO Working Paper, No. 2790.

Grossman, G. M. and A. B. Krueger. 1995.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2.

Helpman, E. 1997. “R&D and Productivity: the International Connec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NBER) Working Paper, 6101.

Holz-Eakin, D., and T. M. Selden. 1995. “Stoking the Fires? CO_2 Emissions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57, No. 1.

Huang, W. M., G. W. M. Lee and C. C. Wu. 2008. “GHG Emissions, GDP Growth and the Kyoto Protocol: A Revisit of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Energy Policy*, Vol. 36.

ICTSD and IISD. 2003. “Negotiations on WTO Rules.” *Doha Round Briefing Series*, Vol. 2, No. 7 (August 2003).

“Lieberman-Warner Climate Security Act of 2007.”

Lodefalk, Magnus and Mark Storey. 2005. "Climate Measures and WTO Rules on Subsidies." *Journal of World Trade*, Vol. 39, No. 1.

OECD. 2009. "National Approaches for Promoting Eco-Innovation: Country Profiles of Eight Non-EU OECD Countries." ENV/EPOC/GSP (2008)12/FINAL (22 January 2009).

_____. 2011. "Domestic 'Green' Incentive Measures with Possible Trade Implications: A Scoping Paper." COM/TAD/ENV/JWPTE(2011)10 (26 May 2011).

Peters, Glen P. and Edgar G. Hertwich. 2008. "CO_2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with Implications for Global Climate Policy."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Vol. 42, No. 5, pp. 1401-1407.

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Johannesburg.

Reilly, J. and N. Hohmann. 1993. "Climate Change and Agriculture: The Role of International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83, No. 2.

Roberts, J. T. and P. E. Grimes. 1997. "Carbon Intensity and Economic Development 1962-91: A Brief Exploration of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World Development*, Vol. 25, No. 2.

Rubini, Luca. 2012. "Ain't Wastin' Time No More: Subsidies for Renewable Energy, the SCM Agreement, Policy Space, and Law Refor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5, No. 2.

Shadikhodjaev, Sherzod. 2012. "How to Pass a Pass-Through Test: The Case of Input Subsid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5, No. 2.

Spencer, B. and J. Brander. 1983. "International R&D Rivalry and Industrial Strategy."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50.

Stiglitz, Joseph E. 2006. *Making Globalization Work.* New York: Norton.

Suh, Jeongmeen. 2012. “Strategic Trade Policy with Border Carbon Adjustments.” KIEP Working Paper, 11-09.

UN. 1947. EPCT/TAC/PV/26.

UNCTAD · IDRC/CRDI. 2002. “Standards and Trade, Trad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EP. 2009. “Overview of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 Interim Report (August 2009).

UNFCCC. 2007. “Bali Action Plan.” Decision 1/CP.13 (14-15 December 2007), FCCC/CP/2007/6/Add.1* (Distr. 14 March 2008).

_____. 2011a. “Forum and Work Programme on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Response Measures.” Decision 8/CP.17 (11 December 2011), FCCC/CP/2011/9/Add.2 (Distr. 15 March 2012).

_____. 2011b. “The Cancun Agreements: Outcome of the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Decision 1/CP.16, FCCC/CP/2010/7/Add.1 (15 March 2011).

_____. 2011c. Submission by Singapore to the Ad-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AWG-LCA) Pursuant to Paragraph 93 of Dec. 1/CP 16.

_____. 2011d. Submission from India on behalf of Argentina, China, African Group,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OPEC), Arab Group, Thailand, Malaysia, Uruguay and Philippines on economic and social consequences of response measures (16 June 2011), FCCC/AWGLCA/2011/CRP.14 (1 October 2011).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2. “The Future We Want.” A/CONF.216/L.1 (19 June 2012).

USDOC. 1999a.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Certain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 From the Republic of Korea

[C-580-837], 64 FR 73176 (29 December 1999).

_____. 1999b. Final Neg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From the Republic of Korea [C-580-832], 64 FR 15533 (31 March 1999).

_____. 2003.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in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emiconducto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C-580-851], 68 FR 37122 (23 June 2003).

_____. 2004. Decision Memorandum: Final Results of Countervail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from the Republic of Korea [C-580-835], 69 FR 2113 (14 January 2004).

_____. 2010.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sults and Partial Rescission of Countervail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C-580-818] 75 FR 55745(14 September 2010).

_____. 2011a.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Decision Memorandum: Final Results of Countervail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C-580-818] (12 January 2011).

_____. 2011b.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Final Results of Countervail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C-580-818], 76 FR 3613 (20 January 2011), and Decision Memorandum (12 January 2011).

_____. 2012. Bottom Mount Combination Refrigerator-Freezers from Korea: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C-580-866], 77 FR 17410 (26 March 2012), and Decision Memorandum (16 March 2012).

USITC. 2012. Bottom Mount Combination Refrigerator-Freezers from Korea

and Mexico, Inv. Nos. 701-TA-477 and 731-TA-1180-1181(Final). USITC Publication 4318 (May 2012).

Van den Bossche, Peter. 2005. *The Law and Polic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Vranes, Erich. 2009. *Trade and Environment: Fundamental Issues in International Law, WTO Law, and Legal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ilke, Marie. 2011. "Feed-in Tariffs for Renewable Energy and WTO Subsidy Rules." *ICTSD Issue Paper*, No. 4.

Wolfrum, Rüdiger *et al*. eds. 2008. *WTO-Trade Remedies.* Leiden/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WTO. 1997. WT/CTE/W/47 (2 May 1997).

_____. 1999. G/SCM/Q2/KOR/18 (7 April 1999).

_____. 2000. WT/CTE/W/171 (20 October 2000).

_____. 2001a. WT/MIN(01)/3 (10 November 2001).

_____. 2001b. WT/MIN(01)/DEC/ (20 November 2001).

_____. 2002a. G/TBT/1/REV.8 (23 May 2002).

_____. 2002b. TN/TE/W/13 (8 October 2002).

_____. 2007. TN/TE/S/2/Rev.2 (16 January 2007).

_____. 2009. G/TBT/26 (13 November 2009).

_____. 2010a. WT/CTE/EDB/8 (4 October 2010).

_____. 2010b. G/TBT/M/51 (1 October 2010).

_____. 2010c. G/TBT/N/KOR/296 (18 October 2010).

_____. 2010d. WT/CTE/EDB/8 (4 October 2010)

_____. 2010e. WT/DS412/1 (16 September 2010).

_____. 2010f. WT/TPR/OV/W/3 (14 June 2010).

_____. 2011a. G/TBT/M/52 (10 March 2011).

_____. 2011b. G/TBT/M/53 (26 May 2011).

_____. 2011c. G/TBT/M/54 (20 September 2011).
_____. 2011d.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1.*
_____. 2011e. TN/TE/20 (21 April 2011).
_____. 2011f. WT/CTE/W/160/Rev.5, TN/TE/S/5/Rev.3 (15 June 2011).
_____. 2011g. WT/CTE/W/160/Rev.5, TN/TE/S/5/Rev.3 (Distr. 15 June 2011).
_____. 2011h. WT/DS426/1 (16 August 2011).
_____. 2012a. G/TBT/M/55 (9 February 2012).
_____. 2012b. G/TBT/M/56 (16 May 2012).
_____. 2012c. G/TBT/M/57 (18 September 2012).
_____. 2012d. WT/TPR/S/268 (15 August 2012).
_____. 2012e. *WTO Press Release. 658. Rev.1.*
_____. n.d.1. G/SCM/M*.
_____. n.d.2. G/SCM/Q2/KOR/*.
_____. n.d.3. WT/CTE/EDB/*.
WTO Appellate Body Report. 1996a.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10/AB/R, WT/DS11/AB/R, WT/DS8/AB/R (4 October 1996).
_____. 1996b.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AB/R (29 April 1996).
_____. 1997. "Canada—Certain Measures Concerning Periodicals." WT/DS31/AB/R (30 June 1997).
_____. 1999. "Canada-Mea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Civilian Aircraft." WT/DS70/AB/R (2 August 1999).
_____. 2001.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Products Containing Asbestos." WT/DS135/AB/R (12 March 2001).
_____. 2007. "Brazil—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Retreaded Tyres." WT/DS332/AB/R (3 December 2007).
_____. 2011. "United States - Definitiv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WT/DS379/AB/R (11 March

2011).
_____. 2012a.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the Production and Sale of Clove Cigarettes.” WT/DS406/AB/R (4 April 2012).
_____. 2012b. “United States—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WT/DS381/AB/R (16 May 2012).
WTO Panel Report. 1996.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R (29 January 1996).
_____. 2001. “Brazil-Export Financing Programme for Aircraft-Second Recourse by Canada to Article 21.5 of the DSU-Report of the Panel.” WT/DS46/RW2 (26 July 2001).
_____. 2002. “United States—Preliminary Determinations with Respect to Certai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WT/DS236/R (27 September 2002).
_____. 2005. “Mexico—Tax Measures on Soft Drinks and Other Beverages.” WT/DS308/R (7 October 2005).
WTO-UNEP Report. 2009. “Trade and Climate Change.” WTO Secretariat.

[온라인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웹사이트. 2012a.「27대 중점기술」. http://www.greengrowth.go.kr/?page_id=2148.
_____. 2012b. http://www.greengrowth.go.kr/?page_id=2450.
서울신문 웹사이트. 2010. 「유럽일부 탄소세 도입 … 美·中은 눈치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112018005.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웹사이트. 2012.「TBT통합정보포털」. http://www.knowtbt.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웹사이트. 2012.「신재생에너지」. http://www.ketep.re.kr/home/information/information08_4.jsp?flag=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웹사이트. 2012a.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현황」. http://

www.edp.or.kr/edp/list/list.asp.
_____. 2012b.「탄소성적표지 제도안내」. http://www.edp.or.kr/carbon/system/system_mark.asp.
_____. 2012c.「환경표지 소개」. 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1&sMenu=6.
_____. 2013a.「환경표지 소개」. 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1&sMenu=13 (2012. 12. 10).
_____. 2013b.「환경성적표지 제도 안내」. http://www.edp.or.kr/edp/system/system_intro.asp (2012. 12. 10).
_____. 2013c.「탄소성적표지 제도안내」. http://www.edp.or.kr/carbon/system/system_mark.asp (2012. 12. 10).
European Commission 웹사이트. 2012a. "Enterprise and Industry." http://ec.europa.eu/enterprise/tbt.
_____. 2012b.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s." http://ec.europa.eu/trade/analysis/sustainability-impact-assessments.
French Car Taxes 웹사이트. 2012. "Bonus-Malus Tax System." http://streetwise-france.com/car-tax-france.htm#malus.
ICTSD 웹사이트. 2011a. "China to End Challenged Subsidies in Wind Power Case." 2011.6.13, http://ictsd.org/i/news/biores/108435/.
_____. 2011b. "Major Green Disputes Move Ahead at WTO." http://ictsd.org/i/news/bridgesweekly/113568/.
_____. 2012. "WTO Panel Hearing: Canada Defends Feed-in Tariff as Necessary Govt Procurement", 2012.3.28, http://ictsd.org/i/news/bridgesweekly/129972/.
Third World Network 웹사이트. 2009. "G77/China Criticize Developed Countries' Trade Measures as Being against Convention." 14 August 2009, http://www.twnside.org.sg
_____. 2010. "AWG-LCA Discusses Unilateral Trade Measures and Forum

on Impacts of Response Measures." 10 June 2010, http:// www.twnside.org.sg

_____. 2011a. "Developing Countries' Proposal on Unilateral Trade Measures Draws Strong Opposition." 4 October 2011, http://www.twnside.org.sg

_____. 2011b. "Special Event on Response Measures Warns against Trade Protectionism and 'Unjust Transition.'" 14 June 2011, http://www.twnside.org.sg

_____. 2012. "Developing Countries Welcome Approach to Response Measure Forum." 21 May 2012, http://www.twnside.org.sg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웹사이트. 2012. "Gas Guzzler Tax." 2012.9, http://www.epa.gov/fueleconomy/guzzler/420f12068.pdf

US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웹사이트. 2012. "Obama Administration Finalizes Historic 54.5 mpg Fuel Efficiency Standards." 2012.8.28, http://www.nhtsa.gov/About+NHTSA/Press+Releases/2012/Obama+Administration+Finalizes+Historic+54.5+mpg+Fuel+Efficiency+Standards

USTR 웹사이트. 2011. "China Ends Wind Power Equipment Subsidies Challenged by the United States in WTO Dispute." 2011.6.7,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press-releases/2011/june/china-ends-wind-power-equipment-subsidies-challenged

WTO 웹사이트. 2011. "Subsidies Committee Focuses on Improving Notifications." 2011.10.26~27,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1_e/scm_26oct11_e.htm

_____. 2012a. "Subsidies Committee Continues Focus on Improving Notifications." 2012.4.26,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2_e/scm_26apr12_e.htm

_____. 2012b. "The Doha Mandate o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http://www.wto.org/english/tratop_e/envir_e/envir_neg_mea_e.htm.

_____. 2012c.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tatistics,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cm_e/scm_e.htm.

_____. 2012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echnical Explanation.”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bt_e/tbt_info_e.htm.

_____. 2012e. “Disputes by Agreement: SCM Agreement.”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agreements_index_e.htm?id=A20#selected_agreement.

[면담 자료]

유럽집행위원회 DG Environment의 선임행정원 Patrick Ravillard(principal administrator)와의 면담(2012년 5월 8일, 브뤼셀).

OECD의 무역정책분석가 Ronald Steenblik와의 면담(2012년 5월 10일, 파리).

Peterson 국제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Gary Clyde Hufbauer과의 면담(2012년 10월 16일, 워싱턴 DC).

부 록

부표 1.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관련 주요 법률			
법률명	주요 목적	제정일	시행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12.5.14	2012.11.15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011.5.24	2011.11.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10.6.8	2011.6.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010.1.13	2010.4.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	2009.6.9	2009.12.10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007.8.3	2008.2.4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007.4.27	2008.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006.10.4	2007.4.5
에너지법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06.3.3	2006.9.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004.12.31	2005.7.1

부표 1. 계속

법률명	주요 목적	제정일	시행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004.12.31	2005.7.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004.10.22	2005.4.23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함	1997.12.13	1998.12.1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995.12.29	1996.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의 개발 · 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994.12.22	1995.3.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992.12.8	1993.6.9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1991.12.31	1992.9.1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 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991.12.14	1992.6.15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990.8.1	1991.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979.12.28	1980.6.29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law.go.kr/main.html)를 검색하여 법률의 제정일 순위로 저자 정리.

부표 2.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한 부분별 정책 및 조치 조약

부문		추진전략	세부 정책 및 조치
전 부문		화석연료 기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발전 및 산업 부문	수요	산업 부문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자발적 협약
			에너지진단 의무화제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지원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사업 확대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
	공급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공급 비중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 적정 비중 유지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
	효율	고효율 기자재 보급 확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의 강화
			대기전력경고표시제 세계 최초 시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 확대
	감축 기반	온실가스 조기 감축 촉진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 등록사업
			산업계 기후변화 대책 기구 구성 및 운영
건물 부문		건축물 설계 기준 강화 및 친환경 인증제도 확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의 지속적 강화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확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촉진 방안 구축
			녹색건축물 활성화 계획
교통 부문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저탄소형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
			녹색교통 수단 활성화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전기차 보급을 위한 기반 구축
		자동차 온실가스 · 에너지 기준 정책	고효율 자동차 생산 및 보급 촉진 정책 시행
		저탄소 물류 체계 구축	저비용 · 고효율 녹색물류체계 구축
농산물 부문		영농축산방식의 개선	논의 CH_4 배출량 감축
			논과 밭의 N_2O 배출량 감축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개선
			가축분뇨 지원화 촉진
임업 부문		온실가스 흡수원의 보전 및 확대	탄소 흡수 저장 능력의 유지 및 증진
			산지 전용 억제
			산림 탄소 흡수원의 확대
		산림 탄소상쇄 사업 추진	산림 탄소 상쇄 제도 도입
		목질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	목질 바이오에너지 이용확대
폐기물 부문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및 폐자원 에너지화	폐기물 감량화
			폐기물 재이용과 재활용 확대
			폐자원 에너지화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1).

Executive Summary

Korea's Green Growth Policy and Multilateral Trade Rules: Harmonization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Sherzod Shadikhodjaev, Jeongmeen Suh, Minsung Kim, and Jaehyoung Lee

In his address mark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08, President Lee Myung-bak declared 'Low Carbon Green Growth' as the country's new vision to lead the country's development for the next decades. Since then Korea has taken active measures to combat climate change on both legislative and executive front. A number of 'green' measures have an impact on trade and may thus be subject to global trade rules administer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is study examines Korea's green measures - relevant laws, regulations, and programs - from the perspective of WTO law, and explores possible ways of harmonization of the green growth policy with multilateral trade disciplines. The concept of harmonization within the meaning of this study has both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More specifically, the authors first considered the harmonization at an internal level and suggested that Korea ensure WTO-consistency of its domestic green measures. For this purpose, they examined green measures in three domestic policy areas, such as market opening, industrial subsidie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hen, they proceeded to see how the global climate regime and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 could be harmonized on an international plane, and what Korea's contribution to this process should be.

With respect to the market opening policy, the authors considered, inter alia, GATT-based implications of a carbon tax, import restrictions arising from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the Bonus-Malus system for car purchasers - the measures that are not currently applied in Korea, but are used by other countries. As for the industrial support policy, Korea's green subsidies have not yet been complained of in WTO disputes, but were targeted by US countervailing measures - something that should be paid attention to by Korean policy-makers when designing green incentive schemes for domestic producers. As far as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are concerned, a few WTO members have raised specific trade concerns in the TBT Committee in relation to some Korean green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external harmonization issue, the authors focused on two approaches, such as 'greening' the WTO and making the global climate regime more 'WTO-friendly'. In order for the WTO to become more 'environment-friendly', the current Doha negotiations on trade and environment should be successfully completed. The authors here proposed that Korea put forward the idea of plurilateral negotiations in the WTO based on APEC's initiatives on trade and environment. Korea could also initiate discussion among WTO members aimed at rendering climate change subsidies non-actionable under current WTO subsidy disciplines. Moreover, the authors sugges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its trade treaties so as to ensure that, inter alia, WTO agreements entered into by Korea reflect environmental concerns. In this way, Korea could have an indirect influence on the greening of the WTO. Finally, with a view to making the global climate regime more WTO-friendly, Korea should support a proposal of several countries to discuss within the UNFCCC framework the impact of climate-related response measures on trade, but oppose the idea of introducing a total ban on unilateral response measures. Such a ban would come into conflict with the GATT general exception clause (Article XX) - a WTO provision that can be invoked to justify environment protection measures.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목록

■ 2012년

12-01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한진희

12-02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 김준동 · 서진교 · 송백훈 · 안덕근

12-03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배찬권 · 김정곤 · 금혜윤 · 장용준

12-04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 서진교 · 정 철 · 이준원 · 정윤선

12-05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김영귀 · 김종덕 · 강준구 · 김혁황

12-06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 Sherzod Shadikhodjaev · 서정민 · 김민성 · 이재형

12-07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 서정민 · 정지원 · 박혜리 · 조명환

12-08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12-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이동은 · 편주현 · 양다영

12-10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헷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박은선 · 강삼모

12-11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안지연 · 이동은 · 박영준 · 강은정

12-1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12-13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 구상 / 이창재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2-14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권 율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12-15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12-16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
최필수 · 이상훈 · 문익준 · 나수엽

12-17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
문익준 · 박민숙 · 나수엽 · 여지나 · 은종학

12-18 중국 · 대만 · 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
이승신 · 양평섭 · 문익준 · 노수연 · 정지현 · 여지나

12-19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
이재영 · 이성봉 · Alexey Kuznetsov · 민지영

12-20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박나리

12-21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오윤아 · 강대창 · 김유미 · 신민금

12-2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조충제 · 송영철 · 최윤정 · 이 웅 · 정혜원

12-23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2-24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
한바란 · 최필수 · 윤서영 · 손성현 · 박재은 · 전혜린 · 이시욱

12-25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
박영호 · 곽성일 · 전혜린 · 장종문

12-26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
정형곤 · 김병연 · 이 석

12-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박복영 · 김종혁 · 고희채 · 박경로

12-2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정성춘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이우광

12-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채희율

■ 2011년

11-01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
고희채 · 이준규 · 오민아 · 이보람

11-02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 이창재 · 방호경

11-03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
윤덕룡 · 오승환 · 백승관

11-04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
박복영 · 오승환 · 정용승 · 박영준

11-05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
이동은 · 강은정 · 박영준

11-06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11-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2권) / 박복영 편

11-08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종화 · 박영준 · 이형근 · 양다영

11-09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
서진교 · 이준원 · 김한호

11-10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강유덕 · 이철원 · 이현진 · 오현정

11-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
조미진 · 김영귀 · 박지현 · 강준하

11-12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11-13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강준구 · 김혁황 · 현혜정

11-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장용준 · 서정민 · 김민성 · 양주영

11-15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김정곤 · 박순찬

11-16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 임경수

11-17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 권 율 · 정지선 · 박수경 · 이주영

11-18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11-19 한 · 중 · 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 정형곤 · 방호경 · 나승권 · 윤미경

11-20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 박월라 · Sherzod Shadikhodjaev · 나수엽 · 여지나 · 마 광

11-2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 경협 방향 / 정형곤 · 김지연 · 이종원 · 홍익표

11-22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 김태윤 · 이재호 · 정재완 · 백유진 · 강대창

11-23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 박영호 · 전혜린 · 김성남 · 김민희

11-24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 · 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고희채

11-25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11-26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 이재영 · Sherzod Shadikhodjaev · 박순찬 · 황지영

11-27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 이승신 · 최필수 · 김부용 · 여지나 · 박민숙 · 임민경

11-28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손승호

11-29 한국 ·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 강대창 · 김규판 · 오윤아 · 이재호 · 신민금 · Siwage Dharma Negara · Latif Adam

11-30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 김진오 · 권기수 · 고희채 · 박미숙 · 김형주

11-31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한바란 · 윤서영 · 박광순

■ 2010년

10-01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이홍식

10-02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 현혜정 · 장용준 · 강준구 · 김혁황 · 박철형

10-03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 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 서정민 · 김영귀 · 박지현 · 김정곤 · 금혜윤

10-04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 조미진 · 김한성 · 김민성 · 양주영

10-05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 임경수

10-06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 윤덕룡 · 오승환 · 김소영

10-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허 인 · 이동은 · 이윤수 · 양다영

10-08 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 박영준 · 이동은 · 오용협 · 안지연

10-09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 조종화 · 박복영 · 박영준 · 양다영

10-10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 지만수 · 박월라 · 이승신

10-11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 · 중 경제관계 / 이장규 · 나수엽 · 여지나 · 박민숙

10-12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시사점: 중부지역의 4대 도시군 형성전략을 중심으로 /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단

10-13 한 · 중 · 일 역내 투자동향과 활성화 방안 / 정형곤 · 이홍식 · 방호경 · 나승권

10-14 일본과 EU의 환경협력 추진전략과 시사점 /
정성춘 · 김규판 · 이형근 · 김균태 · 오태현

10-15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김흥종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10-16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
이재영 · 이철원 · 황지영 · 파벨 미나키르

10-17 중남미 건설·플랜트시장 특성과 한국의 진출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고희채 · 박미숙 · 허경신

10-18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김진오 · 권기수 · 고희채 · 박미숙

10-19 한·인도 CEPA 이후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
조충제 · 성한경 · 최윤정 · 송영철

10-20 ASEAN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
김태윤 · 손기태 · 정재완 · 이재호 · 백유진

10-21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
박영호 · 한바란 · 정지선 · 주진홍 · 김민희 · 전혜린

10-22 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
김태윤 · 손기태 · 정재완 · 이재호 · 백유진

10-23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순철

10-24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조명철 · 김지연 · 홍익표

10-25 주요국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 김양희 · 강유덕 · 손기태 · 김은지 · 이현진

10-26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정지원 · 권 율 · 한바란 · 정지선 · 박수경 · 이계우

10-27 전략적 동반자 시대의 한·러 경제협력 구상 /
정여천 · 이종화 · 성원용 · 황지영

Sherzod Shadikhodjaev(사딕호드자에브 세르죠드)

우즈베키스탄 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 국제법학과 최우수졸업
고려대학교 법학 석 ·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sherzod1@kiep.go.kr)

저서 및 논문

Retaliat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How to Pass a Pass-Through Test: The Case of Input Subsid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2) 외

서정민(徐廷珉)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 석사
미국 보스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jmsuh@kiep.go.kr)

저서 및 논문

"Strategic Trade Policy with Border Carbon Adjustments" (2011)
"A Theory of Optimal Quality Reports with Inertia" (2012) 외

김민성(金敃成)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mskim411@kiep.go.kr)

저서 및 논문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공저, 2011) 외

이재형(李在珩)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법학 석사(LL.M.)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법학 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E-mail: leesjd@korea.ac.kr)

저서 및 논문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특별대우와 국제통상규범」(2010)
『신 국제경제법』(공저, 2012) 외

연구보고서 12-06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2012년 12월 26일 인쇄
2012년 12월 31일 발행

발 행 인 채 욱
발 행 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화: 3460-1142 FAX: 3460-1144
인 쇄 오롬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389-7 94320 정가 10,000원
978-89-322-1072-8 (세트)

절취선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Korea's Green Growth Policy and Multilateral Trade Rules: Harmonization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Sherzod Shadikhodjaev, Jeongmeen Suh, Minsung Kim, and Jaehyoung Lee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화와 같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구가 온난화되어 환경적 · 사회적 · 경제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녹색성장정책 수행 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조치들은 세계무역을 규율하고 있는 WTO 규범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녹색성장 관련 국내 법령 및 사업에 의한 각종 조치가 WTO 규범과 양립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02-3460-1001, 1114 F.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94320
9 788932 213897
ISBN 978-89-322-1389-7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